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34-01

2020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0.12.30.

연구수행기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동명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국장
연구보조원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간사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수행체계 9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9

Ⅱ 문헌연구 13

1.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15
   1) 한국의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15
      (1) 한국의 법·제도 분석 15
      (2) 한국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선행연구 분석 31
   2) 해외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분석, 40
      (1) 유엔 40
      (2) 미국 51
      (3) 영국 55
      (4) 시사점 67
2.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73
   1)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73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편의제공 거부 74
      (2)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 74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구금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78
   2)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81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의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81
      (2) 미국 장애인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84
      (3) 영국 평등법의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 88
      (4) 시사점 91

Ⅲ 실태조사 결과 분석 93

1. 설문조사 결과 95
1)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95
(1) 조사대상 및 설문지 개발 95
(2)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결과 97
(3) 장애인수용자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112
(4) 주요 분석 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 119
2) 구금시설 현황 조사 121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121
(2)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조사 128

2. 현장 인터뷰 조사 140
1) 인터뷰 참여자 일반적 특성 및 주요 질문 내용 140
2) 인터뷰 분석 결과 141
(1) 편의제공 현황 141
(2) 문제점 144
(3) 개선방안 151
(4) 의료영역에서의 개선 방안 156
(5) 정책 제언 사항 157

Ⅳ 정책제언 161

1.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쟁점 163

2.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 및 예외 164

3. 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166
1)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166
2) 의료서비스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171

4.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지침 개정안 179
1) 형집행법 179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90

3)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 191
4) 기타 규칙 및 지침 개정안 ---------- 191
5.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 193

■ **참고문헌** ---------- **196**

■ **부록** ---------- **199**
〈부록 1〉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조사 ---------- 201
〈부록 2〉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 204
〈부록 3〉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임무 수행〈번역본〉 ---------- 216
〈부록 4〉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정보 책자〈번역본〉 ---------- 234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수행체계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구금시설[1]은 교도소, 구치소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교도소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즉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를 박탈하는 형[2]을 선고받은 자의 형을 집행하고 구금하는 곳이다. 둘째,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즉, 수사나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피의자를 수용·관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법무부, 2019).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수감될 수도 있는데,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거나,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노역자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4][5].

---

1) 구금시설과 교정시설은 우리나라에서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6월 행형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교도소는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수용하며 교정처우를 시행하는 장소인 반면 구치소는 구속되었으나 아직 유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교정시설로 통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나, 2007년 12월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교도소등'을 '교정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구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법령의 본문내용을 인용하거나, 『교정통계연보』 등의 자료에서 인용할 때에는 해당 문헌에 제시된 용어인 '교정시설'을 사용한다.

2) 징역과 금고, 구류는 모두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구금하는 형벌(자유형)이지만, 이들은 각각 차이점이 있다. 먼저 징역과 금고를 비교하면 노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징역(懲役)은 그 용어에서도 의미가 담겨있듯이 노역을 하여야 한다.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교도소 내에서 부과한 특정한 일을 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금고(禁錮)는 노역의 의무가 없다.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신체의 자유만 제한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구류(拘留)는 금고와 같이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을 하는데 30일 이내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즉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일정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치소는 1967년 7월 서울구치소가 신설된 이래 총 11개의 구치소와 1개의 지소 등 총 1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도소는 전국에 39개의 교도소와 2개의 지소 등 총 41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2010년 12월에 개청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하면 2020년 10월 현재 전국에 54개의 구금시설이 설치·운용되고 있다[6]. 『2019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의 교정시설 수용현황(2018년 기준)을 보면 정원은 47,820명이고,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4,744명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수용내용을 보면 수형자 34,377명(62.8%), 피의자와 피고인 등 미결수용자 18,867명(34.5%), 노역장유치[7] 1,500명(2.7%) 등으로 조사되었다(법무부, 2019).

한편 공식적인 장애인 수용자 통계는 별도로 제시되고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내부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2020년 7월 19일 현재 총 1,529명의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나온 2018년 기준 전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인원이 54,744명인 것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약 2.8%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장애인 수용자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771명(50.43%)로 전체의 절반이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 187명(12.23%), 시각장애 151명(9.88%), 정신장애 129명(8.44%), 청각장애 120명(7.85%), 뇌병변장애 65명(4.2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법무부 내부자료, 2020).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의 47개 구금시설을 상대로 실시한 '장애인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서 1,695명의 장애인 수용자(총 수용자 47,598명)가 91개의 장애인 독거실과 346개의 장애인 혼거실에 분산·수용된 것으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8)된 것과 비교하면, 전체 수용자 수는 조금 증가한 반면 장애인 수용자 수는 조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 자체가 '자유형(自

3) 형집행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는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수용자', '장애인 수용자'라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형집행법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5) 한편 구치소,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로는 유치장(留置場)이 있다. 유치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한다.

6) 가장 최근에 설치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2020년 4월에 준공되어 8월부터 수용업무가 시작되었다.

7) 벌금 혹은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치기간을 정해서 선고하는 환형(換刑)처분(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由刑)'의 본질이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수용환경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자유박탈 이상의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수용거실, 운동장 등에 대한 시설접근이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접근에서 비장애인 수용자보다 더욱 힘든 수용생활을 해야 하므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안양·여주·포항·청주·광주·순천·군산 교도소(지체장애인), 여주·청주교도소(시각장애인), 안양·여주교도소(언어·청각장애인) 등 9개 구금시설을 '장애인전담교정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시설별 차이는 있으나 전국의 모든 구금시설에 장애인 수용자가 있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든 구금시설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당한 편의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과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 혹은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이 가장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의료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에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외부신체장애와 심장장애, 신장장애 등 내부기관장애 간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지적·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와도 진료 받는 목적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유형과 건강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유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유형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형집행법」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에서는 노인수용자, 장애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장애인수용자의 정의(제49조), 전담교정시설(제50조), 수용거실(제51조), 전문의료진 등(제52조), 직업훈련(제53조), 준용규정(제54조/주·부식 등의 지급, 운동·목욕, 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등 장애인 수용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장애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에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 2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0조),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이는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에서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를 대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문(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세면대를 '의무'로, 소변기, 점자블록과 그 밖의 시설 중 일부(접수대·작업대, 매표

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를 '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背馳)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에서 '의무'와 '권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역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수용자들이 절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위생시설 중의 하나인 '욕실'과 '샤워실·탈의실'이 '의무'나 '권장'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역시 '구금시설' 내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거실'이 아닌 외부 사무공간에 설치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전담교정시설'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 수용자가 실제 생활하는 '거실'에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금까지 장애인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유형을 보면, 크게 물리적인 시설 접근성과 시각·청각·내부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조치 요구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제11조부터 제25조에서 고용, 교육, 시설물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의사소통,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 영역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구금시설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에 따른 편의 미 제공'에 대해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즉, 구치소·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제1항에 '…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명확하게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금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교도소 실태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동원(1991)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에서, 정대기(2007)는 박사학위논문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질환 강력범죄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특성, 진단, 유병기간 및 치료경력 등을 각종 통계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한편 강영실(2006)은 '정신장애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방안'연구를 통해서 정신장애인 범죄 추이, 현상, 원인, 그

리고 사회복지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청음회관 재활사업과(1997)에서는 '청각장애인 범죄에 대한 기초실태조사'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범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이연주(2008)는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장애인 교정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범죄의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1곳의 교도소를 선정하여 남성장애인수용자 90명을 대상으로 '재소자 실태, 수용시설 만족도, 재소자의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연주(2008)의 연구에서는 '입원경험 유무, 병명, 외부 병원 수술 경력 등'의 의료서비스 영역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시설 유무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영역 등을 '재소자 실태조사'의 한 부분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장애인 범죄의 양상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금시설 수용자 실태와 관련된 조사·연구로는 지난 2010년과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화영 외, 2010; 주영수 외, 2016)에서 실시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가 있으며, 연성진 등(2008년)이 실시한 '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한민경이 2018년에 실시한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장애인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최근까지 공식적으로'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로는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애인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가 유일하다. 당시 조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47개 구금시설에 1,695명의 장애인 수용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이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다수의 시설에서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이외에 수사, 재판절차 및 형집행절차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연구(정신수·이정민·이재영, 2009)와 신체장애인의 수용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되고 있는 않은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기한 연구(고명수, 2016)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은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한 편의제공'관련한 연구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연구

가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구인순 외, 2010; 심재진, 2013; 유동철 외, 2010; 오욱찬 외, 2018; 조임영, 2010; 전윤구, 2016).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혹은 장애아동 양육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된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금시설과는 거리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공식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간하는 '교정통계연보'역시 전체 수용현황(성별, 연령별, 죄명별 현황 등)과 소년·여성 및 외국인 수용자 현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수용자'현황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최근까지 실시된 모든 연구들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영역과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금시설 내에서의 기본 생활과 관련한 항목(거실생활, 개인위생, 의류 및 침구, 급식, 운동, 의료, 징벌, 계구(戒具), 외부와의 교통, 도서, 종교, 소유물 보관, 영치금품 관리, 출정 및 이송 등) 전반을 살피기에는 시간상,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 실태조사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중 ① 일상생활 영역(일상생활 공간인 거실,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운동, 목욕 등 위생관리,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독서 등에서 물리적 접근성)과 ②의료접근 영역(내부진료 및 병사수용, 외부진료, 건강검진, 투약상황, 응급상황, 의료청원 등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고찰 → 1차 전문가 자문(서면) → 장애인 수용자 및 시설현황조사 실시 및 분석 → 심층 인터뷰 실시 및 분석 → 2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간담회 → 조사결과 최종분석 및 보완 →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수행체계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및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및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관련 국내·외 법·제도와 해외사례, 그리고 선행연구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 규칙)」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수용

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유엔의 국제협약들과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추가로 미국과 영국의 법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각종 법령과 기타 규정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수용자에 관한 선행연구와 장애인 수용자 관련 각종 규정과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고찰을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영역과 의료서비스 영역 등에서 장애인 수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편의의 내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장애인 수용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내용 : 장애인 수용자 대상

영역	세부 조사 항목
입소 시	◦ 입소 시 의료조치, 물품, 보장구 등에 대한 편의제공 실태
일상생활영역	◦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이동, 운동, 화장실사용, 목욕 등에서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실태 및 평가 ◦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편의제공 필요성, 요청 경험 및 제공 여부
의료서비스영역	◦ 의료서비스, 약 처방/의사진료 경험(내외부) 실태 및 평가 ◦ 의료서비스영역에서의 편의제공 필요성, 요청 경험 및 제공 여부
기타 영역	◦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방법 인식 실태

셋째,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편의시설 및 장비현황과 상담, 재활치료 및 교화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하여 담당자를 통한 시설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별 담당자를 통해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이와 함께 구금시설별 장애인편의시설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2018년도에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중 교정(구금)시설 Raw Data를 활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 정당한 편의제공 조사 내용 : 시설별 담당자 대상

영역	세부 조사 항목
의료 인력·편의시설 및 장비 현황	◦ 의료 인력, 진료실(의무실) 장애인 수용자 편의시설 기준 ◦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의료장비 보유 현황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인력 현황	◦ 점자안내책자, 자막수신기, 독서확대경 등 편의시설 현황 ◦ 수어통역사, 일상생활도우미 등 인력 현황
기타	◦ 상담, 재활치료 및 교화프로그램 현황

넷째, 장애인 수용자와 의료진, 교도관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의료서비스 전반, 장애인 수용자 대상 의료서비스 및 편의제공 내용, 기타 지원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개별·소집단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본 연구결과 분석과 정책제언에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추가로 도출하였다[8].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교정분야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교도소장 및 변호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총 2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 전에 설문조사지 형식과 구체적인 설문문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이후 연구결과물, 특히 정책제언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청취하고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여섯째, 연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정책 제언 내용의 구체성을 높이고, 정책적·실천적 적용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8) 연구가 진행되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장애인 수용자와 의료진,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진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으며, 계획을 잡았던 다수의 구금시설에서의 현장방문 및 인터뷰가 취소되었다. 이에 2곳의 구금시설만을 방문하고, 그 시설의 장애인 수용자와 의료진, 교도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Ⅱ

문헌연구

1.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2.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Ⅱ

문헌연구

1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1) 한국의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1) 한국의 법·제도 분석

가. 헌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피고인·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고 하여 수용자도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이므로 수용자의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도출되고, 나아가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생활에 있어 비장애인 수용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장애인 수용자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개별 법률에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개별 법률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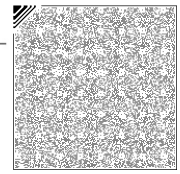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가) 개요

종래의 「행형법」은 2007년 12월 21일,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 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화 등으로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이유[9]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그 편제는 5편 16장 133개조가 되었다. 이후 11개조가 신설되어 현행법은 5편 16장 14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3편 수용의 종료,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그리고 제5편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장애인 수용자의 수용생활과 관련이 되는 것은 주로 제1편과 제2편에 규정되어 있고, 제1편(총칙)은 인권의 존중(제4조), 차별금지(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의2),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

9)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7925) 참조



비(제5조) 등을, 제2편(수용자의 처우)은 수용(제1장), 물품지급(제2장), 금품관리(제3장), 위생과 의료(제4장), 접견·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제5장), 종교와 문화(제6장), 특별한 보호(제7장), 수형자의 처우(제8장), 미결수용자의 처우(제9장), 사형확정자(제10장), 안전과 질서(제11장), 규율과 상벌(제12장), 권리구제(제13장)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처우

이하에서는 「형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수용자[10]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11],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 원칙적으로 장애인수형자[12]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시설에 수용될 수 있으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제57조 제6항). 그리고 「형집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4조 제5항), 그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50조 제1항).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교도소·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50조 제2항).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제51조).

---

10)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9조).

11) 종래 행형법에서는 '장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으나, 형집행법은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1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형집행법 제2조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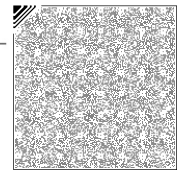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2조).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제53조).
- 소장은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제54조, 제45조).
-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제54조, 제46조).
-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제54조, 제48조 제1항).
- 소장은 장애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4조, 제48조 제2항).

한편 「형집행법」은 '수용자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관금품 관리지침」[13]을 법무부예규로 정하고 있다.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기기는 소지할 수 있는 영치품이 아니나(제25조 제1항 별표3), 소장은 장애인에 대한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단서).

또 「형집행법」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63조),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를 보완하는 교육용 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04조). 그리고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법 제64조), 교화프로그램 운영시 약물중독·정신질환·신체장애·건강·성별·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19조).

그 외에도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

13) 2020년 9월 21일, 「영치금품 관리지침」이 「보관금품 관리지침」으로 개정되었다.



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9조), 교정자문위원회는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64조).

다) 현행법의 문제점

먼저 「형집행법」 제54조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형집행법」은 장애인수용자를 비장애인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해야 됨을 장애인수용자의 권리나 국가의 의무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형집행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모든 종류의 장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도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하면서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형집행법」이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수용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우 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57조는 장애인은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지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과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만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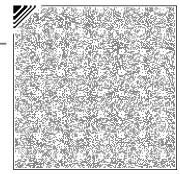
고 있으며(제43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이는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에서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를 대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문(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세면대를 '의무'로, 소변기, 점자블록과 그 밖의 시설 중 일부(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를 '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背馳)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수용자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구금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장애인수용자는 여러 영역에서의 활동에 큰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또 현행 법령에 의하면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종류별 특성에 맞는 재활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장애인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 구비, 장애인수용장 대한 직업훈련 편성 및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에도 많은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규정은 장애인수용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변기 외에는 '변기 등의 시설'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규정들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장애인수용자를 비장애인수용자에 비하여 차별을 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의 설비 역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거실에 준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등편의법」은 1998년 4월 10일 시행되었으나, 구(舊)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금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개정된 구(舊)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2호로 개정되어 2004. 7. 1.시행된 것)에서 비로소 교



도소 및 구치소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시켰고, 위 시행령 부칙에 따라 구금시설은 2005년 7월 1일 부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되었다.

이 「장애인등편의법」은 「형집행법」이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설치된 모든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위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구금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별 의무 및 권장사항의 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표 2-1〉 구금시설(교도소·구치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위와 같은 편의시설의 종류나 그 세부기준(「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14]은 개별 대상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정해져 있다. 개별 대상시설마다 특성이 다르겠으나, 특히 구금시설은 다른 대상시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장애인등편의법」은 구금시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금시설은 수용자가 이용하는 공간과 수용자 외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고, 수용자의 이동과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위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의하면, 예컨대, 장애인수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정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수용자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

14) 세부기준은 부록 참조

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역시 '구금시설' 내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이 아닌 외부 사무공간에 설치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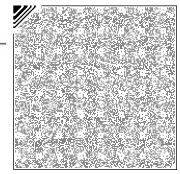
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에서 '의무'와 '권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역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수용자들이 절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구금시설 내에 위생시설 중의 하나인 '욕실'과 '샤워실·탈의실'이 '의무'나 '권장'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조차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수용자가 실제 생활하는 '거실'에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구금시설에 맞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그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2015. 7. 29. 이후 설치되는 구금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도 해당하므로 인증기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2의2]). 2020. 9. 10. 현재 구금시설 중 본 인증을 받은 시설은 없으며, 원주교도소와 성동교정시설[15]이 예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6].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 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차별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제4조). 즉,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15) 성동교정시설에 대한 예비인증은 2019. 11. 4. 만료되었다.
16)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사이트(https://www.koddi.or.kr/bf) 참조



경우(제4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위 4가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제5호),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를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제6호)를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위 제4조 제3호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4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에서 영역을 나누어 차별금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차별금지의 영역 중 구금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 구금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규정

○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규정이 있다.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제18조). 구금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7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구금시설은 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적용대상이고, 그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가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 정보접근 등에서의 차별금지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금시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금시설은 교정 당국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구금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이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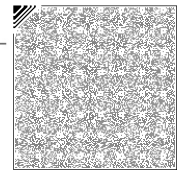
조 제2항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구금시설은 구금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17]. 예컨대, 수용동에 안내 방송이 나올 때 청각장애인수용자가 그 안내 방송의 내용을 인지할 수 없다면, 위 법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차별이 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23조 제3항).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제25조),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항). 그런데 위 조항이 구금시설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형집행법」은 구금시설의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17) 구금시설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2009.4.11.부터 적용대상이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3]).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13호) 구금시설에서의 실외운동은 위 '체육'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는 구금시설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체육활동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 중 일부는 구금시설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다음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이에 따르면, 구금시설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구금시설과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18]. 또 구금시설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제5항),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제7항),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 제26조 및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기기는 당연히 소지할 수 있는 보관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장의 판단 하에 반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 **참정권 행사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참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금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도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제27조).

○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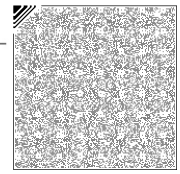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 등과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장애인의 의료행위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도 등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30조).

○ **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2조).

다) 문제점

먼저, 구금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의 사법기관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은 명백하나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어떠한 처우를 할 때,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위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구 사용이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또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고충상담, 교도작업 또



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 문언은 위와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장애인수용자가 비장애인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구금시설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외에도 앞서 살펴 본 여러 조항도 구금시설에 적용될 수는 있다. 또한 후술하듯이 각칙의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이고, 일반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것만으로는 형집행절차의 여러 단계 및 그 개별적 단계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당한 편의 또는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결국 현행법령 하에서는 교정당국의 법령 해석이나 혹은 관련 행정규칙의 유무 등에 의해서 정당한 편의나 지원이 제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장애인수용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의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이 하위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하여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마. 법무부 예규 등 기타 규정

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이 운영지침은 「형집행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집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제53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운영지침에서는 장애인수용자 혹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서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예컨대, 위 운영지침 제11조 제1항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를 외부산업체나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에 출장시켜 현장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출장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수용자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출장시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수용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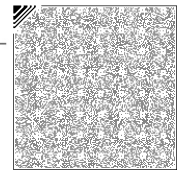
나)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이 지침은 「형집행법」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등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한정하여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형집행법」은 '수용자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조 제1항). 「보관금품 관리지침」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소지할 수 있는 보관품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제25조 제1항 별표3), "소장이 환자·노인·임신부·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침 제25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교도관의 보안근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방법과 계호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등을 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장애인수용자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입자가 거실을 지정할 때 장애인 또는 환자는 의무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환자, 장애인 등은 지정된 거실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절 통칙 제42조 거실지정)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은 접견 시 별도의 장소에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절 장소변경접견 제103호 실시사유). 한편 제5절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접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08조(전용 접견실 등 설치)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고려하여 전용 접수창구와 접견실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운동시간을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는 규정(제332조)과 목욕 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용자 등에게는 적절한 배려를 한다는 규정(제339조) 등을 두고 있다.

한편 제5절(장애인 및 노약자 접견) 제111조(청각장애인 등의 접견)는 청각장애인 등



이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접견을 하는 경우에 수어해독을 위해 가능한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있고(제1조) 국가에 대하여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6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국수어 통역을 사법기관이 제공하여야하는 정당한 편의로 정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인 중 문자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수어사용을 억제시키는 형태의 접견방법을 규정한 위 규정이 적절한지 의문이다[19]. 나아가,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법무부예규)이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교화 전담요원을 두어 통역을 수행하게 하고 있고, 접견시 한국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수용자가 그의 모국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소장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당해 모국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직원 또는 민간인을 통역요원으로 선정하여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 통역요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대사관·영사관 등에 협력을 구하여 통역요원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전담요원을 두거나 민간 수어통역사를 이용한 접견을 허용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지난 2019년 4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11월 26일,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 5가지 추진목표와 22개의 정책과제를 갖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법무부 교정본부, 2020.11.26. 보도자료). 이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수용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과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시된 과제 중 ‘의료처우 증진’과제의 일환으로 제시된‘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와 ‘집중의료 처우 교정시설 지정 추진’, 그

19)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도관이 영상중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어통역사를 입회하여 하여 접견 내용을 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접견 모습을 녹화하여 그 수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리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방안 마련'과제의 일환으로 제시된'수용자 정신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및 외부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 세부과제가 간접적으로 장애인수용자와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이 3가지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는 의무관 처우개선을 통한 의료인력 교정기관 유입 유도 및 공중보건의사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정신과 전문의 배치 추진 및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등 정신질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협의를 통해 교정기관 응급구조사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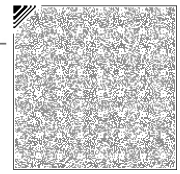
둘째,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 지정 추진'은 중증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정(구금)시설에 전문 의료 기능을 도입하여, 전국에 산재한 장기 입원 환자 수용 등 전문적인 의료처우를 시행한다. 또한 2~3차 의료급여기관이 전무한 지역의 환자관리를 위한 지방교정청별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을 1개 이상 지정한다.

셋째,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수용자 정신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및 외부기관 협력 강화'는 원격당직의사제를 도입하여 정신질환 신입수용자에 대한 투약처방 등 즉각적인 의료처우를 실행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출소예정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바. 국내 법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집행법」은 구금시설의 시설시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이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은 교도소·구치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즉, 「형집행법」은 구금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금시설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등에 관한 지침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을 정하면서 관물대, 싱크대 설치 공간을 포함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20] 세부적으로 어떠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20)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수용거실 면적 관련 부분)은 비공개 지침이므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그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수용자가 비장애인수용자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구금시설 내의 처우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어떠한 처우를 해야 하는 지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경우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달리 행정규칙을 두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구금시설의 노후화정도, 구금시설의 경비등급 등에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구금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 처우 혹은 편의제공의 기준과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한국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선행연구 분석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1990년대 초부터 실시되었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장애인범죄의 양상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구금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여기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연구 중 직접적으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이 연구에서의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가. 구금시설 관련 연구

첫째, 연성진 외 3인(2008)은 구금시설 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와 수용자 및 의무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용자 보건·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금시설 의료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문제점으로 구금시설 내 의료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불신을 갖는 점, 협소한 진료환경 등 의료시설의 부족하고 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구형인 점, 외부병원 이용이나 약품 구입에 있어 그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체계를 현실화할 것, 의사 임용 시 직급상향 조정 및 채용시 경력요건을 완화할 것,

의무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교육·홍보하고, 의약품 처방 시 일정 요건의 자비부담을 법규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예산 사용을 막는 한편 외부병원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예산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할 것, 구금시설마다 정신과 의사를 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치료중점 교도소에는 정신과의사 1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치료교도소는 정신과 종합병원이 있는 대도시 인근에 지정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료중점 교도소의 개념을 확장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의사가 병원장을 하는 요양병원 수준의 교정병원을 설립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원격화상진료의 진료절차, 진료비 처리 등에 관한 세부 내용, 혈액투석실 가동에 따른 시행요령, 수용자 외부기관 검강검진 실시에 따른 근거 규정을 법규정화할 것, 실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업무 법규범화 등 법·제도를 정비할 것, 의료처우개선을 위해 시설을 소규모화할 것, 수용자에 대한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수용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상담전문부서를 설치할 것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용자에 대한 보건·의료처우 실태를 상세히 다루고 있고,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루고 있기는 하나 장애인수용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실태연구로 보기는 어려워 본 연구와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본 연성진 외 3인(2008)의 연구와 유사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주영수 외 12인, 2016). 이 연구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52개 구금시설 중 10개 구금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의무기록 조사, 의료서비스 조사, 면접조사를 하여 건강 및 의료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건강권 개선방향으로 ① 구금시설 내에서 일차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 개선 및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연계 및 협력 강화, ② 일반 교도 행정차원으로 별도의 조직체계 또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③ 수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④ 모든 구금시설 내에 정신보건프로그램 제공, ⑤ 중증질환에 대한 관리와 응급의료에 대한 전달체계 확립, ⑥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구금시설 건강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위 연구는 수용자의 건강 및 의료이용실태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면서 정신질환 수용자에 관하여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설문지를 남녀로 구분하였을 뿐 장애 여부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라고는 보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6년에 실시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와 유사하게 구금시설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구금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권수진·한민경, 2018).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황을 살펴보고, 26개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의무관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처우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 연구에서는 구금시설 의료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구금시설에서 지급 및 복용가능한 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② 구금시설 내 의료진과 수용자간 신뢰회복을 위하여 의료진은 수용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수용자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 ③ 초빙 치과의사를 확충할 것, ④ 외부진료에 있어 대기 시간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 ⑤ 원격진료를 확대 시행할 것, ⑥ 의료수용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방안, 외부 병원에 수용자용 입원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구금시설의 수용자를 성별, 연령별, 질병·질환별로 구분하여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실태를 조사하면서 정신질환 수용자에 관하여도 분석하고 있으나 장애인수용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개의 연구는 모두 의료 등 건강권과 관련된 연구로 장애인 수용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수용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수용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장애인수용자 관련 연구

장애인수용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진수·이정민·이재영(2009)은 수사, 재판절차 및 형집행절차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로 ① 수용자와 교도관에 의한 차별, ② 과밀수용의 문제, ③ 편의시설 부족과 처우상의 차별 ④ 의료처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① 장애인에게 불리한 기존의 처우실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수용자들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교정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② 장애인수용자 담당관을 두고, 교정공무원에 대해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기법과 인권교육을 시키고, 다른 수용자

에 의한 장애인 학대 등 방지를 위한 감독 훈련이 필요하며, ③ 교도소 입소 시 장애인 수용자가 장애가 있음을 밝히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히 안내를 받게 할 필요가 있고, ④ 장애인수용자는 최소경비시설에 구금되어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에 구금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개조도 하여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법상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 연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휠체어나 목발 등의 사용으로 인해 행동반경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장애인수용자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히 설치된 수용시설에 수용해야 하며, ⑥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⑦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운동, 목욕, 교도작업,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상담과 레크리에이션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비장애인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장애인단체 등과의 협력,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점자책, 녹음테이프 형태의 책,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수화(수어)통역된 비디오 제공 등을 하여야하며, ⑧ 징벌절차에서 장애인수용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⑨ 장애인 수용자 석방 시 보호관찰소, 사회복지단체, 기타 적절한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가석방에서 있어서도 다른 수용자와 동등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위 연구는 장애인수용자의 차별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연구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형집행절차 이외에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형집행절차, 즉 구금시설 내에서의 장애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수용된 장애인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차별에 대한 조사보다는 주로 문헌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법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장애유형별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2008)에는 지난 2008. 7. 15.부터 2008. 12. 8.까지 사이에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수용자의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2008. 12. 8.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과밀수용환경 개선하고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권고 결정을 하였다. 위 직권 조사 결과 중 과밀수용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2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과밀수용에 관한 보다 최신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으로는 2018. 11. 5.자 17직권0002100,16진정0380801

2008. 8. 20.자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구금시설 장애인 혼거실 수용자 1,602명 중 1,033명(64.4%)이 평균 수용밀도 120%의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고, 특정 구치소는 정원 27명에 5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여 수용밀도가 185.2%에 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8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480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에 512명의 장애인 수용되어 있어 수용밀도는 108.6%로 나타났으나, 그 중 5개 노후 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정원 308명의 장애인 혼거실에 402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어 수용밀도가 130.5%로 높았다. 특히 위 현장 조사에서 수용정원이 4명인 장애인 혼거실에 최소 6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장애인수용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잠(이른바 칼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인이 야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 수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과밀수용으로 인해 1명은 붕괴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을 취침 공간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화장실 대변기는 437개 장애인 거실 중 420개 거실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중 299개에만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복도 벽면 손잡이를 갖춘 시설은 47개 구금시설 중 1개 교도소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넓고 수평 손잡이와 냉·온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된 수도꼭지를 보유한 화장실 세면대를 갖춘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구금시설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 종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의견은 ① 시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행 연습에 필요한 점자블록·점자표시·점자 안내책자·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점자정보단말기·자막수신기·자막생성보드·화면해설기·독서확대경·광센서 또는 레버식 수도꼭지, ② 청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청기기·자막 방송시설·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③ 지체장애인 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용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문턱 및 세면대·복도 벽면손잡이·미끄럼 방지 장치·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도꼭지·신체 교정용 신발·바퀴달린 보행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직권조사 당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131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구금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재활에 필요한 운동시간 확대, ② 과밀수용 해소, ③ 장애부위 찜질과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지급, ④ 편의시설 확충과 적절한 난방 등의 순서로 수용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등 25건(병합) 결정 등이 있다.

직권조사 중 일부분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중복되므로 위 직권조사 당시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고명수(2016)는 신체장애인의 수용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형집행법」 등 형집행법규를 분석·검토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되고 있는 않은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① 장애인 관련 법규상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에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할 것, ②「형집행법」은 여성,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제50조 내지 제53조)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수용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기본규정(제54조 제2항)만을 둔 채 구체적인 사항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법체계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에서 장애인은 다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 ③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전담시설과 대조적으로 단순히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출 것만을 요구하고 있어 「형집행법 시행규칙」제51조를 개정하여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에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장애인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전담교정시설에 요구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구비해할 것, ④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재활치료프로그램 개발·시행, 재활에 관한 전문 의료진과 장비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편성·운영)는 전담교정시설에만 해당되므로 일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수용자에게도 해당 조치가 적용되도록 법규 개정을 할 것, ⑤ 권리구제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함에 있어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고(제24조제1항 및 제2항), 구금시설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소속공무원은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제31조 제1항), 이러한 규정 등을 형집행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애인수용자가 그 과정에서 보다 쉽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⑥ 장애인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위 연구는 장애인 수용자의 차별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점이 있으나, 관련 법령만을 분석·검토하는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로서 문헌 연구뿐만 아니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까지 실시한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넷째, 오홍균(2017)은 '수용처우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교정시설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구금시설의 설계·건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기본적인 개선 방향과 설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구금시설 설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구금시설의 설계·건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참고할만한 의견을 일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형집행법」은 수용대상 별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분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 매뉴얼'이 세분화된 거실분류를 건축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수용인원과 수용동 개수 등을 고려하면 구금시설 내 다양한 수용자 분류 기준을 반영하기 어렵고,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83조 특수기능 교정시설 지정운영)상 구금시설을 기능 및 목적 등으로 분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소규모 구금시설의 거실수가 적다는 점, 장애인 거실과 치료거실의 구분이 모호한 점 등 수용구분에 맞는 시설 설계가 필요하다. ② 수용자의 입소시 분류심사를 통해 성별, 연령, 범죄종류 및 횟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용동을 지정해 집단화하는데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정시설 설계 매뉴얼」은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공간 분류조차도 서로 상이하다. 「법무시설 기준규칙」등에 수용동 분류에 따른 수용거실 별 최소 기준과 원칙은 설정하여 1인실, 3인실, 5인실의 배치와 배분을 정형적·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③ 구금시설은 특수주거용 건물인데, 법무부의 다른 시설(오피스)과 동일하게 수평 투영면적(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적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법무시설기준규칙」과「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수용거실 면적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22]. ④ 현행 규정에는 특수목적동이 설

22) 구금시설 건축법령의 수용거실 면적 기준(오홍균, 2017, p.37)

구 분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비 고
독거실	남·녀 일반	5.4㎡	기준 없음	화장실 면적 포함
	중구금			
	의료수용동	6.3㎡		
혼거실	남자 일반	3.4㎡	2.58㎡	화장실 면적 제외
	직업훈련, 장애인, 여자 수용자	3.4㎡	3.3㎡	
	의료수용동	4.3㎡	4.3㎡	
기타	보호, 진정, 징벌실	5.4㎡	기준 없음	
	가석방예정자	2.58㎡		
	임산부실	16.5㎡		
	대동유아실	16.5㎡		

계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설계 후 임의로 영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별 배치 및 면적이 상이하여 신축 후 증축 및 보수공사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보호실·진정실, 조사·징벌실, 의료동, 장애인거실, 개방처우 수용동 등 특수목적 수용동을 설계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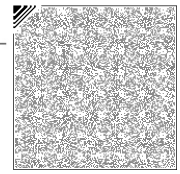
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1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에 1번씩 구금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8년에 실시되었다(김인순 외, 2018). 이에 따르면, 구금시설의 대상시설 수는 47개소이고, 설치기준 항목 수는 2,829개로 설치율은 81.3%, 적정설치율은 73.3%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표 2-2〉 구금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결과[23)]

편의시설종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매개시설	주출입구접근로	46	322	305	94.7%	288	89.4%	5.3%
	장애인주차구역	42	252	226	89.7%	198	78.6%	11.1%
	높이차이제거	46	502	364	72.5%	328	65.3%	7.2%
	소계	47	1,076	895	83.2%	814	75.7%	7.5%
내부시설	주출입문	46	322	263	81.7%	248	77.0%	4.7%
	일반출입문	43	211	179	84.8%	164	77.7%	7.1%
	복도	42	141	133	94.3%	128	90.8%	3.5%
	계단	22	176	120	68.2%	105	59.7%	8.5%
	경사로	2	16	16	100.0%	7	43.8%	56.2%
	승강기	3	30	30	100.0%	30	100.0%	0.0%
	휠체어리프트	-	-	-	-	-	-	-
	에스컬레이터	-	-	-	-	-	-	-
	소계	46	896	741	82.7%	682	76.1%	6.6%

23) 자료 : 김인순 외(2018), 2018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실태조사. 180.



편의시설종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위생시설	일반사항	46	406	245	60.3%	214	52.7%	7.6%
	대변기	40	320	293	91.6%	248	77.5%	14.1%
	소변기	-	-	-	-	-	-	-
	세면대	44	131	125	95.4%	116	88.5%	6.9%
	욕실	-	-	-	-	-	-	-
	샤워실	-	-	-	-	-	-	-
	소계	46	857	663	77.4%	578	67.4%	9.9%
계		47	2,829	2,299	81.3%	2,074	73.3%	8.0%

위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구금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설치정도와 적정설치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은 구금시설 내의 수용자의 거주공간, 이동공간 등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치된 편의시설이 장애인수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한 것인지, 장애인수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설치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그 설치 정도 등을 보여주지 않다는 점에서 위 실태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절히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24].

라.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구금시설 내 처우에 관한 연구와 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와 관련된 연구는 일부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비장애인수용자에 비해 의료적인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장애인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건·의료적 지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처우 혹은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수용자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아 실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경험을 조사하여 그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차별문제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문헌 조사에 기초하고 있었던

24)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분을 보기 바란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애인수용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구금시설 내에서의 일상생활영역과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처우 혹은 정당한 편의의 종류, 내용,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수용자 관련한 기존 연구를 보면, 교정공무원에 대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기법과 인권교육을 시킬 것, 입소 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술하여 적절히 안내를 받게 할 것,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세울 것,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히 설치된 수용시설에 수용할 것, 의료서비스, 운동, 목욕, 교육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비장애인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이 보장될 것, 분리수용에 관한 형집행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맞춘 구금시설 설계기준을 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서의 제안사항들은 대부분이 아직까지 법규범화 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제안 중 규범화가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법규범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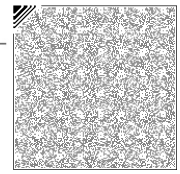
2) 해외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분석

(1) 유엔

가. 개요

장애인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차원의 별도의 국제규약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등의 유엔 인권규약들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차별금지[25]',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26]' 등의 조항들을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로 들 수 있다. 한편 자유권규약에서는 인신 구속자의 처우에 관한 별도의 조항(제10조)을 두어 수용자 인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3개 유엔인권규약들의 해당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25) 세계인권선언 제7조, 자유권규약 제26조
26) 세계인권선언 제5조, 자유권규약 제7조, 고문방지협약



〈표 2-3〉 유엔인권규약들의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보장 근거 조문

구분	내용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 한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중략)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국제 기준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이다. 여기에서는 장애를 일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장애를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약은 2008년 국회가 비준 동의하고 2009년부터 발효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며, 국제규약은 아니지만 장애인 수용자에 관한 유엔의 문서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만든 핸드북 「Prisoners with special needs」가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유럽지역사무소에서 발간한 수용자의 건강권 보고서 「Prisons and Health」에서도 장애인 수용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5년 11월 3일 채택한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는 구금시설 내 과밀수용 및 외부의료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권 등을 우려하였으며, 수감제도가 자유권 규약 및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7년 5월 11일 채택한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구금 환경에 대하여 구금시설의 과잉수용과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재소자 생활공간, 교도관 인력 부족, 의료서비스 및 외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역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명시된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교정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것과 이용 가능한 공간 추가 확장,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소자들을 외부 의료시설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조치의 시행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들에서 장애인을 직접 언급하거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이상,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 평등권과 접근권, 사법접근권 차원에서 장애인 수용자의 수용생활은 장애가 없는 다른 수용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이거나 가중된 고통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넬슨만델라 규칙)

넬슨만델라 규칙은 1955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었다. 이후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수정되어 제95조가 추가되었으며, 2015년 12월 17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넬슨만델라 규칙은 비준, 발효된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도 이념으로서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국제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넬슨만델라 규칙은 서칙(제1조~제5조)과 통칙(제1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제2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부 통칙에서는 기본원칙(제6조), 등록(제7조), 피구금자의 분리(제8조), 거주설비(제9조~제14조), 개인위생(제15조~16조), 의류 및 침구(제17조~제19조), 급식(제20조), 운동 및 경기(제21조), 의료(제22조~제26조), 규율 및 징벌(제27조~제32조), 보호장비(제33조~제34조), 외부와의 교통(제37조~제39조), 도서(제40조), 종교(제41조~제42조), 수용자의 소유물 보관(제43조), 사망·질병·이송 등에 대한 통지(제44조), 피구금자의 이송(제45조), 시설 직원(제46조~54조), 감독(제55조)등을 규정하고 있고 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은 A.수형자(지도원리, 처우, 분류 및 개별화, 특전, 작업, 교육 및 오락,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B.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C.미결수용자, D.민사상의 피구금자, E.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분류하여 기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넬슨만델라 규칙이 직접적으로 장애를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규정들의 해석과 적용은 당연히 장애 인지(認知)적(disability-responsive)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넬슨만델라 규칙을 살펴보면 장애인수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2-4〉 넬슨 만델라 규칙 중 장애인수용자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

구분	내용
원칙 및 지도원리	넬슨만델라 규칙 뿐 아니라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 처우에 관한 규정들은 장애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관련조항: 6조)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에 비하여 가중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관련조항: 57조)
분리수용 및 개별화	처우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 수용자를 분리된 시설 또는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통합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금시설에서는 필요성에 따라 분리 수용이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조항: 8조, 63조, 67조)
거주설비	위생설비, 목욕 및 샤워설비가 적절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관련조항: 12조, 13조)
의료	정신의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1명이상의 의사가 필요하며, 의료서비스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보건행정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피구금자는 전문시설이나 일반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구금시설내 기구, 비품, 의약품이 적절해야 하며,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 입소 후에는 가능한 빨리 장애나 질환을 발견하고 기록 및 판정해야 한다.(관련조항: 22조, 24조)
규율 및 징벌	장애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의사의 서면 증명이 요구된다. 또 장애가 있는 수용자가 징벌을 받고 있는 경우 의사가 매일 방문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진단하고 징벌의 정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장에게 조언해야 한다.(관련조항: 32조)
정보 및 불복신청	정보접근권과 절차에 대한 접근권은 특히 감각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들에게 중요하다.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됨과 동시에 적합한 형태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정과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할 방법 및 권리, 시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관련조항: 35조, 36조)
소통 및 정보접근	장애인 수용자에게도 동등하게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하며, 신문, 방송, 도서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시각이나 청각장애가 있는 수용자에게 정보접근에 대한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관련조항: 37조~40조)
직원교육	구금시설의 직원이 장애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직원 중에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관련조항: 47조, 49조)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장애인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 수용자가 사회복귀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관련조항: 60조)

구분	내용
사회와의 소통과 교류	장애인 수용자의 처우는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복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관련조항: 60조, 61조)
작업	장애인 수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적성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양의 작업이 부과되어야 한다. 장애인 수용자는 규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수용자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관련조항: 71조)
교육 및 오락	장애인 수용자에게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교육 및 오락, 문화활동이 비장애인 수용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관련조항: 78조)
석방 및 사회복귀	장애인 수용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출소 이후의 미래에 대해 배려하고 상담해야 하며 출소 이후 적절한 주거와 직업, 소득,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관련조항: 80조, 81조)

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그간 몇 가지 유엔 장애인 인권규약들이 제정되었고, '장애인권리선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UN의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등의 유엔차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권리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은 장애를 신체의 손상으로, 장애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장애를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장애문제를 사회적 책무로,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전(全)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협약의 원칙상 장애인은 누군가의 선의(善意)에 의하여 도움이나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참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국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접근권을 장애인에게 보장할 구체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구금시설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제13조(사법접근권)이다. 제13조에서 사법은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절차'이므로 행형절차도 13조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장애인에게 대한 당사국의 의무는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13조 제2항에서는,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항에 대하여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 제13조에 대한 일반논평은 없지만 제9조(접근성)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만약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과 사법부가 위치해 있는 건물이 신체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렵거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 없다면, 사법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IV-37).'라고 논평하였고 2014년 9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의 최종견해에서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경찰·교도관·변호사·판사·법조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이러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일반논평, 최종견해의 언급들은 구금시설 내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금시설 내 접근권이 '사법접근권'에 해당하며 평등권, 차별금지와 접근권의 측면에서 구금시설에도 다른 모든 영역과 같은 기준으로 건축물, 서비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구금시설 내 장애인의 권리에 비추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유용할 수 있다.

〈표 2-5〉 장애인권리협약 중 구금시설 내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

구분	내용
협약의 목적과 원칙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자유는 완전하고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한다.(제1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 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은 차별이며,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 역시 차별에 포함된다.(제2조)
당사국의 의무	협약 당사국은 협약상 권리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연구 개발 등 적정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해야 하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해야 한다.(제4조)
사법에 대한 접근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제공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 행정 분야의 직원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장려해야 한다.(제13조)

구분	내용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제15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의 가능한 최대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하며, 양질의 이동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 등에 대한 보조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촉진해야 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 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제20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당사국은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해야 한다.(제21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술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게 사전 고지된 동의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제25조)
근로 및 고용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제27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보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제30조)
통계와 자료 수집	당사국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제31조)
이행에 대한 감독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협약 이행에 대한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제33조)

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Prisoners with special needs」

유엔은 1990년 제45차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마약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집행기구로서 유엔마약통제계획을 설립하였고, 1997년 11월 국제범죄방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사무소(ODCCP)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 10월 현재의 UNODC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UNODC는 2009년, 장애인 뿐 아니라 정신건강케어가 필요한 수용자, 민족·인종적 소수자와 원주민 수용자, 외국 국적 수용자, 성적(性的) 소수 수용자, 노인 수용자, 만성질환 수용자, 사형선고를 받은 수용자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special needs)한 수용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핵심 메시지(key messages)로 제시하였다(UNODC, 2009, 43).

-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에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모든 사례에서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장애가 있는 범죄자, 특히 폭력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금시킬지를 결정하는 것과 감옥 안에서 받는 돌봄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 폐쇄되고 제한된 환경의 특성과 과밀화로 인한 폭력,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분류 조치나 감독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사회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감옥에서 더욱 가중된다. 감옥의 과밀화는 과밀화된 감옥의 특징인 방임, 심리적 스트레스와 적절한 의료적 조치의 부족으로 인해 무력화의 과정을 가속화 한다.
- 장애인 수감자의 평등한 처우와 인권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도소 당국은 감옥안의 이 취약한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이슈는 직원교육, 분류, 편의제공,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안전, 출소 준비, 가석방과 사면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인수용자를 대상으로 내린 권고는 다음과 같다.

〈표 2-6〉 장애인수용자 대상 권고(UNODC, 2009, 53-55)

구분		내용
입법자와 정책입안자		-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한 형사 범죄로 기소된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된 법과 절차를 마련할 것
사법당국		- 장애가 있는 범죄자를 그 범죄자와 그가 가진 위험성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적합한 치료와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전환할 것 - 수감된 경우의 특별한 지원 필요성과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장애가 있는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 - 지역사회의 감독 하에 적절한 경우 치료와 결합된 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 구금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형 집행기관과 보호관찰 서비스,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정책 및 전략	- 장애인수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평등한 처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수용시설 서비스 정책 선언문을 작성할 것 - 장애인수용자의 특별한 필요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 - 장애인수용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정책을 점검하고 수정할 것 -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와, 정책이나 전략 개발에 필수요소로 장애인 수용자의 욕구조사를 수행할 것 - 장애인수용자들이 직면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문제점과 모범사례를 찾기 위한 정기적인 자료 수집과 평가를 수행할 것
	직원(staff)	- 자원이 허락되는 한, 각 교도소의 한 직원을 장애인수용자의 담당자로 지정하고 장애인수용자의 특별한 필요와 정책이슈를 관리하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 -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돌봄 기술을 수용시설 직원훈련에 포함하고 장애인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들과 동등한 인권이 있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 - 다른 수용자들에 의한 학대와 잘못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도록 직원을 교육할 것 - 정신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진과 협업하고 장애인수용자의 고통의 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직원들을 교육할 것
	사법 접근	- 장애인수용자가 구금 초기부터 다른 모든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자문에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전체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에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와 관련된 특별한 요구 사항들을 제공할 것
	입소	- 장애인수용자가 입소하게 될 때 자신의 어떠한 장애라도 밝힐 수 있는 기회와 입소 단계에서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할 것 - 장애인수용자들에게 교도소 및 교도소의 규칙에 관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것 - 장애를 가진 수용자에게 그들의 장애와 관련된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모든 형태(any form)의 보조기기를 계속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만일 거기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공할 것 - 장애를 가진 수용자가 그들의 능력과 특별한 필요를 식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지원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입소 초기 프로그램의 제공을 보장할 것

구분		내용
		- 장애인수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면밀하게 설명할 것
	배정과 숙소	- 장애인수용자를 적절한 숙소로 배정하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조정할 것 - 배정을 결정할 때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수감자에 의한 학대의 위험을 고려할 것
	의료서비스(health care)	- 장애인수용자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여기에는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적절한 조력인을 제공할 것을 포함함 -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것과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전문가를 제공할 것
	프로그램과 서비스 접근	- 장애인수용자의 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상담,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수용시설 안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장애인수용자의 필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수립 할 것 -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유사한 장애를 가진 수용자 그룹과 적절한 그룹 활동을 조직할 것 - 교도소 도서관이 장애인수용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 형식의 책을 제공할 것을 보장할 것. 거동에 장애가 있어 도서관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책을 독방이나 혼거실에 배달할 것 -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의 세부 연락처를 제공할 것
	안전과 보안	- 장애인수용자를 불공정하고 불균형하게 처벌하지 않을 것 - 장애인수용자가 안전함을 느끼도록 보장할 것. 예를 들어 특별한 감각/민감성(special sensitivity)을 가진 장애인수용자를 수색할 때는 우선 수색의 이유와 절차를 설명할 것 - 독방감금은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시행할 것 - 징계를 위한 청문절차에서 장애인수용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 - 이의제기 절차에 장애인수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만일 장애로 인하여 이의제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출소, 조건부 가석방, 사면의 준비	- 장애인수용자의 출소를 준비하면서 보호관찰서비스, 복지기관과 적절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모색할 것 - 조건부 가석방에 장애인수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장애인수용자의 장애가 교도소 상황(prison conditions)에 대처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져, 사회 재통합의 노력을 저해하는 경우에 그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사면을 고려할 것

마.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 「Prisons and Health」

세계보건기구(WHO)의 유럽지역사무소에서 2014년 발간한 「Prisons and Health」는 유엔이나 WHO의 공식적인 의견이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전문가에 의해 구금시설내의 건강증진과 위험 감소, 그리고 출소 이후 사회의 위험감소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특별히 이 지침서는 ① 인권과 의료윤리, ② 감염성 질병, ③ 비 감염성 질병, ④ 구강 관리, ⑤ 위험요소, ⑥ 취약한 집단, ⑦ 구금시설의 건강관리 측면에 있어 더 나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⑥ 취약한 집단'은 앞에서 살펴본 UNODC의「Prisoners with special needs」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신체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있다.

- 구금시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수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으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나 치료와 관련된 당국자들의 명확한 의무가 제시 되었다. 특별히 장애인권리협약 25조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아래와 같이 보장하고 있다.

> 제25조 건강
>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이하 생략)

- 유럽평의회의 각료위원회의 권고 No. R (98) 7(수용시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윤리적, 조직적 측면) 50단락 에서는 구금시설의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수용자와 고령 수용자는 가능한 한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인 변경은 외부 환경과 유사한 정도로 이루어 져야 한다.

〈건강문제〉

- 신체적 장애를 가진 수용자들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정기적인 치아, 시력, 청력검사 및 치료와 같이 모든 수용시설에서 가능하지는 않은 몇몇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서비스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휠체어 이용자나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조기에 발견과 적절한 치료, 악화 예방이 필요한 욕창과 같은

특별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특별히 감각장애를 가진 수용자의 경우 고립된 환경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용시설 환경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감각장애인이 직면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고려하여 그들이 상담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적합한 구금시설〉
-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구금시설 입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단, 침대, 화장실과 욕실, 수용시설의 프로그램과 휴게실 등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유럽 평의회의 권고와 같이 신체적 장애인의 필요에 맞춘 구조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벽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계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밝은 색깔이 사용되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경사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적절한 구금 방식〉
- 장애인들은 폭력과 굴욕적인 처우에 매우 취약하다. 편견이나 차별,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은 구금시설의 대응 체제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직원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2) 미국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서 평등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들과 옹호인들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재활법(제504조)과 장애인법, 그리고 연방규칙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구금시설 역시 이 법들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활법과 장애인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된다.

가. 연방 규칙(Federal Regulations)

미국 연방헌법의 최고법조항(Supremacy Clause)에 의해 주법에 우선하는 미국 연방규칙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참여에서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등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35.130(a))고 규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은 지원이나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지원, 혜택, 서비스에 참여할 기회를 거부하거나, 지원·혜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아닌 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서비스나 프로그램, 활동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이나

관행,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27].

나.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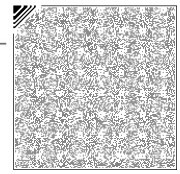
미국 재활법 제504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연방 기관이나 연방 재정이 지원되는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일부분이라도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 기관 및 단체 전체에서 차별행위가 성립하고, 심지어 시스템 중 일부만이라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해당 시스템 전체에 연방법이 적용 된다[28]. 일부 법원이 교도소 내의 활동은 제504조의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들은 이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활법에 의하여 차별행위로 간주된 행위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다.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1990년 7월 26일 부시 미국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시행되는 종합적인 장애인법인 미국장애인법(ADA)은, 제2장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의 차별금지와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 제2장은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제공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를 규정하며, 재정 보조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활동이나 사업,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법은 미연방법전 제42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2008년 개정되었다(ADA Amendments Act, ADAAA). ADA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장애인(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은 장애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이익이 거부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29].

ADA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시행령(Regulation)에는 구금시설에 관한 좀

27) 28 C.F.R. §35.163; 28 C.F.R. §35.106.
28) Ruth Colker, Federal Disability Law(2016), p.58, 김재원·박종현 역
29) 42 U.S. Code § 12132.Discrimination



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30],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ADA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인 구금시설 수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구금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활동의 참여나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장애가 있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첫째, 접근 가능한 생활실이나 침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수용자를 부적절한 보안등급으로 배치해서는 안 되고, 둘째,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한 의료실로 지정된 곳에 장애인수용자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셋째, 다른 사람들이 수용된 곳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곳으로 배치해서는 안 되고, 넷째, 다른 사람들이 수용된 곳과 달리 원거리에 수용함으로써 가족들의 면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구금시설은 장애가 있는 수용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포함된 생활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10년 편의시설 기준[31]에 따라 물리적 개조와 생활실의 추가를 포함한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0년 편의시설 기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구금시설은 2010년 기준에 따라 전체 수용거실 중 최소 3%, 무조건 1개 이상의 수용거실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규정된 이동편의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 수용거실을 변경하는 대신 같은 구금시설 내에 접근가능한 새로운 수용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판례분석

◦ pierce v. district of columbia

2013년 2월, 심한 청각장애를 가진 윌리엄 피어스는 미국 교정공사(CCA)가 컬럼비아 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워싱턴 D.C.의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장애를 고려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어스의 요구사항은 욕구조사(intake)와 교육, 병원 방문(medical visit)시 공인된 미국수어통역사를 제공하거나 만일 수어

30) § 35.152 Jails,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 and community correctional facilities.

31)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Department of Justice, September 15, 2010, 이 지침은 미국 ADA 홈페이지(https://www.ada.gov/)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연방 및 지방정부시설(Title II), 공중숙박시설 및 사업시설(Title III)에 설치해야 할 세부적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시설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통역사 제공이 어렵다면 비디오폰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응급상황에서의 시각적인 알람을 제공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컬럼비아 구 법원은, 정부가 장애가 있는 수용자의 장애로 인한 필요사항을 파악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의도적인 방관(deliberate indifference)으로 판단하여 7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정부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 United States v. Georgia; Goodman v. Georgia

ADA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툰 유명한 판결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토니 굿맨은 조지아 주 교도소가 휠체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수용거실에서 하루 23시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목욕과 화장실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장애로 인해 서비스와 프로그램 이용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유로 조지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과 적극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조지아 주는 ADA가 헌법이 의회에 부과한 권한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주 교도소가 ADA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주 법원은 주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결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ADA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 Armstrong v. Davis

이 소송은 6개 유형의 장애(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를 가진 수용자와 가석방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가석방 심사와 가석방 취소 등 가석방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석방의 통보, 심리, 이의제기 절차가 서면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원고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적절했음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일부 원고는 청문권을 포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궁극적으로 당국이 재활법과 ADA를 위반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어겨 원고들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부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법원은 교정당국이 ADA에 따라 정책, 절차, 시설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만들라는 내용의 적극적 구제조치(Injunctive Relief)를 내렸다.

(3) 영국

영국은 1995년 사회의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을 제정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10년 성, 인종, 연령 등을 포괄한 '평등법'을 제정하면서 평등법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영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구금시설 내 장애인수용자 인권에 관한 문제를 장애차별로 접근하는 관점이 유력해 보이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평등법으로 통합되기 전인 2009년에 발간된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의 초록에서도 '모든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범죄자 관리 서비스(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역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구금시설에서도 장애인의 평등을 촉진하고 불법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여 구금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장애차별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왕립 구금시설서비스(HM Prison Service)의 구금시설 서비스 명령(Prison Service Order 2855)과 법무부 범죄자 관리서비스(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의 구금시설 서비스 지침(PSI, Prison Service Instructions, 32/2011)에서 장애인수용자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보건부에서 제작한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가이드북(Information Book for Prisoners with a Disability)을 장애인수용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가. 2010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

평등법에 의하여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속성에는'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지향'등 여덟 가지가 있으며(제4조),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속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 차별 및 복합 차별), 또는 형식상으로는 중립적이어서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되는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간접 차별)는 차별행위로서 금지된다. 또한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장애(제15조), 성전환(제16조), 임신 및 모성(제17조)이 이에 해당하며,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한 괴롭힘과 보복조치는 금지된다. 평등법에서 규제하는 장애차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장애로부터 비롯된 차별
(1) 다음과 같은 경우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a) 장애를 이유로 인해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b) 이러한 대우가 합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례적인 수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한다면 제15조(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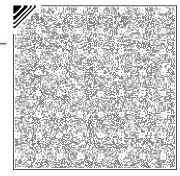
평등법에서는 적극적으로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데(Part 11, Chapter 1), 공공기관은 차별과 괴롭힘, 보복조치, 기타 금지된 행위를 제거해야 하며, 서로 다른 보호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고, 보호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149조 (1)).

특히 기회의 평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되는 속성을 갖는 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 ② 보호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속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공유하지 않는 특별한 필요, ③ 보호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불균형하게 낮은 공적 생활의 참여와 다른 활동들을 촉진할 것(제149조 (3)). 그리고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점은 ① 편견을 제거하고 ② 이해를 증진하는 일이 포함된다(제149조 (5)).

나. 구금시설 서비스 명령 2855호 (PSO, Prison Service Order 2855)

영국의 구금시설 서비스(HM Prison Service)에 적용되는 명령 제2855호에는 신체적, 감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수용자 관리를 위한 구금시설 정책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구금시설 장애인정책의 목적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전체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1.1).

구금시설은 신체적·감각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수용자가 가능한 한 구금시설에서의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구금시설의 장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 또 구금시설의 장은 장애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를 반영한 관행이나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또 구금시설의



장은 정책이나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담당 직원을 지명해야 한다(2.1).

구금시설 서비스 제공자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관행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접근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까지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거나 조정해야 한다(2.4).

장애를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장애인에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나 시설을 변경하지 않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2.5.).

구금시설은 장애를 가진 수용자 또는 방문자가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서비스의 성격과 개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며, 특수한 장비의 제공, 직원의 추가 지원 또는 수어통역사와 같은 기타 인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2.6.2). 이 법은 구금시설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 전문가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적절한 전문가나 자원봉사 조직의 자문을 구하는 등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2.6.3).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의 예외사항이 있는데 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을 이유로 하거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수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질 낮은(ruin)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6.4).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용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구금시설은 적절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 시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수용자, 그리고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들을 위한 지원은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보조지원 또는 서비스가 요구될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농맹인)처럼 다중적인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수용자들을 고려해야 하며, 구금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이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서비스와 조정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2.7).

또 항목별 수용자 관리를 위한 사항들은 별도의 항에서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수용자 관리를 위한 사항(제3부 수용자 관리)

구분	내용
입감 및 인도	- 입감 및 인도 기간 동안 수용자의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장애가 있는 수용자들의 의사소통, 이동성 요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며 형기 중에 재점검 되어야 한다. - 수용자의 반응에 대해 섣불리 추측하지 말고 명확히 의사소통을 하여 섬세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청각장애 수용자에게 수어통역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수용자를 위한 안내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야 하며 특별히 수용시설의 규칙에 대해 알려야 한다.
편의제공과 배정	- 개인의 이동성, 일상생활 기술과 수용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수용거실 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 수용자가 이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평가를 위하여 건강관리센터로 의뢰할 필요가 있다. 의료진은 방 배정과 작업 할당 또는 기타활동에 관하여 수용자의 능력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구금시설의 장은 경증의 이동 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일반 거실에 수용해야 한다. - 특별한 필요를 사정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자원(local NHS Trust and Social Services)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타 정보와 자문을 외부의 기관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 응급상황에서의 대피를 위하여 장애인수용자 특히 청각장애나 신속히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는 개별 수용자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적절한 직원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	- 구금시설은 장애인수용자가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위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확실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 구금시설은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로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이 장애인 수용자에게 접근가능한지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장소를 변경하거나 교육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교육 자료는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수어통역사와 같은 인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각 수용자들이 입감 단계에서 그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평가되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강조된 개인별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계약에 따라, 계약자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수용자에 대한 평가나 수업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교육 및 평가는 학습부진이나 장애가 있는 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수용자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작업	- 구금시설은 장애인수용자가 최대한의 고용 기회에 접근함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용자의 장애만을 이유로 작업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구금시설에서 수용자가 작업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장애인수용자는 그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한다. 적절한 작업이 아직 가능하지 않다면, 구금시설은 대체 작업이나 목적이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용 가능했던 것과는 다른 성격의 작업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체육교육	- 구금시설은 장애인수용자가 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의학적 조언에 의하여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체육 교육에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분	내용
도서관	- 도서관 서비스는 모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도서관이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다면 구금시설은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 도서관은 시각장애가 있는 수용자를 위해 큰 활자로 된 책이나 음성인식이 가능한 책에 대한 접근을 준비해야 한다.
활동 프로그램	- 수용자가 형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특정한 과정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 수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때 개별적인 의사소통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각장애가 있는 수용자가 토론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수어통역사가 필요할 수 있다.

다. 구금시설 서비스 지침 (PSI, Prison Service Instructions, 32/2011))

PSI 32/2011은 장애에 특정된 서비스 지침은 아니지만 인종과 장애를 포함한 모든 평등 이슈의 관리를 위한 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모든 구금시설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구금시설의 평등권과 관련된 관리, 모니터링, 평등영향평가, 사건보고 등의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따라야 하고 구금시설의 장은 모든 직원들이 이 지침을 인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지침에서 장애에 관한 사항은 8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과 학습장애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은 부록G와 부록H에서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8. 장애

8.1 구금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어떤 형태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금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장애상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 정보를(입감 시와 그 이후에도) 내밀하게 취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수용자가 자신의 장애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은 모든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8.2 구금시설의 장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수용자와 방문자가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장애를 가진 수용자와 방문자를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장은 구금시설의 정책 및 관행, 건축 환경 또는 보조지원 및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수용자 및 방문자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만일 그렇다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수용자 또는 방문자가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8.3 구금시설의 장은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수용자가 다른 적절한 시설로 이감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구금시설 담당 국장(the Deputy Director of Custody)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8.4 장애인수용자의 이감은 장애를 이유로 지연되거나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이감 예정인 구금시설이 적절한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8.5 구금시설의 장은 장애인수용자가 법정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호송담당자와 법원 직원에게 장애에 대한 세부 사항과 장애인 수용자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부록 G

합리적인 조정

G.1.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범죄자 관리 서비스)는 합리적인 조정의 책임이 있다. 합리적 조정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기준, 또는 관행을 변경하거나, 물리적 형태를 변경하거나, 보조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정이다. 이 의무는 선행적인 의무이며, 다양한 장애인수용자와 방문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재의 방식이나 건축 환경이 장애인을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구금시설에서 장애인수용자가 시설의 정상적인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G.2 법률은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지정하지 않으며, 법적 조치에 있어 합리성은 개별적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G.3 합리성을 고려할 때 다음 요소 중 일부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떠한 단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실행가능한지
-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 예산 및 기타 조정을 위한 비용
- 구금시설의 재정, 기타 자원의 범위
- 조정에 이미 사용된 자원의 양
- 재정적 또는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이하 생략)

부록 H.

학습장애

H.1. 구금시설의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7% 내지 14%의 수용자들이 학습장애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지역사회 내의 2%의 학습장애인 비율과 비교된다.

H.2.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고, 이해하고,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면 단순히 참여를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수용자들의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를 식별하기

H.3. 잠재적인 학습장애를 식별함으로써 건강관리와 교육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입감 절차에서 수용자의 능력이 평가된다면 이 과정은 더욱 빨라진다. 일부 수용자의 학습장애의 정도는

학습 장애가 있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없음을 의미할 수 있다.

H.4. 수용자가 스스로 학습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직원의 역할이 아니며, 이는 보건 전문가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수용자가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명백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를 위해 천천히 정보를 살펴보는 것을 포함한다. 학습 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기적인 정보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구금시설 내에서의 배치

H.5. 구금시설에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를 배치하는 것은 직원이 그들의 안전과 보안을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주 수용 동, 취약한 수감자를 위한 동,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거실로 배치될 수 있다.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와의 의사소통

H.6.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수용자에게 새로운 상황에 있는 이유와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설명한다.
- 수용자의 이름을 문장의 시작 마다 사용한다.
- 시각 자료와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는 수용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많은 양의 정보를 작은 단위로 분할한다.
- 의사소통의 각 단계에 대해 수감자를 준비시킨다. 예컨대, '존스씨, 이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또는 '존스씨,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 참을성 있고 침착하게 있는다. 수용자가 질문을 처리하고 답변을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는다.

H.7.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들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 장애가 있는 일부 수용자는 단순히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당신을 두려워해서 진술이나 질문에 동의하는 것일 수 있다. 일부 수용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워 당신이 이야기 한 것을 이해하는 척 한다.

일상생활

H.8.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스스로 서식을 작성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음식이나 매점이용, 가족이나 친구의 방문 신청, 이의제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할 때 일부 수용자를 도와야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용자 지침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H.9.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다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편지 읽기 및 쓰기
- 구금시설 정보 읽기, 그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기 또는 둘 다.
- 시간을 말하기
- 빨래
- 전화 걸기

H.10. 규칙과 규정을 수용자가 스스로 읽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수용자에게 직접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H.11. 적절한 위험의 평가와 감독을 받는 수용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될 수 있다.

인센티브 정책의 프레임워크

H.12. 수용자의 학습 장애와 그 학습장애의 결과인 모든 행동의 수용자의 인센티브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자의 학습장애는 대인관계와 지침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수용자의 인센티브 수준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고려되어야 한다.

고용

H.13. 학습장애를 가진 수용자가 작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적절한 경우, 절차에 대한 조정과 대체적인 형식의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습장애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에게 설명하는 것 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절차를 설명해야 할 수 있다.

제도

H.14. 수용자의 학습장애로 인한 어떠한 조정도 형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입(Interventions)은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에게 적절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활동은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를 배제해서는 안다.

라.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HM Inspectorate of Prison, 「Disabled Prisoners」)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평등법으로 통합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수용자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82명의 장애 담당 직원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2009년 보고서를 발간[32] 하였다. 보고서는 수용시설의 장애인 수용 현황에 관한 일반적인 보고와 함께, 구금시설 도착 및 구금시설에서의 첫 날(Arrival and first days in custody), 환경과 관계(Environment and relationships), 안전(Safety), 장애인수용자 관리(Management of disabled prisoners), 보건서비스(Health service), 활동(Activities), 수용 질서(Good order), 사회 복귀(Resettlement) 측면에서의 간단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바람직한 처우를 위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문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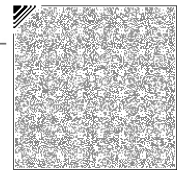
32) Thematic report by HM Inspectorate of Prisons, Disabled prisoners: A short thematic review on the care and support of prisoners with a disability, March 2009

- 모든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또는) 감각적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 모든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잠재적인 학습 장애나 부진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도착 시 사정을 통해 확보된 장애에 관한 정보는 LIDS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수용자가 장애가 없다고 하거나 감추는 경우를 포함한다. 추후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나 장애를 알게 되는 경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정보는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 수용자가 다른 구금시설로 이감되는 경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또는) 감각적 장애나 학습장애 또는 부진에 관한 정보는 이감될 구금시설로 전달되어야 한다.
- 구금시설에 도착한 이후 장애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준비되고 장려되어야 하며, 직원과 수용자 모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의료서비스 담당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토콜이 있어야 하며 25/2002 교도소 서비스 지침을 충족하는 정보가 장애인담당직원과 공유되어야 하며, 장애인 담당직원은 서비스 관련 직원과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 접수, 교도소에서의 첫 날과 안내 절차에서는 장애인 수용자의 개인적인 필요와(또는) 불안감을 고려하여 추가적이고 맞춤화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안내 절차는 장애인수용자에게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안내절차와 구금시설 정보 및 공지는 학습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수용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이해가 가능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되어야 한다.
- 수용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거실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거실 배치는 의학적 필요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 장애인수용자 전용 거실은 주된 수용동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수용자의 필요가 변경되거나 수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 합리적인 조정은 장애인수용자가 제도나 시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하며 욕구 사정이 업데이트 되는 데 따라 유지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들의 명단은 직원과 구급대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Wing staff은 공식적인 대피계획과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모든 직원과 수용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구금시설의 서식들은 모든 수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학습이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들은 직원이나 공식적인 돌봄 종사자, 멘토를 통해 서식의 완성을 도움 받아야 한다.
- 소수자 차별이나 혐오 사건을 보고하는 서식은 장애를 포함한 소수자 이슈로 인해 피해자가 된 수용자들에게 활용 가능해야 한다. 보고된 사건은 충분히 조사되고 다뤄져야 하며 수용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구금시설 생활의 모든 영역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활동에 대한 접근, 모임에 대한 참여, 물리력의 사용, 포상, 이의제기, 괴롭힘과 따돌림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제기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이 되어야 한다.
- 각 구금시설들은 수용자의 참여 하여 장애인수용자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은 최신의 욕구사정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장애인수용자들의 욕구를 이끌어 내고 충족할지와 정책이 어

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 장애 담당직원과 함께 장애인식개선, 욕구조사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수용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
- 고위 간부와 수용자 대표의 참여하에 장애인 위원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려야 하며 활동의 주요 사항이 정립되어야 한다.
- 장애 담당 직원은 고위 간부들의 지원과 함께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배정받아야 한다.
- 장애가 있음을 밝힌 모든 수용자는 그들의 욕구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바탕으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은 수립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 구금시설은 책임자의 관여 하에 장애인수용자의 사회복지욕구를 확인하고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교육과 지원, 적절한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구금시설 돌봄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 장애로 인해 노역이 부적합한 수용자가 주간에 감금되지 말아야 하며 적절하고 충분한 대체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 출소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포함한 장애인수용자 사회복귀 욕구가 정확하게 평가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마.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안내서(Information book for prisoners with a disability)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이 안내서는, 영국 법무부와 보건부가 파트너십을 맺은 Offender Health와 민간 재단인 The Prison Reform Trust가 2009년에 함께 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쉬운 말 버전과 CD로도 제작되어 있고 비상업용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구금시설 직원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수용자에게 구금시설에서의 자신의 권리와 구금시설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이 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장애가 무엇인지, 장애인수용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구금시설 도착,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디에서 살게 되는지,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도움 받기, 돈, 이의제기하기, 건강, 외부와 연락하기, 형 집행, 추가적인 정보 얻기, 구금시설을 떠나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이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장애가 무엇인가?**
  - 장애를 가진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들
  - 원치 않는다면 장애가 있음을 말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경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구금시설 서비스 명령(PSO 2855)의 주요 내용

- **당신의 권리**
  - 200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 PSI 2855와 구금시설 기준 8의 내용

- **구금시설에 도착하기**
  - 접수에 관한 사항
  - 건강 평가에 관한 사항
  - 장애 담당직원
  - 불안하거나 걱정이 될 때
  - 전신수색
  - 신변 인도

-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장애 담당 직원(Disability liaison officer(DLO)
  - 장애 담당 직원의 역할
  - 구금시설 성직자
  - NGO(연락처)
  - 심리학자
  - 범죄자 담당 직원 및 슈퍼바이저
  - 교육 담당
  - 도서관 사서
  - 개인별 담당직원
  - 독립적 모니터링 위원회
  - 법무관
  - 다른 수용자(친구, 장애인대표자, 동료 지원가, 멘토, 외부 기관 등)

- **어디에서 살게 되는가?**
  - 치료거실, 수용거실에 대한 안내
  - 혼거실에 대한 안내
  -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적합한 수용시설이 아니라면 이감을 요구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정보

- **일상생활**
  - 음식
  - 교육 훈련과 작업
  - 운동
  - 교류
  - 도서관
  - 매점
  - 면회
  - 일상생활에서 도움받기
  - 읽기, 쓰기 및 서식 작성 도움받기
  - 동료지원
  - 장애인 대표자

- **돈**
  - 구금 전 받고 있던 보수에 대한 정리
  - 유지되는 보험 혜택에 관한 정보
  - 노역으로 인한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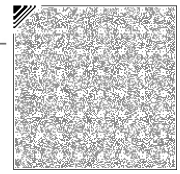
- **이의제기**
  - 구금시설에서 이의제기하기
  - 폭력이나 괴롭힘

- **건강**
  - 의약품 소지
  - 안경사 또는 치과의사 만나기
  - 전문가의 지원 받기
  - 건강에 관한 이의제기

- **연락하기**
  - 면회
  - 서신과 전화

- **형 집행**
  - 형기 및 교정을 위한 과정에 대한 안내
  - 규칙위반으로 인한 평결
  - 규칙 준수 시 인센티브

- **추가적인 정보**
  - 도서관, 수용자 안내책자, 관련 규정 등



- **구금시설을 떠나기**
  - 범죄자 관리자 접촉
  - 출소자 혜택 요청
  - 숙소 찾기
  - GP에 등록하기
  - 사회서비스
  - 다른 기관
  - 직업, 교육, 훈련에 도움 받기

- **도움되는 기관 정보**

(4) 시사점

지금까지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유엔의 국제협약들과 사례, 미국, 영국의 법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를 통하여 구금시설의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사항

구금시설의 장애인수용자 처우 문제는 인권 관점, 권리 기반의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차별금지 원칙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구금시설 자체적으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장·단기의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의 수립에는 복합적인 장애와 다중적인 요소(장애여성, 장애노인, 외국 국적 장애인 등)들을 고려해야 한다.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

나. 합리적인 조정

다양한 유형과 상황에 놓인 장애인수용자와 시설마다 상이한 구금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국 구금시설 서비스 지침(PSI 32/2011)의 '합리적 조정' 개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조정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기준 또는 관행을 변경하거나, 물리적 형태를 변경하거나, 보조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

정이다. 합리적 조정은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인 개념이다. 단순히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단편적·일률적·형식적인 조치로 족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수용자가 시설의 정상적인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지를 기준 삼아야 한다. PSI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미리 법률에 규정해 놓을 수 없다. 개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조정의 책임자를 정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예컨대, 소장과 직원, 장애인수용자 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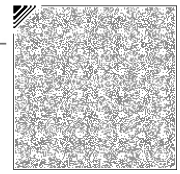
구금시설의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정당한 처우를 위하여 구금시설의 장과 직원들, 봉사자들, 비장애인수용자, 장애인수용자 등 구금시설의 구성원들에게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포함되나, 구금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식개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금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정보 및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와 구체적인 방법,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인식제고(rising awareness) 뿐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training)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33]. 또 장애인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담당 직원 또는 다른 장애인수용자나 봉사자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신체활동보조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입소단계와 배정

입소절차에서 장애인수용자에게는 구금시설의 생활과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담당 직원, 고충처리 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영국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안내서 'Information book for prisoners with a disability'를 참고하여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입소절차에서 장애인수용자에 관한 정보는 따로 수집·관리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장

33)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경찰·교도관·변호사·판사·법조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훈련"이 아닌 "인식제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애 유형과 정도, 필요한 지원의 내용, 건강, 투약 등 의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 여부는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지를 사정(assessment)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용거실 배정에는 반드시 장애가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구금시설에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적합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구금시설로 이감을 고려할 수 있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수용 동 또는 수용거실로 분리수용이냐,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들과의 통합수용이냐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우의 필요성과 본인의 선호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성

시설물 접근권은 단지 특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수용자의 일상생활과 수용생활에 있어 비장애인수용자와 동등한 완전한 참여에 장벽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용거실과 화장실, 세면장, 샤워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높이 차이가 제거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용생활 중 이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경사로, 손잡이 및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를 위한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바. 건강

1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상주가 필요하며, 외부 의사 초빙 내지 원격 화상진료와 외부 의료기관 이용 보장 등으로 장애인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인과 의료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공의료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수용자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 근로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종류의 작업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 시간 및 근무량에 있어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 작업 활동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반대로 장애를 이유로 작업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경우 대체

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아. 교육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 시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체 형식의 자료(큰 글씨로 된 책, 음성변환 장치, 점자 자료, 자막, 화면해설 등)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및 학습장애가 있는 수용자에게 적합한 난이도와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에서 출소 이후의 자립적 생활을 준비하는데 적당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인 단체와 복지기관 등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자. 문화 향유

도서, TV, 위문공연 등 문화생활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체 형식의 컨텐츠가 제공되어야 하며, 현장 공연에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차. 괴롭힘의 금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수용자나 직원들을 교육해야 하며 정기적인 고충상담과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수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위험을 고려하여 수용거실을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카. 고충처리

고충처리나 민원신청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절차와 방식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완전히 제공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형식의 텍스트,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로 된 텍스트나 구두 설명, 보조인력의 안내와 절차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타. 응급상황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대피공간에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응급상황에서의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직원들이 훈련되어야 한다. 사이렌, 경보 방송을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혼자서 이동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파. 인센티브와 징벌

특히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인센티브 또는 징벌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규칙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대인관계가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징벌을 하는 경우 장애인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와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의사에 의한 진단과 이를 통한 의사의 소견을 징벌시 반영해야 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보조인력 없이 독방에 감금해서는 안 된다. 징계의 사유나 내용에 대해 장애인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징계를 위한 청문절차를 보장하고 청문절차의 이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하. 외부와의 소통

장애인수용자의 수용생활 중에 외부 복지기관,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보장되어 장애인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과 권익옹호, 출소 준비절차와 출소 이후의 자원 연계, 사회복귀 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

면회나 서신, 전화통화에서 수어통역사 또는 화상중계전화, 점역된 서신의 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거. 출소

장애인수용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사전에 출소 이후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장애인수용자가 출소 이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연계하거나 자립지원서비스, 거주시설 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원활히 연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외부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출소 이후 생활에 대한 훈련과 정보제공이 이뤄

져야 한다.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출소 이후 거주하게 될 지역으로의 이동도 고려되어야 한다.

너. 통계와 자료수집, 모니터링

구금시설 내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처우,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실태, 인권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에는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및 전문가와 장애인 수용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구금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현황이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1)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차별행위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4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34], 이는 그 편의제공이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 차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하는 의무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5]. 그리고 정당한 편의는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이므로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제공되는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는 물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해당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적용되는 관행, 정책, 절차의 변경 등 비물질적 조치도 포함될 수 있고,[36][37]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동일한 결과나 성과를 얻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동등하게 같은 기회를 얻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38].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기본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34) 미국장애인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은 합리적 편의(resonable accomod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5) 최승철, p.68
36) 최승철, p.85, 조원희, 박성민, 서동후, 이대아, 박창수, 이강민, p.304
37) 최승철(2010, p.85)은 영국의 장애차별법(1995)의 관련 실무규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은 편의의 종류를 ① 관행, 정책, 절차를 변경하는 것, ②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③ 물리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극복하는 것(제거 및 변경, 회피, 또는 대안적 방법에 의한 극복)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38) 조원희 외, p.305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시기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유형·정도·성별·특성이 고려되어야한다.
◈ 정당한 편의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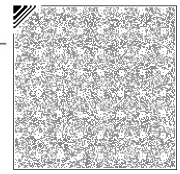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편의제공 거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이에 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예외를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1.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성별·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2. 편의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처하게 되는 경우
3. 대상시설 등의 구조 변경 또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4. 사용주와 시설주가 다를 경우 시설주가 동의하지 않아 사용주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5.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한 경우.
6. 직무수행 상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이 없는 경우

(2)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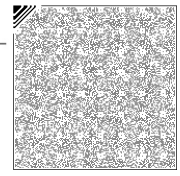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면서 제2장과 제3장에 구체적인 영역별로 각칙 조항을 두어 구체적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장애인 차별금지법령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준용하는 타법령)
고용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교육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시설물 접근·이용	-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준용하는 타법령)
		샤워실 및 탈의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이동 및 교통수단	-	- 교통수단 :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 여객시설 : 보행 접근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 도로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지하도 및 육교,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음향신호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보통신·의사소통	- 공공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정보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 -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 - 방송사업자 :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 :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등 중계서비스 - 출판물 발행 사업자, 영상물 제작업자 등: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이 제공되는 도서자료	- 공공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정보 :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 - 방송사업자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기간통신사업자 :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 실시간 중계 서비스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준용하는 타법령)
문화·예술 활동	-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관광활동	-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체육활동	-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계구(戒具) 사용,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여성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위 각칙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중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구금시설에 적용됨은 명백하다. 즉, 구금시설은 장애인 수용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장애인수용자가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구금시설은 장애인수용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각칙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외에도 그 성질상 구금시설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각칙 조항은 예시적인 규정이므로 일반 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있을 수 있다[39]. 다만, 무엇이 구금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장애인수용자가 구금시설에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구금시설이 장애인수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여야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일반조항과 각칙조항의 관계에 대해 장애인수용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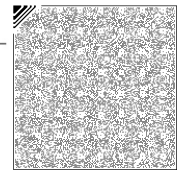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구금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영역을 나누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처우도 그 내용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각 영역의 정당한 편의가 (일부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교육, 교화

「형집행법」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습득을 위한 교육(제63조)과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 실시(제64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교육 영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9) 조원희 외(315쪽)에 의하면, 일반조항과 각칙조항의 관계에 대해 각칙조항이 구체적인 특칙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는 해당 각칙조항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그 외의 다른 편의제공을 거부하여도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구체적인 특칙은 일반조항을 구체화한 예시규정으로서 구체적인 특칙이 일반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구금시설 내에서의 교육, 교화, 상담 및 심리치료 기타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로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구비
2. 장애인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교육, 교화프로그램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음성변환용 코드 등)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나. 작업, 직업훈련

「형집행법」은 작업과 직업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5조, 제66조, 제69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고용 영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치료 등을 위한 작업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6.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7.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8.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다. 종교와 문화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하고 있고(제45조), 도서, 신문·잡지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6조, 제47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하고 있다(제48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 등에서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방송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일부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종교행사**
  1.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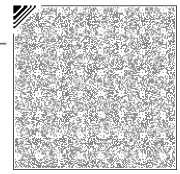
- **라디오 및 텔레비전**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도서 이용**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가 삽입된 자료의 비치
  2.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비치도서목록의 비치
  3. 장애인이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4.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의 이용 허용

라. 운동 및 목욕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3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체육활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운동**
  1. 장애인 수용자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 수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2)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의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가) 'reasonable accommodation'의 의미

'정당한 편의제공'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reasonable accommodation'에 해당하는 말로서, 직역하자면 '합리적 편의제공'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reasonable'을 '정당한'으로 번역하는 자료가 많지만,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편의제공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들이 관철해 낸 번역이다[40]. 'reasonable accommodation'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6호를 보면, "'reasonableness'는 장애인에게 상대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지에 대한 언급이며, 따라서 만약 제공된 편의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편의는 'reasonable'한 것이다." 라고 하여 'reasonable' 이 정당성에 대한 평가 보다는 합리성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편의제공' 보다는 '합리적 편의제공'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권리협약의 취지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의 '합리성'이란 편의를 제공하는 측, 편의제공의 의무자에게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일반논평 6호에서는 "reasonable 은 예외를 가진 단어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즉 reasonable의 개념이 의무에 대한 수식어 또는 한정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편의제공의 비용이나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때 논의된다."라고 논평하고 있다. 그러므로 'reasonable'의 의미는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이라는 의미라고 하겠다.

나)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는 한편,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과 노동 파트에서도 합리적 편의제공을 언급하나,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직접

40) 배융호(2007), '정당한 편의제공, 어떻게 봐야하나.', 에이블뉴스 2007.11.23.

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13조(사법에 대한 접근)에서도 '절차적 편의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을 언급하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이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이유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합리적 편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2조 정의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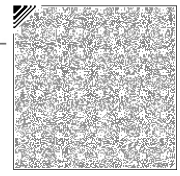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장애인권리협약 2조의 정의 규정에서는 합리적 편의의 의미를 a)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목적), b)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에(조건), c)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한계), d)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내용) 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약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발표하고 있는 일반논평 제6호 제5조(3)항에서 합리적 편의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합리적 편의제공의 의미

합리적 편의제공은 장애의 맥락 속에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 **합리적 편의제공의 예시**

기존의 시설이나 정보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장비의 개조, 활동의 재구성, 작업의 스케줄 변경, 학습 커리큘럼 자료와 교육 전략의 조정, 의료절차 조정,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원인력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 **'접근성 보장의무(accessibility duty)'와의 차이점**

접근성 보장 의무는 사전적인 의무인 반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필요한 때에 즉시 제공되어야 하는 의무이다. 접근성 보장 의무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무인데 반해 합리적 편의제공은 요청한 사람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 개별화된 의무이다.

○ **'합리적 편의제공'의 해석**

'합리적 편의제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용어이지 '편의제공' 의무가 '합리적' 이어야 한다는 수식어나 한정어가 아니다. 이는 편의제공의 비용이나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과 다른 의미이다.

○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의 의미**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은 편의 제공의무에 한도를 두는 하나의 개념이며, '과도한'과 '부당한'은 같은 사실에 적용되는 경우 동의어로 간주해야 한다.

○ **'구체적 조치'와의 차이점**

합리적 편의제공은 '적극적 개선조치'를 포함한 '구체적 조치'와는 다르다. 합리적 편의제공은 비차별 의무인데 반해, 구체적 조치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역사적/제도적/조직적으로 배제 되어온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우대 조치를 말한다.

○ **사법 접근권에서의 '절차적 편의'와의 차이점**

사법 접근권에서의 '절차적 편의제공'은 합리적 편의제공과는 다른 개념이며, 정당한 편의제공은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 이라는 개념에 의해 한도가 주어져 있지만 절차적 편의제공은 그렇지 않다.

○ 합리적 편의제공의 주요 요소

① 관련된 장애인과의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제거 할 것
② 편의제공의 가능여부(법적 또는 실질적인) 평가: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편의제공은 가능하지 않은 것임
③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를 현실화 하는 것과 편의제공의 관련성과 효율성 여부 평가
④ 개조가 의무 이행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지 여부 평가. 수단과 목표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⑤ 합리적 편의제공이 장애인의 평등을 신장하고 차별을 제거한다는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보장
⑥ 장애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
⑦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의무 이행자에게 있음

○ 협의 및 개별화

① 합리적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편의제공을 요청한 사람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
② 어떤 상황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이 집단, 또는 공공의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단지 요청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될 수도 있다.
③ 합리적 편의제공의무는 요청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개별화 요구에 반응하는 의무라 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주체와 편의제공을 요청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기반한 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다.
④ 합리적 편의제공을 위해 의무 이행자는 장애인 당사자 개인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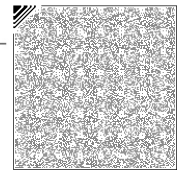
○ 당사자의 신청이나 편의제공 의무자의 인식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이 편의제공을 요청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권리 행사를 위해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미국 장애인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가) 미국 장애인법

미국 장애인법에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고용 분야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합리적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s.12112(5)). 그러나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



을 주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합리적 편의 제공과 동일하다.

구금시설이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의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경우, 금지되는 차별의 영역에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법무부의 시행령(Regulations)에서 금지된 차별행위의 유형을 자세히 규정하면서 여기에 합리적 조정의무(reasonable modification)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문제되는 개선책이 서비스, 프로그램 혹은 활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이나 관행, 혹은 절차에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하며(28 CFR. Part 35, 35.130(b)(7)), 또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필요에 적절하게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28 CFR. Part 35, 35.130(d)). 그러나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과 합리적 조정(reasonable modification)은 다른 개념이며, 합리적 조정의무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나) EEOC의 정당한 편의 이행 지침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고용상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금시설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금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편의제공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1].

○ **편의제공의 3단계**

ADA는 고용의 세 단계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취업지원 과정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것.
- 장애를 가진 유자격 개인이 직무의 필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장애를 가진 피고용인이 고용상의 모든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

① 취업지원 과정상의 적절한 편의제공
② 필수 직무기능의 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③ 고용상의 평등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제공

41)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02, Enforcement Guidance on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Undue Hardship under the ADA

○ **합리적 편의제공의 기본 원칙**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편의는 효율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와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는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혹은 그들과 평등한 고용상의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편의 자체가 똑같은 성과를 보장하거나 정확히 똑같은 혜택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합리적 편의제공의 의무는 장애에 관련된 고용상의 장벽을 줄여주는 편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요구하는 편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제공되는 편의는 "반드시 최상의 것일 필요는 없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취업지원 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받고, 취업 이후에 직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기만 하면 된다.

고용주는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적절한 편의제공이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주는 직장의 안과 밖에서 어떤 사람의 개인적 활동을 돕기 위해 시설이나 장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인적"용도로 쓰이더라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치는 적절한 편의로써 요구될 수 있다.

○ **합리적 편의제공의 예**

- 모든 시설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직무의 주변기능들을 재할당하거나 재분배함으로써 직무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
- 직무의 필수기능이 수행되는 때와 방법을 바꾸는 것
- 시간제 근무 혹은 작업일정 변경
- 장비나 시설을 들여놓거나 고치는 것
- 시험 방법, 교재 혹은 정책을 변경하는 것
- 유자격 낭독자와 수어통역사를 제공하는 것
- 공석중인 직무로 이동시키는 것
- 치료를 위해서 유급 및 무급 휴가를 주는 것
- 손상 때문에 동작이 민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전용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
- 고용주가 제공할 의무가 없는 장비나 도구를 피고용인이 스스로 조달하도록 허락하는 것

○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수많은 편의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은 각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합리적 편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장애를 가진 특정한 지원자 혹은 피고용인의 구체적인 능력과 기능상의 한계
- 특정한 직무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기능들

○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의 명칭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능력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장애를 공통적으로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

각기 그 능력과 한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슷한 기능상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 **합리적 편의제공 방법에 대한 확인절차**

① 관련된 특정한 직무의 내용을 살핀다. 그 직무의 목적과 필수기능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② 장애를 가진 개인과 상의함으로써 직무의 필수기능과 관련해 그 개인이 어떤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이나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장애들을 확인하고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편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낸다.

③ 장애를 가진 개인과 상의할 때에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의들을 확인 하고,그 편의들이 필수 직무기능의 수행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를 평가한다. 상의를 통해서도 가장 적절한 편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수의 유관기관들로부터 무료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중에는 합리적 편의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있다.

④ 평등한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편의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기호를 고려하고, 그 개인과 고용주의 필요에 가장 부합되는 편의를 선택한다.

○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도움이 될 편의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혹은 그 개인이 스스로 편의를 조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선호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가능한 여러 가지 편의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 또는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제공하기 쉬운 편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 **장애를 가진 개인이 스스로 편의를 조달한다고 해서 고용주의 적절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개인이 스스로 편의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거나 조달할 의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과도한 부담**

고용주는 경영에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지 않을 다른 편의제공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과도한 부담이란 조직의 규모와 성격 및 자금력에 비춰볼 때 “상당한 정도의 곤란이나 비용”이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한 편의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지 여부는 반드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어떤 고용주에게는 과도한 곤경을 주는 편의가 다른 고용주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동일한 고용주의 경우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그러한 곤경이 초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규모 고용주가 소규모 고용주보다 노력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과도한 곤경은 다음을 의미한다.

조직의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 광범위하고,
- 본질적이고
- 파멸적인 조치.

○ **합리적 편의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곤경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요소**

① 필요한 편의제공의 성격과 비용

②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자금상태, 그 시설물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의 숫자, 비용과 자금의 측면에서 편의제공이 그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③ (시설물이 대규모 조직의 일부인 경우)ADA의 적용을 받는 조직의 전체적인 자금상태, 규모, 피고용인 숫자, 시설물의 유형과 위치.

④ 조직의 운영형태. 여기에는 노동력의 구조와 기능, 지리적 위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과 조직간의 행정적 혹은 재정적 관계 등이 포함된다.

⑤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운영에 편의제공이 미치는 영향

⑥ 기타 비용 문제

○ **합리적 편의가 될 수 있는 장비와 장치의 예**

- TTY/TDD(농아를 위한 통신장치)는 청각과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전화통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 전화음성 확성기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 표준 컴퓨터와 기타 장비에서 이용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는 시각과 독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쇄물을 확대하거나 인쇄된 글자를 음성 언어로 전환시킨다.
- 장비에 점자표시를 하는 것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 전화 헤드폰과 자동 점등스위치는 뇌성마비나 기타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말하는 계산기는 시각 혹은 독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 스피커폰은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나 기타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3) 영국 평등법의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

영국의 평등법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accommodation)이라는 용어 대신 합리적 조정(adjust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평등법 제20조에서 합리적 조정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며 다시 각 분야에서 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상 합리적 조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무 이행주체의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관련 문제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특성이 관련 문제에서 장애인을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장애인에게 보조적 지원(auxiliary aid)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합리적 조정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 첫 번째나 세 번째 유형의 경우가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경우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0조

제6항).

평등법에서의 '물리적인 특성'이란 ① 건물의 설계나 건축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성, ② 건물에 대한 접근, 건물로부터의 이탈, 건물의 이용에서의 특성, ③ 건물 내 · 외부의 고정물, 부품, 가구, 비품, 재로, 장비 혹은 다른 물품, ④ 기타 물리적 요소나 질을 의미한다(제20조 제10항). 물리적 특성에서 야기된 상당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은 물리적 특성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것을 피하는 합리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제20조 제9항).

구금시설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 조정의 지침은 구금시설 서비스 지침(PSI, Prison Service Instructions, 32/2011))의 부록 G에서 제시하고 있다.

부록 G

합리적인 조정

G.1.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범죄자 관리 서비스)는 합리적인 조정의 책임이 있다. 합리적 조정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기준, 또는 관행을 변경하거나, 물리적 형태를 변경하거나, 보조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정이다. 이 의무는 선행적인 의무이며, 다양한 장애인 수용자와 방문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재의 방식이나 건축 환경이 장애인을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구금시설에서 장애인 수용자가 시설의 정상적인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G.2 법률은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지정하지 않으며, 법적 조치에 있어 합리성은 개별적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G.3 합리성을 고려할 때 다음 요소 중 일부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떠한 단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실행가능한지
-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 예산 및 기타 조정을 위한 비용
- 구금시설의 재정, 기타 자원의 범위
- 조정에 이미 사용된 자원의 양
- 재정적 또는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G.4. 법원은 교도소 서비스를 슈퍼마켓 체인 같은 대형 조직과 유사한 단일 조직으로 간주한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무엇이 합리적인지와 큰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비교해보라. 체인의 일부인 슈퍼마켓은 소규모 독립 소매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는 대규모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정 비용이 과도하거나 개인이 받게 될 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이 아닌 전체 조직에서 가능한 예산을 모색해야 한다.

G.5 승강기의 제공이 그 예시일 수 있다. 전체 비용의 일부로 새 건물에 승강기를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수용자 한 명을 돕기 위해 기존의 오래된 건물에 큰 비용을 들여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체적인 위치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의 요구 사항을 지정할 때 해당 시점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G.6. 합리적인 조정은 승강기와 경사로의 설치와 같은 물리적 변화 이상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정에는 보조 지원(예: 특수 컴퓨터 소프트웨어)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거나 장애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특정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한 변경(예: 지역 인센티브 제도가 다음과 같은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수용자를 어디에 수감해야 할 것인가?

G.7. 그 정도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한 장애가 있는 수용자를 의료 시설에 수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수용자를 의료 시설에 수감하는 것은 그들이 시설의 체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실제로 병이 난 수용자가 필요한 병상을 제한한다. 장애가 있는 수용자들은 보통의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수용자는 다른 적절한 시설로 이송되어야 한다. '적절함'이란 필요한 개입, 업무, 교육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적절한 범주의 장애에 적합한 수용 시설을 의미한다.

모든 수용자의 접근성 보장

G.8. 접근성에 대한 조사는 물리적 접근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접근만이 문제가 아니다. 학습장애 또는 감각장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강좌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식을 작성해 체육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학습장애나 시각장애가 있다면 양식을 작성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재 경보가 모두 소리로만 이루어진다면, 청각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항상 합리적인 조정이다.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문제 제기로 인해 명백해질 수 있지만, 많은 수용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불만을 제기하기 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수용자들이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누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G.9. 합리적 조정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직과 사람들이 있다:
수용자와의 면담 – 각 개인 자신의 장애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어라.

전문 기관 – 특정 수용자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조정의 경우,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은 특정 장애를 다루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합리적인 조정은 최대한 많은 수의 수용자들이 감옥 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전문 기관으로부터 감옥, 시설, 정보 및 활동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자선 단체 – 특정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자선 단체 및 기타 제3 부문 조직이 있으며, 종종 보조 기구와 적응 기술 또는 공급 업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의료진 – 일부 보조 기구의 적합성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보청기, 보행 지지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작업 치료사 – 구속에 들어가는 개인에게 보조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ADL(일상생활활동 평가)을 위해 작업 치료사와 같은 지역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들이 교도소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교도소 내에서 장애를 가지게 된 수용자들 또한 개인적인 도움과 적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의' 보조 도구와 적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지침

G.10.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추가 지침과 예시는 Equalities Group의 인트라넷 사이트 또는 equalities.group@noms.gsi.gov.uk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산하 국가 범죄자 관리 서비스(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가 발간한 자료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에 부합하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s for disabled prisoners: meeting our dutie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구금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구금시설 서비스 지침(PSI)을 기초로 장애 유형별 특성과 장애 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합리적 조정의 예시들, 그리고 유용한 자원들과 전국의 교도소들의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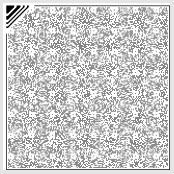
(4) 시사점

이상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미국,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구금시설 내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사법절차상 권리(사법 접근권)를 포함한 접근권은 다른 개념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에서도 합리적 편의제공과 절차적 편의는 다른 개념이며 절차적 편의는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장애인법에서도 합리적 편의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일 뿐 행형절차를 포함한 공적서비스에 있어서는 합리적 편의

제공이 아닌 합리적 조정(reasonable modification)의무가 발생한다. 접근권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별의 실익은, 그것을 사전적으로 갖춰 놓아야 하는가(접근권), 사후적으로 장애인이 요청했을 때 제공해야 하는가(정당한 편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이유로 면제될 수 있는가(정당한 편의), 그리고 반드시 장애인 개인과 협의하거나 토론을 거쳐야 하는가(정당한 편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접근권과 정당한 편의제공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개별화와 절차적인 보장이 중요하다. 영국의 구금시설 서비스 지침(PSI)에서 규정하고 있듯,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법에서 미리 규율할 수 없으며 이는 개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반드시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

셋째,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절대적인 것이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당한 편의의 모든 사항들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구금절차의 단계별, 구금시설에서의 일정과 프로그램 별로, 그리고 장애의 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예시들과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의 판단 기준들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당한 편의와 접근권(건축물이나 물리적 접근권, 절차상 권리 등)이 구분되어야 하며, 접근권은 장애인이 요청하기 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Ⅲ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현장 인터뷰 조사

III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1)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1) 조사대상 및 설문지 개발

가. 장애인수용자 현황(조사대상)

2020년 7월 19일 현재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수는 총 1,529명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771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하여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이어서 지적장애인 12.2%, 시각장애인 9.9%, 정신장애인 8.4%, 청각장애인 7.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는 전체 구금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1,529명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1〉 장애인 수용자 현황

(단위: 명, %)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1,529	771	65	151	120	17	51	6	5	3	2	3	19	187	129	0
100.0	50.4	0.4	9.9	7.8	1.1	3.3	0.3	0.3	0.2	0.1	0.2	1.2	12.2	8.4	0.0

나. 설문지 문항개발 절차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 최저기준(ex. UN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등), 형의집행 및 수용

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참고(법무부 5년 단위 수립)[42],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43],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틀 개발 연구 및 국내에서 진행된 구금시설 실태조사 연구 등을 참조하여 1차적으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전문자문단을 통해 1차례 개발된 문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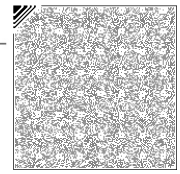
다. 설문지 구성

본 연구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부록 2 참조). 첫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거실형태 등에 대해 구성하였다. 둘째, 일상생활 영역으로 장애인수용자 편의제공 실태, 입소 단계부터 수용생활 전반에 필요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실태, 일상생활 편의 제공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해 구성하였다. 셋째, 의료서비스영역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접근 실태, 중증장애인 의료접근 실태, 외부병원 이용 실태 등에 대해 구성하였다. 넷째, 행정절차 및 인권영역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과 욕구,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괴롭힘, 비하 등에 대해 구성하였다.

---

42) 형집행법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후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 및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시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인권국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방법

전국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해당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의 현황에 맞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어 조사하였다. 다만,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명의 연구보조원이 해당 구금시설 인권과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유선으로 조사의 목적 및 조사절차, 설문지 작성방식, 회수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10월 6일~22일까지 약 15일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2)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결과

가.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연령은 4~50대가 516명(54.5%)로 가장 많았고, 둘째, 성별은 남자가 906명(97.3%)로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셋째, 주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502명(53.9%)로 가장 많았고, 넷째, 중복장애는 227명(30.8%)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복장애 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38명(20.0%)로 가장 많았고, 여섯째, 장애정도는 경증장애가 445명(51.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장애발생은 후천성장애가 632명(84.9%)로 높았고, 여덟째, 거실상태는 혼거가 785명(91.5%)로 높았고, 혼거인원은 본인 포함해서 4~6명이 357명(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15명까지로 나타났다. 아홉째, 거실 만족도는 만족 또는 매우만족이 400명(57.1%)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열번째, 수감기간은 1년 미만이 386명(52.5%)로 가장 높았고, 열한번째, 전과는 재범이 500명(55.7%)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재범횟수는 2~3회가 292명(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연령(n=946) 평균=약51.6세	10대	4(0.4)	2~30대	153(16.2)
	4~50대	516(54.5)	60대 이상	273(28.9)
성별(n=931)	남자	906(97.3)	여자	25(2.7)
주 장애유형 (n=932)	지체	502(53.9)	심장	8(0.9)
	뇌병변	60(6.4)	호흡기	4(0.4)
	시각	79(8.5)	간	3(0.3)
	청각	77(8.3)	장루·요루	3(0.3)
	자폐성	1(0.1)	뇌전증	18(1.9)
	언어	10(1.1)	지적	73(7.8)
	정신	60(6.4)	안면	6(0.6)
	신장	28(3.0)		
중복장애 (n=736)	있음	227(30.8)	없음	509(69.2)
중복 장애유형(n=190)	지체	9(4.7)	심장	15(7.9)
	뇌병변	10(5.3)	호흡기	6(3.2)
	시각	26(13.7)	간	6(3.2)
	청각	27(14.2)	장루·요루	3(1.6)
	자폐성	2(1.1)	뇌전증	6(3.2)
	언어	18(9.5)	지적	8(4.2)
	정신	38(20.0)	안면	2(1.1)
	신장	14(7.4)		
장애정도(n=872)	중증장애	427(49.0)	경증장애	445(51.0)
장애발생(n=744)	선천성장애	112(15.1)	후천성장애	632(84.9)
거실형태(n=858)	혼거	785(91.5)	독거	73(8.5)
혼거인원(n=752) 평균=약5.3명 최대=15명	2-3명	182(24.2)	4-6명	357(47.5)
	7-9명	172(22.9)	10명 이상	41(5.5)
거실만족도 (n=701)	매우 불만족	124(17.7)	만족	321(45.8)
	불만족	177(25.2)	매우 만족	79(11.3)
수감기간(n=735) 평균=약2.3년	1년 미만	386(52.5)	1년 이상 3년 미만	193(26.3)
	3년 이상 5년 미만	55(7.5)	5년 이상 10년 미만	49(6.7)
	10년 이상	52(7.1)		
전과(n=897)	초범	397(44.3)	재범	500(55.7)
재범 횟수(n=428) 평균=약3.4회	2-3회	292(68.2)	4-6회	99(23.1)
	7-9회	35(8.2)	10회 이상	2(0.5)

나. 구금시설 입소 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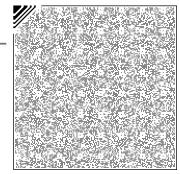
구금시설 입소 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구금시설에 입소할 때 장애가 있음을 구금시설에 전달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853명(89.9%)이 장애가 있음을 구금시설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금시설 입소 후,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나 물품 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557명(59.1%)가 '예'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요구한 적이 있는 대상자만을 상대로 장애와 관련된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분석한 결과, 50%가 145명(2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0%도 126명(23.0%)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금시설 입소 시,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수용생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졌는지를 분석한 결과, 384명(42.5%)가 '아니오'로 대답하였다. 넷째, 구금시설 입소 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를 소유하는 것을 안전상의 이유로 허락을 못 받은 적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102명(11.4%)이 '예'로 대답하였고, 대부분이 목발, 휠체어, 허리보조기, 의족, 보청기, 안경 등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금시설 입소 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구금시설 입소 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입소 시, 장애유무 전달(n=949)	예	853(89.9)	아니오	96(10.1)
입소 시, 필요한 물품요구 여부(n=943)	예	557(59.1)	아니오	386(40.9)
요구 수용정도(n=548)	0%	126(23.0)	25%	127(23.2)
	50%	145(26.5)	75%	74(13.5)
	100%	76(13.9)		
입소 시, 필요한 수용생활 정보 제공여부(n=903)	예	165(18.3)	아니오	384(42.5)
	해당사항 없음	354(39.2)		
입소 시, 필요한 보장구 소유에 대해 불허경험 여부(n=891)	예	102(11.4)	아니오	405(45.5)
	해당사항 없음	384(43.1)		

다.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구금시설 내에서 이동하는 데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281명(30.4%)로 나타났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턱이 있는 데 경사로가 없어서가 34명(13.5%)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하는 건물복도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아니오'가 583명(62.5%)로 나타났고, 셋째, 건물 복도가 이동하기에 편한지를 분석한 결과, '아니오'가 217명(23.5%)로 나타나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복도에 벽면 손잡이가 없어서가 80명(44.0%)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하는 수용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를 분석한 결과, '아니오'가 366명(39.3%)로 나타났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끄럼 방지타일이 없어서'가 113개(2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평일 기준으로 하루 운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30분 미만이 591명(63.2%)로 가장 높았고, 이와 같은 하루 운동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니오'가 624명(67.1%)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상대로 구금시설 측에 운동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198명(32.1%)로 나타났고, 구금시설 측에서 운동시간을 연장해 주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혀 연장해주지 않았음'이 157명(79.3%)로 나타났다. 여섯째, 1주일에 평균적으로 몇 회 목욕을 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1회가 474명(51.6%)로 가장 많았고, 이와 같은 목욕 횟수에 대해 만족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아니오'가 504명(54.5%)로 나타났고, 목욕횟수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대상자를 상대로 구금시설 측에 목욕횟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170명(34.8%)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연장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혀 늘려주지 않았음'이 127명(76.0%)로 나타났다. 일곱째, 평상 시 목욕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289명(31.1%)로 나타났고, 주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지를 분석한 결과, '다른 수용자'가 177명(63.4%0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음'도 65명(23.3%)로 나타났다. 또한, 목욕 시 불편함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367명(40.1%)로 나타났고, 불편함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온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가 91명(26.0%)로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상생활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4〉과 같다.



〈표 3-4〉 일상생활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실태 I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이동 불편 여부(n=924)	불편함	281(30.4)	불편하지 않음	643(69.6)
이동 불편 이유(n=252)	턱이 있는데 경사로가 없어서	34(13.5)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15(6.0)
	경사로는 있는데 난간이 없어서	27(10.7)	이동하는 통로가 좁아서	32(12.7)
	기타[44]	144(57.1)		
엘리베이터 유무(n=933)	있음	259(27.8)	없음	583(62.5)
	잘 모르겠음	91(9.8)		
건물복도 이동편리 여부(n=923)	편리함	706(76.5)	불편함	217(23.5)
건물복도 불편이유(n=182)	복도가 좁아서	47(25.8)	복도에 점자블록이 없어서	15(8.2)
	복도에 벽면 손잡이가 없어서	80(44.0)	기타[45]	40(22.0)
수용거실 화장실 이용 편리여부(n=931)	편리함	565(60.7)	불편함	366(39.3)
화장실 불편 이유(n=445개)	장애인용 대변기가 없어서	49(11.0)	혼자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38(8.5)
	벽면 손잡이가 없어서	88(19.8)	미끄럼방지 타일이 없어서	113(25.4)
	기타[46]	157(35.3)		
평일, 하루 운동시간(n=935)	30분 미만	591(63.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14(33.6)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15(1.6)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	11(1.2)
	2시간 이상	4(0.4)		
운동시간 충분여부(n=930)	충분함	306(32.9)	불충분함	624(67.1)
운동시간 연장요청 여부(n=616)	예	198(32.1)	아니오	418(67.9)
운동시간 연장요청 수용정도(n=198)	전혀 연장해주지 않았음	157(79.3)	조금만 연장해주었음	35(17.7)
	내가 원하는 만큼 연장해 주었음	6(3.0)		
1주일 평균 목욕 횟수(n=919)	1회	474(51.6)	2회	96(10.4)
	3회	56(6.1)	4회	25(2.7)
	5회 이상	268(29.2)		
목욕 횟수 만족여부(n=924)	만족함	420(45.4)	불만족함	504(54.5)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목욕횟수 연장요청 여부(n=488)	예	170(34.8)	아니오	318(65.2)
목욕횟수 연장요청 수용정도(n=167)	전혀 늘려주지 않았음	127(76.0)	조금만 늘려주었음	29(17.4)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려주었음	11(6.6)		
목욕 시 도움 필요여부(n=930)	예	289(31.1)	아니오	641(68.9)
주 도움 제공자(n=279)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음	65(23.3)	교도관	7(2.5)
	자원봉사자	13(4.7)	다른 수용자	177(63.4)
	기타	17(6.1)		
목욕 시 불편 여부(n=915)	예	367(40.1)	아니오	548(59.9)
목욕 시 불편한 점(n=350)	벽면 손잡이가 없어서	69(19.7)	냉온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된 수도꼭지가 없어서	22(6.3)
	이동경로에 점자블록이 없어서	4(1.1)	온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91(26.0)
	욕실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 없어서	39(11.1)	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도꼭지가 없어서	20(5.7)
	기타[47]	105(30.0)		

한편, 현재 생활하고 있는 구금시설 내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또는 편의제공에 대해 요청한 경험 여부, 요청 시 제공받은 여부, 향후 필요정도(4점 척도)[48] 및 주 사용 용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편의제공 요청에 있어서는 보청기기, 휠체어, 목발, 자막방송시설, 수어통역사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청 시 제공받은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응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미 있는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편의제공 요청이 잘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필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자막방송시설, 보청기기, 자막수신기, 통신 중계 서비스 등 청각장애인용 편의제공이 상대적으로 높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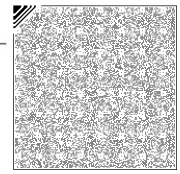
44) 기타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로 계단이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혼자 이동이 어려워서, 장애가 심해서 등으로 제시되었음

45) 기타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로 계단이 많아서, 복도가 미끄러워서, 장애가 심해서 등으로 제시되었음

46) 기타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로 화장실이 좁아서로 제시되었음

47) 기타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로 목욕시간이 짧아서, 도움이 필요해서로 나타났음

48) 1=전혀 필요없음, 4= 매우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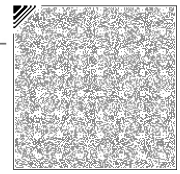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 정도에서 '필요함' 또는 '매우 필요함'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상대로 주로 사용할 용도를 분석한 결과, 주로 교육, 교화프로그램, 접견 및 면회, 종교문화생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5〉, 〈표 3-6〉와 같다.

〈표 3-5〉 일상생활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실태 II

유형	변수	요청 여부		요청 시 제공받은 여부		필요 정도 (평균)
		요청	미요청	제공	미제공	
시각 장애	점자 안내책자(n=64)	3(4.7)	61(95.3)	1(50.0)	1(50.0)	2.17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n=62)	3(4.8)	59(95.2)	2(100.0)	-	2.11
	점자정보 단말기(n=62)	2(3.2)	60(96.8)	-	-	2.17
	화면해설기(n=62)	2(3.2)	60(96.8)	-	-	2.20
	독서확대경(n=66)	4(6.1)	62(93.9)	-	2(100.0)	2.62
	광센서(n=60)	2(3.3)	58(96.7)	-	-	2.20
청각 장애	보청기기(n=66)	22(33.3)	44(66.7)	9(60.0)	6(40.0)	2.86
	자막 방송시설(n=55)	10(18.2)	45(81.8)	4(57.1)	3(42.9)	2.87
	자막수신기(n=47)	5(10.6)	42(89.4)	2(50.0)	2(50.0)	2.80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 중계 서비스(n=50)	7(14.0)	43(86.0)	3(60.0)	2(40.0)	2.80
	수어통역사(n=49)	9(18.4)	40(81.6)	3(60.0)	2(40.0)	2.50
신체 장애	신체 교정용 신발(n=209)	23(11.0)	186(89.0)	4(28.6)	10(71.4)	2.13
	바퀴달린 보행기(n=186)	5(2.7)	181(97.3)	2(100.0)	-	1.86
	휠체어(n=231)	64(27.7)	167(72.3)	38(80.9)	9(19.1)	2.14
	목발(n=226)	56(24.8)	170(75.2)	32(80.0)	8(20.0)	2.14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n=313)		28(8.9)	285(91.1)	5(31.3)	11(68.8)	2.36
일상생활 도우미(n=298)		27(9.1)	271(90.9)	11(68.8)	5(31.3)	2.12
저염 식단(n=296)		24(8.1)	272(91.9)	7(53.8)	6(46.2)	2.21

〈표 3-6〉 일상생활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실태Ⅲ

유형	변수	주로 사용 용도											
		식사	목욕	운동	작업	직업 훈련	교육	교화 프로그램	접견 및 면회	종교 문화 생활	금품 관리	편지 수수	전화 통화
시각 장애	점자 안내책자(n=12)	1(8.3)	1(8.3)	-	1(8.3)	-	1(8.3)	2(16.7)	1(8.3)	4(33.3)	-	1(8.3)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n=8)	1(12.5)	1(12.5)	-	-	-	1(12.5)	2(25.0)	1(12.5)	1(12.5)	-	1(12.5)	-
	점자정보 단말기(n=8)	1(12.5)	-	1(12.5)	-	-	1(12.5)	3(37.5)	1(12.5)	1(12.5)	-	-	-
	화면 해설기(n=8)	1(12.5)	-	-	-	-	2(25.0)	1(12.5)	3(37.5)	1(12.5)	-	-	-
	독서확대경(n=15)	2(13.3)	1(6.7)	-	2(13.3)	-	1(6.7)	3(20.0)	1(6.7)	4(26.7)	-	1(6.7)	-
	광센서(n=7)	1(14.3)	-	1(14.3)	-	-	1(14.3)	2(28.6)	1(14.3)	1(14.3)	-	-	-
청각 장애	보청기기(n=18)	5(27.8)	-	-	2(11.1)	2(11.1)	1(5.6)	4(22.2)	2(11.1)	-	-	-	2(11.1)
	자막 방송시설(n=10)	1(10.0)	-	-	-	1(10.0)	2(20.0)	2(20.0)	2(20.0)	1(10.0)	-	1(10.0)	-
	자막수신기(n=6)	1(16.7)	-	-	-	-	2(33.3)	(33.3)	1(16.7)	-	-	-	-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n=10)	1(10.0)	-	-	-	-	1(10.0)	1(10.0)	4(40.0)	1(10.0)	-	-	2(20.0)
	수어통역사(n=11)	2(18.2)	-	-	-	1(9.1)	4(36.4)	1(9.1)	1(9.1)	2(18.2)	-	-	-
신체 장애	신체 교정용 신발(n=29)	1(3.4)	4(13.8)	11(37.9)	6(20.7)	2(6.9)	-	-	2(6.9)	2(6.9)	-	-	1(3.4)
	바퀴달린 보행기(n=12)	1(8.3)	1(8.3)	4(33.3)	1(8.3)	-	1(8.3)	1(8.3)	-	2(16.7)	-	-	1(8.3)
	휠체어(n=27)	1(3.7)	6(22.2)	8(29.6)	-	1(3.7)	1(3.7)	1(3.7)	5(18.5)	3(11.1)	-	1(3.7)	-
	목발(n=22)	1(4.5)	2(9.1)	9(40.9)	-	1(4.5)	2(9.1)	-	4(18.2)	2(9.1)	1(4.5)	-	-
일상생활 도우미(n=24)		3(12.5)	5(20.8)	8(33.3)	-	2(8.3)	1(4.2)	-	1(4.2)	2(8.3)	-	1(4.2)	1(4.2)



라.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구금시설 입소 후 건강상태 및 구금시설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4점 척도[49]), “입소 후 건강상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가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가 2.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표 3-7〉 건강상태 및 구금시설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문항	평균(표준편차)
입소 전보다 입소 후 건강상태가 나빠졌다(n=909)	2.56(.95)
입소 후 식사를 더욱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n=912)	3.02(.64)
입소 후 건강 상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n=903)	3.08(.69)
결핵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수용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된 적이 있다(n=897)	1.55(.71)
응급상황 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n=874)	2.54(.81)
교도소/구치소 내 의료진은 내 장애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n=885)	2.36(.84)
의료진의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n=876)	2.25(.82)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n=875)	2.18(.83)

둘째, 지난 6개월 동안 몸이 아파서 구금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760명(84.5%)으로 나타났으며, 처방받은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4점 척도)[50], “약을 처방받는 절차가 간편했다”가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2.5점 미만이어서 처방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8〉, 〈표 3-9〉와 같다.

〈표 3-8〉 처방 받은 경험 유무(n=899)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처방 경험 있음	760(84.5)	처방경험 없음	139(15.5)

49) 1=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50) 1=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표 3-9〉 처방받은 경험에 대한 평가

문항	평균(표준편차)
의무관은 내 장애를 고려하여 증상 및 복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n=738)	2.39(.84)
약을 처방 받는 절차가 간편했다(n=744)	2.70(.74)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내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았다(수어통역사, 이동지원 도우미, 이동용 보장구 등)(n=644)	2.26(.83)

셋째, 지난 6개월 구금시설 내에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723명(80.2%)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증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근육통 190개(12.4%), 피부 문제가 183개(11.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금시설 내에서의 진료받은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4점 척도)[51], "진료를 받는 절차가 간편했다"가 2.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2.5점 미만이어서 구금시설 내에서 진료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0〉, 〈표 3-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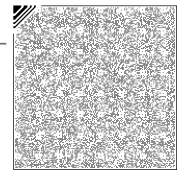
〈표 3-10〉 구금시설 내부 진료 받은 경험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경험 유무(n=902)	진료 경험 있음	723(80.2)	진료 경험 없음	179(19.8)
증상(n=1534개)	청력문제	55(3.6)	신부전증	34(2.2)
	시력문제	95(6.2)	우울불안장애	121(7.9)
	피부문제	183(11.9)	심혈관 질환	92(6.0)
	요통	89(5.8)	불면증	150(9.8)
	근육통	190(12.4)	전신피로	34(2.2)
	두통	133(8.7)	호흡 곤란	44(2.9)
	욕창	15(1.0)	사고	23(1.5)
	복통	52(3.4)	기타	224(14.6)

〈표 3-11〉 구금시설 내부 진료 받은 경험에 대한 평가

문항	평균(표준편차)
의사는 내 장애를 고려하여 내 증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n=685)	2.35(.85)
진료를 받는 절차가 간편했다(n=685)	2.63(.76)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내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았다(수어통역사, 이동지원 도우미, 이동용 보장구 등)(n=592)	2.27(.83)

51) 1=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넷째, 지난 6개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348명(39.4%)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증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울불안장애 58개(10.0%), 시력문제 55개(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희망한 후, 실제 진료를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분석한 결과, '1달 이상'이 112명(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비용부담 방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부 또는 전액 자비부담'이 181명(61.6%)로 나타났고, 자비부담의 경우. 평균값으로는 약 31만원 정도, 중위 값으로는 약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4점 척도)[52], "외부의료시설 의사는 내 장애를 고려하여 내 증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가 2.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2.5점 미만이어서 외부 진료 경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2〉, 〈표 3-13〉과 같다.

〈표 3-12〉 외부의료시설 진료 받은 경험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경험유무(n=883)	진료 경험 있음	348(39.4)	진료 경험 없음	535(60.6)
증상(n=578개)	청력문제	26(4.5)	신부전증	22(3.8)
	시력문제	55(9.5)	우울불안장애	58(10.0)
	피부문제	35(6.1)	심혈관 질환	49(8.5)
	요통	17(2.9)	불면증	36(6.2)
	근육통	32(5.5)	전신피로	14(2.4)
	두통	31(5.4)	호흡 곤란	20(3.5)
	욕창	4(0.7)	사고	16(2.8)
	복통	17(2.9)	기타	146(25.3)
대기시간(n=304)	3일 미만	64(21.1)	3일 이상 1주일 미만	40(13.2)
	1주일 이상 2주일 미만	35(11.5)	2주일 이상 1달 미만	53(17.4)
	1달 이상	112(36.8)		
비용부담(n=294)	전액 관비부담	113(38.4)	일부 또는 전액 자비부담	181(61.6)
본인부담액(n=87)	평균 값	약 31만원	중간 값	약 10만원

52) 1=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표 3-13〉 외부의료시설 진료 받은 경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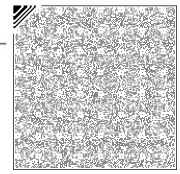
문항	평균(표준편차)
외부의료시설 의사는 내 장애를 고려하여 내 증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n=311)	2.51(.91)
외부 진료를 받는 절차가 간편했다(n=312)	2.40(.85)
외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내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았다(수어통역사, 이동지원 도우미, 이동용 보장구 등)(n=284)	2.34(.93)

다섯째, 지난 6개월 구금시설 내 의료거실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284명(33.7%)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거실에 머무른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증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울불안장애 57개(11.4%), 불면증 42개(8.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료거실 수용을 희망한 후, 실제 이동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분석한 결과, '3일 미만'이 120명(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료거실에 머무른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4점 척도)[53], "의료거실로 이동하는 절차가 간편했다"가 2.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3점 미만이어서 의료거실 경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4〉, 〈표 3-15〉와 같다.

〈표 3-14〉 의료거실 경험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경험 유무(n=843)	경험 있음	284(33.7)	경험 없음	559(66.3)
증상(n=500개)	청력문제	28(5.6)	신부전증	25(5.0)
	시력문제	28(5.6)	우울불안장애	57(11.4)
	피부문제	20(4.0)	심혈관 질환	34(6.8)
	요통	19(3.8)	불면증	42(8.4)
	근육통	35(7.0)	전신피로	10(2.0)
	두통	27(5.4)	호흡 곤란	14(2.8)
	욕창	8(1.6)	사고	22(4.4)
	복통	18(3.6)	기타	113(22.6)
대기시간(n=228)	3일 미만	120(52.6)	3일 이상 1주일 미만	23(10.1)
	1주일 이상 2주일 미만	29(12.7)	2주일 이상 1달 미만	17(7.5)
	1달 이상	39(17.1)		

53) 1=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표 3-15〉 의료거실 경험에 대한 평가

문항	평균(표준편차)
의료거실 의사는 내 장애를 고려하여 내 증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n=261)	2.41(.88)
의료거실로 이동하는 절차가 간편했다(n=263)	2.54(.84)
의료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았다(수어통역사, 이동지원 도우미, 이동용 보장구 등)(n=242)	2.34(.89)

한편, 현재 생활하고 있는 구금시설 내에서 장애유형별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관련 편의제공에 대해 요청한 경험 여부, 요청 시 제공받은 여부, 향후 필요정도 및 주 사용 용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치과상담 및 진료, 정신과 상담 및 진료, 휠체어, 보청기기,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청 시 제공받은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응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미있는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독서확대경, 자막수신기, 물리치료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편의제공 요청이 잘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필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4점 척도)[54], 보청기기, 자막수신기, 수어통역사 등 청각장애인용 편의제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치과상담 및 진료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정도에서 '필요함' 또는 '매우 필요함'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상대로 주로 사용할 용도를 분석한 결과, 시각 및 청각장애는 주로 의료거실 수용 시 편의제공에 대한 사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6〉, 〈표 3-17〉과 같다.

〈표 3-16〉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실태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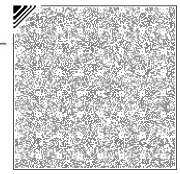
유형	변수	요청 여부		요청 시 제공받은 여부		필요정도 (평균)
		요청	미요청	제공	미제공	
시각장애	점자 안내책자(n=56)	5(8.9)	51(91.1)	2(66.7)	1(33.3)	2.27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n=56)	5(8.9)	51(91.1)	2(100.0)	-	2.23
	점자정보 단말기(n=56)	3(5.4)	53(94.6)	1(100.0)	-	2.20
	화면 해설기(n=56)	3(5.4)	53(94.6)	1(100.0)	-	2.15
	독서확대경(n=61)	6(9.8)	55(90.2)	1(33.3)	2(66.7)	2.48

54) 1=전혀 필요없음, 4= 매우 필요함

유형	변수	요청 여부		요청 시 제공받은 여부		필요 정도 (평균)
		요청	미요청	제공	미제공	
청각 장애	보청기기(n=52)	15(28.8)	37(71.2)	5(45.5)	6(54.5)	3.14
	자막수신기(n=44)	5(11.4)	39(88.6)	2(40.0)	3(60.0)	3.16
	수어통역사(n=43)	5(11.6)	38(88.4)	3(60.0)	2(40.0)	2.70
신체 장애	휠체어(n=219)	64(29.2)	155(70.8)	45(88.2)	6(11.8)	2.36
	목발(n=204)	50(24.5)	154(75.5)	28(87.5)	4(12.5)	2.27
이동, 돌봄 등 돌봄 지원인력(n=269)		27(10.0)	242(90.0)	10(62.5)	6(37.5)	2.08
주기적인 건강검진(n=277)		60(21.7)	217(78.3)	25(69.4)	11(30.6)	2.60
치과상담 및 진료(n=351)		161(45.9)	190(54.1)	73(65.2)	39(34.8)	2.75
정신과 상담 및 진료(n=323)		110(34.1)	213(65.9)	56(74.7)	19(25.3)	2.56
물리치료(n=293)		38(13.0)	255(87.0)	8(34.8)	15(65.2)	2.59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n=283)		30(10.6)	253(89.4)	8(53.3)	7(46.7)	2.33

〈표 3-17〉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실태 II

유형	변수	주로 사용 용도			
		투약 시	내부 진료 시	외부 진료 시	의료거실 수용 시
시각 장애	점자 안내책자(n=9)	2(22.2)	1(11.1)	1(11.1)	5(55.6)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n=10)	1(10.0)	2(20.0)	1(10.0)	6(60.0)
	점자정보 단말기(n=10)	1(10.0)	1(10.0)	2(20.0)	6(60.0)
	화면 해설기(n=10)	1(10.0)	1(10.0)	1(10.0)	7(70.0)
	독서확대경(n=15)	2(20.0)	1(6.7)	1(6.7)	10(66.7)
청각 장애	보청기기(n=10)	1(10.0)	3(30.0)	2(20.0)	4(40.0)
	자막수신기(n=8)	1(12.5)	2(25.0)	1(12.5)	4(50.0)
	수어통역사(n=6)	4(66.7)	1(16.7)	1(16.7)	-
신체 장애	휠체어(n=34)	4(11.8)	12(35.3)	8(23.5)	10(29.4)
	목발(n=22)	3(13.6)	11(50.0)	4(18.2)	4(18.2)
이동, 돌봄 등 돌봄 지원인력(n=28)		4(14.3)	7(25.0)	8(28.6)	9(32.1)
주기적인 건강검진(n=48)		8(16.7)	18(37.5)	13(27.1)	9(18.8)
치과상담 및 진료(n=68)		7(10.3)	24(35.3)	24(35.3)	13(19.1)
정신과 상담 및 진료(n=59)		15(25.4)	17(28.8)	13(22.0)	14(23.7)
물리치료(n=48)		3(6.3)	15(31.3)	11(22.9)	19(39.6)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n=34)		5(14.7)	8(23.5)	8(23.5)	13(38.2)



마.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방법 인식실태

장애인수용자의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인식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지난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욕설, 놀림.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64명(7.2%)로 나타났고, 둘째, 지난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29명(3.3%)로 나타났다. 셋째, 지난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키스나 애무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동료 장애인수용자가 그러한 성적 접촉을 당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16명(1.8%)로 나타났다. 한편, 넷째,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욕설, 놀림.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91명(10.3%)로 나타났고, 다섯째,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49명(5.5%)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키스나 애무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동료 장애인수용자가 그러한 성적 접촉을 당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23명(2.6%)로 나타났다. 일곱째, 지난 6개월 동안 보호 장비(양손수갑,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등)를 착용한 적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일반적으로 이송, 출정, 호송, 외부 진료 시 착용하는 것은 제외), '예'가 201명(23.6%)로 나타났고, 보호 장비를 착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호 장비를 착용하기 전에 교도관에게 착용사유를 들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아니오'가 113명(63.5%)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 장비 착용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27명(13.8%)로 나타났다. 여덟째, 소장면담절차 및 방법을 알고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217명(26.7%)로, 아홉째, 청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238명(29.4%)로, 열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331명(40.6%)로, 마지막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예'가 250명(30.6%)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수용자의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방법 인식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8〉과 같다.

〈표 3-18〉 장애인수용자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방법 인식실태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교도관 부당한 대우 여부(n=895)	예	64(7.2)	아니오	831(92.8)
교도관 신체적 폭행여부(n=891)	예	29(3.3)	아니오	862(96.7)
교도관 성적접촉 여부(n=889)	예	16(1.8)	아니오	873(98.2)
타 수용자 부당한 대우 여부(n=885)	예	91(10.3)	아니오	794(89.7)
타 수용자 신체적 폭행여부(n=890)	예	49(5.5)	아니오	841(94.5)
타 수용자 성적접촉 여부(n=891)	예	23(2.6)	아니오	868(97.4)
보호장비 착용경험유무 (n=853)	예	201(23.6)	아니오	652(76.4)
보호장비 착용사유 사전고지 여부(n=178)	예	65(36.5)	아니오	113(63.5)
보호장비 착용 시 부상여부(n=195)	예	27(13.8)	아니오	168(86.2)
소장면담절차 인지여부(n=813)	예	217(26.7)	아니오	596(73.3)
청원절차 인지여부(n=810)	예	238(29.4)	아니오	572(70.6)
인권위 진정절차 인지여부(n=815)	예	331(40.6)	아니오	484(59.4)
소송절차 인지여부(n=817)	예	250(30.6)	아니오	567(69.4)

(3) 장애인수용자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유형별 실태조사결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5개 장애유형을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그리고 기타장애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서는 교차분석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장애유형별 거실만족도 차이

거실형태가 혼거인 경우에 한해 장애유형별 거실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의 경우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각장애가 5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9〉와 같다.

〈표 3-19〉 장애유형별 거실 만족도 차이(n=683)

유형	거실 만족도(명/%)				합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지체·뇌병변 장애	78(18.8)	110(26.4)	188(45.2)	40(9.6)	416(100.0)
시각장애	12(20.0)	16(26.7)	23(38.3)	9(15.0)	60(100.0)
청각·언어장애	9(14.3)	16(25.4)	33(52.4)	5(7.9)	63(100.0)
발달장애	9(17.3)	8(15.4)	22(42.3)	13(25.0)	52(100.0)
기타장애	13(14.1)	22(23.9)	47(51.1)	10(10.9)	92(100.0)

나. 장애유형별 장애와 관련된 요구수용정도 차이

교도소와 구치소 입소 후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나 물품 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요구수용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의 경우 요구수용정도가 0% 또는 25%에 불과한 경우가 4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반면, 청각·언어장애는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0〉과 같다.

〈표 3-20〉 장애유형별 장애와 관련된 요구수용 정도 차이(n=534)

유형	장애와 관련된 요구수용 정도(명/%)					합계
	0%	25%	50%	75%	100%	
지체·뇌병변 장애	86(26.1)	77(23.4)	81(24.6)	47(14.3)	38(11.6)	329(100.0)
시각장애	9(20.9)	9(20.9)	15(34.9)	4(9.3)	6(14.0)	43(100.0)
청각·언어장애	11(26.2)	13(31.0)	8(19.0)	4(9.5)	6(14.3)	42(100.0)
발달장애	10(28.6)	5(14.3)	12(34.3)	6(17.1)	2(5.7)	35(100.0)
기타장애	10(11.8)	21(24.7)	23(27.1)	11(12.9)	20(23.5)	85(100.0)

다. 장애유형별 이동불편여부 차이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이동하는 데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체·뇌병변 장애의 경우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청각·언어장애는 1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1〉과 같다.

〈표 3-21〉 장애유형별 이동불편여부 차이(n=901)

유형	이동불편 여부(명/%)		합계
	불편함 있음	불편함 없음	
지체·뇌병변 장애	186(34.3)	356(65.7)	542(100.0)
시각장애	25(32.1)	53(67.9)	78(100.0)
청각·언어장애	15(17.6)	70(82.4)	85(100.0)
발달장애	14(19.4)	58(80.6)	72(100.0)
기타장애	37(29.8)	87(70.2)	124(100.0)

라. 장애유형별 건물복도 이동 편리함 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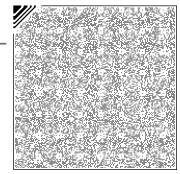
생활하는 건물의 복도가 이동하는 데 편리한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발달장애는 6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2〉과 같다.

〈표 3-22〉 장애유형별 건물복도 이동 편리함 여부 차이(n=898)

유형	건물복도 이동 편리함 여부(명/%)		합계
	편리함	불편함	
지체·뇌병변 장애	405(74.7)	137(25.3)	542(100.0)
시각장애	64(84.2)	12(15.8)	76(100.0)
청각·언어장애	70(86.4)	11(13.6)	81(100.0)
발달장애	47(64.4)	26(35.6)	73(100.0)
기타장애	101(80.2)	25(19.8)	126(100.0)

마. 장애유형별 화장실이용 편리함 여부 차이

생활하는 수용거실의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시각장애는 5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3〉과 같다.

〈표 3-23〉 장애유형별 화장실이용 편리함여부 차이(n=906)

유형	화장실 이용 편리함 여부(명/%)		합계
	편리함	불편함	
지체·뇌병변 장애	321(58.3)	230(41.7)	551(100.0)
시각장애	43(55.8)	34(44.2)	77(100.0)
청각·언어장애	60(76.9)	18(23.1)	78(100.0)
발달장애	48(64.9)	26(35.1)	74(100.0)
기타장애	76(60.3)	50(39.7)	126(100.0)

바. 장애유형별 운동시간 충분 여부 차이

평일 기준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의 경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시각장애는 2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4〉와 같다.

〈표 3-24〉 장애유형별 운동시간 충분여부 차이(n=905)

유형	운동시간 충분 여부(명/%)		합계
	충분함	부족함	
지체·뇌병변 장애	177(32.2)	372(67.8)	549(100.0)
시각장애	19(24.7)	58(75.3)	77(100.0)
청각·언어장애	25(31.3)	55(68.8)	80(100.0)
발달장애	30(41.1)	43(58.9)	73(100.0)
기타장애	50(39.7)	76(60.3)	126(100.0)

사. 장애유형별 목욕 시 도움 필요 여부 차이

평상 시 목욕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체·뇌병변 장애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청각·언어장애는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5〉와 같다.

〈표 3-25〉 장애유형별 목욕시 도움필요 여부 차이(n=905)

유형	목욕 시 도움필요 여부(명/%)		합계
	필요함	필요없음	
지체·뇌병변 장애	178(32.5)	370(67.5)	548(100.0)
시각장애	22(28.9)	54(71.1)	76(100.0)
청각·언어장애	16(20.0)	64(80.0)	80(100.0)
발달장애	22(29.7)	52(70.3)	74(100.0)
기타장애	43(33.9)	84(66.1)	127(100.0)

아. 장애유형별 목욕시 불편함 있는 지 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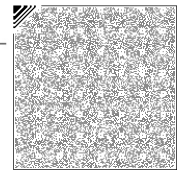
평상 시 목욕할 때 불편함이 있는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체·뇌병변장애의 경우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청각·언어장애는 2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6〉과 같다.

〈표 3-26〉 장애유형별 목욕시 불편함 있는 지 여부 차이(n=890)

유형	목욕 시 불편함 있는 지 여부(명/%)		합계
	불편함 있음	불편함 없음	
지체·뇌병변 장애	242(44.6)	301(55.4)	543(100.0)
시각장애	25(35.6)	47(64.4)	73(100.0)
청각·언어장애	20(25.0)	60(75.0)	80(100.0)
발달장애	25(35.2)	46(64.8)	71(100.0)
기타장애	45(36.6)	78(63.4)	123(100.0)

자. 장애유형별 외부진료 받은 경험 여부 차이

외부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청각·언어장애는 2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7〉과 같다.



〈표 3-27〉 장애유형별 외부진료 받은 경험여부 차이(n=861)

유형	외부진료 받은 경험여부(명/%)		합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지체·뇌병변 장애	200(38.5)	319(61.5)	519(100.0)
시각장애	32(44.4)	40(55.6)	72(100.0)
청각·언어장애	23(28.8)	57(71.3)	80(100.0)
발달장애	24(33.8)	47(66.2)	71(100.0)
기타장애	64(53.8)	55(46.2)	119(100.0)

차. 장애유형별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여부 차이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욕설, 놀림,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시각장애는 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8〉과 같다.

〈표 3-28〉 장애유형별 비장애인수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험여부 차이(n=864)

유형	비장애인수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험여부(명/%)		합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지체·뇌병변 장애	45(8.6)	481(91.4)	526(100.0)
시각장애	3(4.2)	69(95.8)	72(100.0)
청각·언어장애	11(13.6)	70(86.4)	81(100.0)
발달장애	15(21.4)	55(78.6)	70(100.0)
기타장애	15(13.0)	100((87.0)	115(100.0)

카. 장애유형별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 여부 차이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시각장애는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9〉과 같다.

〈표 3-29〉 장애유형별 비장애인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행 경험여부 차이(n=869)

유형	비장애인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행 경험여부(명/%)		합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지체·뇌병변 장애	21(4.0)	507(96.0)	528(100.0)
시각장애	2(2.8)	70(97.2)	72(100.0)
청각·언어장애	6(7.3)	76(92.7)	82(100.0)
발달장애	9(12.7)	62(87.3)	71(100.0)
기타장애	10(8.6)	106(91.4)	116(100.0)

타. 장애유형별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성적접촉을 당한 경험 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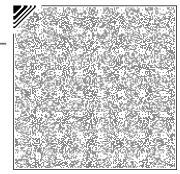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키스나 애무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다른 동료 장애인 수용자가 그러한 성적 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청각·언어장애는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30〉과 같다.

〈표 3-30〉 장애유형별 비장애인수용자로부터 성적접촉 경험여부 차이(n=870)

유형	비장애인수용자로부터 성적접촉 경험여부(명/%)		합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지체·뇌병변 장애	9(1.7)	521(98.3)	530(100.0)
시각장애	2(2.8)	69(97.2)	71(100.0)
청각·언어장애	1(1.2)	81(98.8)	82(100.0)
발달장애	4(5.6)	67(94.4)	71(100.0)
기타장애	7(6.0)	109(94.0)	116(100.0)

파. 장애유형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 및 방법 인지 여부 차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의 경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발달장애는 3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31〉과 같다.



〈표 3-31〉 장애유형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 및 방법 인지여부 차이(n=796)

유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 및 방법 인지여부(명/%)		합계
	알고 있음	모름	
지체·뇌병변 장애	200(41.3)	284(58.7)	484(100.0)
시각장애	27(41.5)	38(58.5)	65(100.0)
청각·언어장애	29(38.2)	47(61.8)	76(100.0)
발달장애	21(32.3)	44(67.7)	65(100.0)
기타장애	45(42.5)	61(57.5)	106(100.0)

하. 장애유형별 권리구제 소송방법 인지 여부 차이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의 경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발달장애는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32〉과 같다.

〈표 3-32〉 장애유형별 권기구제 소송방법 인지여부 차이(n=798)

유형	권리구제 소송방법 인지여부(명/%)		합계
	알고 있음	모름	
지체·뇌병변 장애	160(33.1)	324(66.9)	484(100.0)
시각장애	22(33.3)	44(66.7)	66(100.0)
청각·언어장애	18(23.7)	58(76.3)	76(100.0)
발달장애	13(20.0)	52(80.0)	65(100.0)
기타장애	31(29.0)	76(71.0)	107(100.0)

(4) 주요 분석 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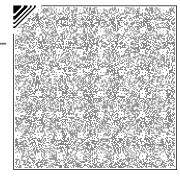
지금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장애인 수용자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실 형태의 경우, 독거는 8.5%에 불과하고 대부분 혼거 거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명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혼거 거실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만족도는 42.9%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수용자의 경우 비장애인수용자에 비해 필요한 보조기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고 또한 의료적 처치와 관련된 장비들도 있기에 비장애인수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 공간이 더 넓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수용자의 독거

거실 또는 최소한 2-3명 거실 확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구금시설 입소 시,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나 물품을 요구한 경우, 그 수용 정도가 25% 이하가 4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입소 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것도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금시설에 장애인이 입소하는 경우,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조치나 물품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입소 시,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또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상생활 이동 및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건물내 이동 또는 복도 이동, 그리고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대략 23~40% 사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손잡이가 없거나, 경사로가 없거나, 점자블록이 없거나, 통로/복도가 좁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이 없거나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이동 및 시설이용에 대한 접근권 강화의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교정시설 내의 장애인편의시설 설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운동시간과 목욕 횟수에 있어서도 장애의 특성상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또는 목욕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연장요청에 대해 전혀 연장해 주지 않은 경우가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간접차별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관련 지침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합리적 배려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실태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은 독서확대경에 대한 욕구가, 청각장애인은 보청기기, 자막방송시설, 자막수신기 등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서비스 영역과 관련하여, 처방, 진료, 외부진료 및 의료거실 입원 등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 4.0점 만점에 평균이 전반적으로 2.5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에 대한 이해 또는 장애를 고려한 편의제공 측면 등에서 상대적으로 2.5 미만의 응답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전반적으로 구금시설 의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의료진의 장애감수성 이해증진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또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진료 및 의료거실 이용과 관련하여 대기시간이 1주일 이상인 경우가, 외부진료는 약 66%, 의료거실은 약37%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월 이상의 경우도 외부진료는 36.8%, 의료거실은 1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수용자의 경우 비



장애인수용자에 비해 건강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진료와 의료거실 이용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실태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은 위와 마찬가지로 독서확대경에 대한 욕구가, 청각장애인은 보청기기 및 자막 수신기에 대한 욕구가, 그리고 모든 장애인은 주기적인 건강검진, 치과상담 및 진료, 물리치료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인수용자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방법 인식실태에 있어서, 교도관 또는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침해의 경우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사후에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들, 즉, 소장면담,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소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3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별 생활실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신체적 폭행, 성적 접촉 등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비율이 발달장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소송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발달장애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구금시설 내에서도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금시설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 및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구금시설 현황 조사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여기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전수조사의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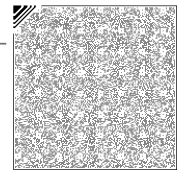
최근의 조사인 2018년 조사 결과 원자료(raw data)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이 법의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서, 조사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개요

○ (조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업기간) 2018. 5. ~ 11. (7개월간)
○ (조사요원) 통계청 조사요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
○ (조사대상)「장애인등편의법」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신·증·개축)·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
○ (조사항목)「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
    ※ 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종류와 기준이 다르며, 개별시설별로 최대 약 90개의 조사항목
○ (조사방법) 대상시설 방문 및 현장조사 실시
  - 개별시설별 건축허가 시 설치기준과 조사시점의 설치기준을 동시*에 조사
    * 화장실(1.0×1.8m→1.4×1.8m, '05.12.31.), 엘리베이터(1.1m×1.35m→1.6m×1.35m, '08.1.1.)등
  - 허가당시 기준에 맞더라도 조사시점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파악 필요(정책수요자 관점)
  - 조사결과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법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축허가시 설치기준 조사 필요(시설주관기관 관점)
○ (설문문항) 전년도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13년도의 조사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조정(연구수행기관)
  - 조사척도는 3단계(적정, 미흡, 미설치)로 13년도와 동일하게 함
    ※ 시설물의 최종 건축허가 일자와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자동으로 적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설문 문항 구성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동 조사에서 교정시설의 장애인 등 편의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 수는 47개소이며, 설치기준항목수는 2,829개로 설치율은 81.3%, 적정설치율은 73.3%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시설 중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과 함께 전체 평균(설치율 80.2%, 적정 설치율 74.8%)에 못 미치는 시설로 구분되었다.

〈표 3-33〉 공공시설 편의시설 실태 조사 결과

세부항목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전체평균 이하
공공시설	A3	2,746	196,354	162,660	82.8%	146,984	74.9%	-
	A4	2,426	134,013	97,186	72.5%	84,938	63.4%	○
	A5	2,077	120,613	90,760	75.2%	79,545	66.0%	○
	A6	2,222	126,698	96,795	76.4%	84,811	66.9%	○
	A7	299	21,475	18,234	84.9%	16,842	78.4%	-
	A8	75	5,271	4,425	83.9%	4,073	77.3%	-
	A9	24	1,875	1,667	88.9%	1,591	84.9%	-
	A10	7	539	441	81.8%	418	77.6%	-
	A11	22	1,604	1,384	86.3%	1,271	79.2%	-
	K1	3,267	292,175	247,552	84.7%	230,182	78.8%	-
	K3	78	6,924	6,136	88.6%	5,806	83.9%	-
	K4	34	3,104	2,747	88.5%	2,603	83.9%	-
	K5	5	442	415	93.9%	397	89.8%	-
	K6	23	2,091	1,921	91.9%	1,838	87.9%	-
	P1	47	2,829	2,299	81.3%	2,074	73.3%	○
	계	13,347	915,565	734,207	80.2%	662,976	72.4%	

주: A3(지역자치센터), A4(파출소, 지구대), A5(우체국), A6(보건소), A7(공공도서관), A8(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A9(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A10(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A11(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K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K3(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K4(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K5(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K6(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P1(교도소, 구치소)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등 구금시설 편의시설 유형별 세부 항목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등 3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매개시설의 경우 높이차이제거 항목이 설치율(72.5%)과 적정설치율(65.3%) 모두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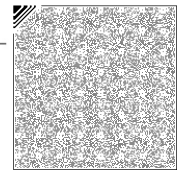
〈표 3-34〉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구금시설 매개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

항목		해당 시설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율-적정 설치율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주출입구 접근로	바닥마감미끄럼정도	46	46	46	100.0	45	97.8	2.2
	바닥틈과평탄한정도	46	46	46	100.0	45	97.8	2.2
	덮개틈새2cm이하	46	46	45	97.8	44	95.7	2.1
	유효폭120cm	46	46	46	100.0	45	97.8	2.2
	기울기1/18이하	46	46	44	95.7	38	82.6	13.1
	보차분리	46	46	38	82.6	35	76.1	6.5
	보행장애물	46	46	40	87.0	36	78.3	8.7
	소계	46	322	305	94.7	288	89.4	5.3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면수확보	42	42	40	95.2	37	88.1	7.1
	승강설비와 가까운장소	42	42	39	92.9	36	85.7	7.2
	주차면 크기	42	42	38	90.5	33	78.6	11.9
	바닥마감미끄럼정도	42	42	40	95.2	37	88.1	7.1
	안내표시	42	42	40	95.2	28	66.7	28.5
	안전통행로	42	42	29	69.0	27	64.3	4.7
	소계	42	252	226	89.7	198	78.6	11.1
높이차이 제거	높이차이제거	46	46	40	87.0	30	65.2	21.8
	출입구와 연결접근로폭	46	46	41	89.1	36	78.3	10.8
	휴식참	45	45	35	77.8	33	73.3	4.5
	바닥재질	46	46	40	87.0	39	84.8	2.2
	휴식참 활동공간 확보	46	46	39	84.8	35	76.1	8.7
	손잡이 연속설치	45	45	34	75.6	32	71.1	4.5
	손잡이 높이	45	45	34	75.6	30	66.7	8.9
	손잡이 굵기	45	45	33	73.3	28	62.2	11.1
	점자블록 형태	46	46	24	52.2	22	47.8	4.4
	점자블록 설치위치	46	46	22	47.8	21	45.7	2.1
	점자블록 시공방법	46	46	22	47.8	22	47.8	0.0
	소계	46	502	364	72.5	328	65.3	7.2
계		46	1,076	895	83.2	814	75.7	7.5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주출입문,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내부시설의 경우, 설치율에서는 계단이 68.2%로 가장 낮았으나, 적정설치율에서는 경사로가 43.8%로서 가장 낮았다.



〈표 3-35〉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내부시설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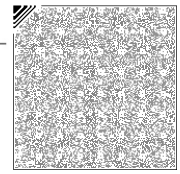
(단위: 개소, %)

항목		해당 시설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율-적정 설치율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주출입문	문턱 2cm이하	46	46	46	100.0	45	97.8	2.2
	통과유효폭	46	46	46	100.0	45	97.8	2.2
	전·후면 유효거리	46	46	45	100.0	45	97.8	2.1
	손잡이 위치	46	46	46	97.8	40	87.0	10.8
	손잡이 형태	46	46	44	95.7	40	87.0	8.7
	점자블록 형태	46	46	18	39.1	17	37.0	2.1
	점자블록 설치위치	46	46	18	39.1	16	34.8	4.3
	소계	46	322	263	81.7	248	77.0	4.7
일반출입문	문턱 2cm이하	43	43	43	100.0	41	95.3	4.7
	통과유효폭	43	43	43	100.0	41	95.3	4.7
	전·후면 유효거리	43	43	43	100.0	41	95.3	4.7
	손잡이 위치	41	41	38	92.7	31	75.6	17.1
	점자블록 설치위치	41	41	12	29.3	10	24.4	4.9
	소계	43	211	179	84.8	164	77.7	7.1
복도	복도유효폭	42	42	41	97.6	39	92.9	4.7
	복도단차	42	42	41	97.6	39	92.9	4.7
	복도유효높이	42	42	39	92.9	38	90.5	2.4
	손잡이 연속설치	5	5	4	80.0	4	80.0	0.0
	손잡이 굵기	5	5	4	80.0	4	80.0	0.0
	손잡이 설치높이	5	5	4	80.0	4	80.0	0.0
	소계	42	141	133	94.3	128	90.8	3.5
계단	계단창 유효폭	22	22	22	100.0	22	100.0	0.0
	챌면	22	22	22	100.0	22	100.0	0.0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22	22	22	100.0	20	90.9	9.1
	손잡이 굵기	22	22	14	63.6	8	36.4	27.2
	손잡이 연속설치	22	22	15	68.2	12	54.5	13.7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22	22	10	45.5	8	36.4	9.1
	점형블록 설치	22	22	9	40.9	7	31.8	9.1
	손잡이 점자표기	22	22	6	27.3	6	27.3	0.0
	소계	22	176	120	68.2	105	59.7	8.5

항목		해당 시설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율-적정 설치율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경사로	유효폭	2	2	2	100.0	1	50.0	50.0
	휴식참	2	2	2	100.0	0	0.0	100.0
	기울기 1/2	2	2	2	100.0	1	50.0	50.0
	바닥면 재질	2	2	2	100.0	1	50.0	50.0
	휴식참 활동공간	2	2	2	100.0	1	50.0	50.0
	손잡이 연속설치	2	2	2	100.0	1	50.0	50.0
	손잡이 높이	2	2	2	100.0	1	50.0	50.0
	손잡이 굵기	2	2	2	100.0	1	50.0	50.0
	소계	2	16	16	100.0	7	43.8	56.2
승강기	전면활동공간	3	3	3	100.0	3	100.0	0.0
	유효바닥면적('08이전)	2	2	2	100.0	2	100.0	0.0
	유효바닥면적('08이후)	1	1	1	100.0	1	100.0	0.0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3	3	3	100.0	3	100.0	0.0
	가로조작반 높이	3	3	3	100.0	3	100.0	0.0
	일반조작반 조작설비	3	3	3	100.0	3	100.0	0.0
	조작반 점자표지	3	3	3	100.0	3	100.0	0.0
	점자블록 형태	3	3	3	100.0	3	100.0	0.0
	점자블록 설치위치	3	3	3	100.0	3	100.0	0.0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3	3	3	100.0	3	100.0	0.0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3	3	3	100.0	3	100.0	0.0
	소계	3	30	30	100.0	30	100.0	0.0
계		46	896	741	82.7	682	76.1	6.6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마지막으로 일반사항, 대변기, 세면대 등 3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위생시설의 경우 일반사항 설치율(60.3%)과 적정설치율(52.7%) 모두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36〉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위생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

항목		해당 시설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율-적정 설치율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일반사항	장애인화장실 남여구분	45	45	40	88.9	29	64.4	24.5
	출입문 시각적 설비	44	44	31	70.5	26	59.1	11.4
	통로 연결	45	45	42	93.3	38	84.4	8.9
	바닥 단차	45	45	42	93.3	41	91.1	2.2
	바닥마감미끄럼정도	45	45	43	95.6	42	93.3	2.3
	영유아용거치대	45	45	10	22.2	8	17.8	4.4
	남여구별점자표시	45	45	13	28.9	9	20.0	8.9
	점자블록 형태	46	46	12	26.1	11	23.9	2.2
	점자블록 설치위치	46	46	12	26.1	10	21.7	4.4
	소계	46	406	245	60.3	214	52.7	7.6
대변기	출입문형태	40	40	35	87.5	35	87.5	0.0
	통과유효폭	40	40	39	97.5	39	97.5	0.0
	바닥면크기('05이전)	26	26	26	100.0	22	84.6	15.4
	바닥면크기('05이후)	14	14	13	92.9	13	92.9	0.0
	좌대 높이	40	40	40	100.0	39	97.5	2.5
	수평손잡이 높이	40	40	40	100.0	38	95.0	5.0
	수직손잡이	40	40	36	90.0	26	65.0	25.0
	회전식손잡이	40	40	36	90.0	20	50.0	40.0
	세정장치형태	40	40	28	70.0	16	40.0	30.0
	소계	40	320	293	91.6	248	77.5	14.1
세면대	상하단높이	43	43	41	95.3	37	86.0	9.3
	휠체어 발판, 깊이, 공간	44	44	42	95.5	38	86.4	9.1
	수도꼭지형태	44	44	42	95.5	41	93.2	2.3
	소계	44	131	125	95.4	116	88.5	6.9
계		46	857	663	77.4	578	67.4	9.9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이상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구금시설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체 공공시설의 적정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구금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이 제한적이어서 장애인 수용자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장애인 수용자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거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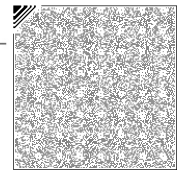
(2)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조사

본 연구에서는 구금시설이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자 대상의 실태조사와 함께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금시설 현황 조사는 의료 인력·편의시설 및 장비 현황,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인력 현황,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상담, 재활치료 및 교화프로그램 현황 등 세 영역에서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물적, 인적 자원 확보 및 구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체 50개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표 회수 결과 모든 구금시설에서 적정하게 조사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조사표 〈부록 1〉참조).

가. 의료인력·편의시설 및 장비 현황

조사에 응답한 구금시설의 평균 의료인력 수는 17.04명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직군별로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49개소 시설에 평균 2.8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약사의 경우에는 38개소 시설에 평균 0.34명, 간호사는 50개 모든 시설에 평균 5,96명, 간호조무사는 46개소 시설에 평균 4명, 방사선기사는 43개소 시설에 0.81명, 임상병리사는 31개소 시설에 0.13명, 영양사는 41개소 시설에 0.8명, 재활치료사는 31개소 시설에 0.03명, 응급구조사는 33개소 시설에 2.9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가 1개소당 평균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는 반면, 다른 직종은 1개소당 평균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재활치료사와 임상병리사, 약사 등은 상대적으로 더욱 적게 인원만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3-37〉구금시설 의료인력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응급구조사	계
평균	2.82	.34	5.96	4.00	.81	.13	.80	.03	2.91	17.04
N	49	38	50	46	43	31	41	31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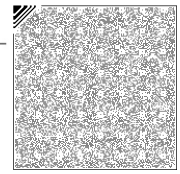
구금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의 유형별 배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사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49개 시설 중 3~4명이 배치된 곳이 2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2명이 배치된 곳이 19개소, 5~9명이 배치된 곳이 4개소, 한 명의 의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1개소로 파악되었다. 약사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다른 주요 의료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조사 결과 13개소의 구금시설에서만 1명의 약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사의 주 업무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사는 모든 구금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유일한 인력으로서 4~6명이 배치된 곳이 전체의 32.0%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3명이 배치된 곳이 15개소, 7~9명이 배치된 곳이 13개소, 10명 이상 배치된 곳이 6개소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역시 다른 의료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3명이 배치된 곳이 2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4~6명이 9개소, 7~9명이 5개소, 10명 이상인 곳이 6개소로 나타났다.

방사선 기사의 경우 1명이 배치된 곳이 33개소로 전체의 76.7%를 차지하였으며, 2명이 배치된 곳은 1개소가 있었다. 임상병리사가 배치된 곳은 4개소로서 모두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영양사의 경우 1명이 배치된 곳이 17개소, 2명이 배치된 곳이 8개소로 확인되었다. 재활치료사는 모든 의료인력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직종으로서 1개 시설에서 1명의 재활치료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지 않은 의료인력 중 구금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기타 의료인력은 모두 응급구조사로 확인되었으며, 6명 이상 배치된 곳이 1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1~2명이 9개소, 3~4명이 4개소로 나타났다.

〈표 3-38〉의료인력별 구금시설 배치 현황

의료인력별 인력 수		빈도(개소)	백분율(%)
의사(n=49)	없음	1	2.0
	1~2명	19	38.7
	3~4명	25	51.0
	5~9명	4	8.1
약사(n=38)	없음	25	65.8
	1명	13	34.2
간호사(n=50)	1~3명	15	30.0
	4~6명	16	32.0
	7~9명	13	26.0
	10명 이상	6	12.0
간호조무사(n=46)	없음	4	8.7
	1~3명	24	52.2
	4~6명	9	19.5
	7~9명	5	10.8
	10명 이상	4	8.7
방사선기사(n=43)	없음	9	20.9
	1명	33	76.7
	2명	1	2.3
임상병리사(n=31)	없음	27	87.1
	1명	4	12.9
영양사(n=41)	없음	16	39.0
	1명	17	41.5
	2명	8	19.5
재활치료사(n=31)	없음	30	60.0
	1명	1	2.0
응급구조사(n=33)	없음	9	27.3
	1~2명	9	27.3
	3~4명	5	15.2
	6명 이상	10	30.3

이어서 진료실(의무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진료실이 있는 건물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17개소로 전체의 34.7%로 파악되었으며, 높이차이제거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38개소로 전체의 77.6%가 해당되었다. 또한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21개소로 전체의 42.0%로 나타났다. 진료실이 위치한 층수는 1층이 42개소로 전체의



84.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진료실이 1층에 위치해 있었으며, 1층이 아닌 2층 이상에 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8개 구금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는 4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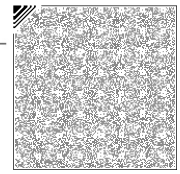
장애인용 화장실의 주요 편의시설인 대변기와 소변기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대변기의 경우 대변기가 설치된 곳은 17개소로 전체의 35.4%였으며, 대변기 개수는 1개를 설치한 곳이 10개소로서 가장 많았으며, 2개 이상을 설치한 곳은 많지 않았다. 이어서 소변기를 설치한 곳은 11개소로 대변기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소변기의 개수는 1개를 설치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2개 이상을 설치한 곳은 4개소였다. 마지막으로 세면대의 경우 세면대를 설치한 구금시설은 13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세면대 개수는 1개인 곳이 11개소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였으며, 2개를 설치한 곳은 2개소에 불과하였다.

〈표 3-39〉 진료실(의무실) 장애인수용자 편의시설 설치 현황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진료실 주출입구	자동문설치 여부(n=49)	미설치	32	65.3
		설치	17	34.7
	높이차이제거 여부(n=49)	미설치	11	22.4
		설치	38	77.6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설치 여부(n=50)	미설치	29	58.0
		설치	21	42.0
진료실이 위치한 층수(n=50)		1층	42	84.0
		2층	3	6.0
		3층	3	6.0
		4층	2	4.0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여부(n=8)		미설치	4	50.0
		설치	4	50.0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설치 여부(n=48)	미설치	31	64.6
		설치	17	35.4
	대변기의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한 층수 여부(n=14)	다른 층	1	7.1
		동일 층	13	92.9
	대변기설치 개수(n=16)	1개	10	62.5
		2개	3	18.8
		3개	1	6.3
		5개	1	6.3
		7개	1	6.3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장애인용 화장실	소변기 설치 여부(n=44)	미설치	33	75.0
		설치	11	25.0
	소변기의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한 층수 여부(n=11)	다른 층	1	9.1
		동일 층	10	90.9
	소변기설치 개수(n=11)	1개	7	63.6
		2개	2	18.2
		3개	2	18.2
	세면대 설치 여부(n=45)	미설치	32	71.1
		설치	13	28.9
	세면대주치의 진료실과 동일한 층수 여부(n=13)	다른 층	1	7.7
		동일 층	12	92.3
	세면대설치 개수(n=13)	1개	11	84.6
		2개	2	15.4

장애인수용자를 대상으로 질환의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각종의 진료장비의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각 구금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주요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우선 휠체어체중계의 경우 1개를 보유한 시설이 3개소로 전체 구금시설의 6.0%에 불과하였으며, 장애인 촬영용 X-ray의 경우 역시 1개를 보유한 곳이 2개로서 전체의 4.0%에 그쳤다. 유방 촬영기와 청력검사기는 모든 구금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력측정기는 1개를 보유한 곳이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자의 경우 다른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구금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1개를 보유한 곳이 12개소, 2개를 보유한 곳이 6개소로 파악되었다. 기타 장비에는 휠체어, 목발 등이 많았으며, 이동형 치과 X-ray 등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1개소가 있었다.



〈표 3-40〉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의료장비 보유 현황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휠체어체중계 수량(n=50)	없음	47	94.0
	1개 보유	3	6.0
장애인 촬영용 X-ray 수량(n=50)	없음	48	96.0
	1개 보유	2	4.0
유방 촬영기 수량(n=50)	없음	50	100.0
시력측정기 수량(n=50)	없음	49	98.0
	1개 보유	1	2.0
청력검사기 수량(n=50)	없음	50	100.0
치과의자 수량(n=50)	없음	32	64.0
	1개 보유	12	24.0
	2개 보유	6	12.0
기타1 수량(n=50)	없음	37	74.0
	1개 보유	5	10.0
	2개 보유	2	4.0
	3개 보유	2	4.0
	4개 보유	1	2.0
	5개 보유	1	2.0
	6개 보유	2	4.0
기타2 수량(n=50)	없음	42	84.0
	1개	3	6.0
	6개	2	4.0
	10개	2	4.0
	11개	1	2.0

나. 장애인수용자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조치로서 관련 보조기기 및 인적 지원서비스를 각 구금시설이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유형별로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 실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시각장애인 수용자 대상의 정당한 편의로서 요구되는 점자 안내책자,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점자정보 단말기, 화면해설기, 독서확대경, 광센서 등 다양한 비치용품 중 구금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점자안내책자(1개소), 독서확대경(3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해당 비치용품을 요청시 제공하고 있는 구금시설은 점자 안내책자 3개소, 독서확대경 3개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나머지 비치용품에 대해서는 각각 1개소의 시설만이 제공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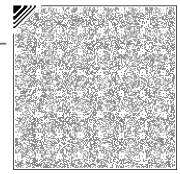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각장애인 수용자 대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보청기기, 자막 방송시설, 자막수신기,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계서비스, 수어통역사 등의 보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막방송시설을 갖춘 곳이 10개소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보청기기 2개소, 자막수신기 1개소,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계서비스 1개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어통역사는 한 곳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해당 비치용품 및 인적서비스 요청시 구금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보청기기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자막 방송시설,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계서비스, 수어통역사 각 2개소, 자막수신기 1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체장애인 수용자 대상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보조기기에는 신체 교정용 신발, 바퀴달린 보행기, 휠체어, 목발 등이 있는데, 휠체어와 목발은 모든 구금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면 바퀴달린 보행기는 14개소, 신체교정용 신발은 1개소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체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요청시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휠체어와 목발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 각 32개소, 바퀴달린 보행기는 9개소, 신체 교정용 신발은 2개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적장애인 수용자에게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로서 읽기 쉬운 안내책자와 의사소통 조력인의 보유 여부 및 요청시 제공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읽기 쉬운 안내책자는 모든 교정시설에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의사소통 조력인은 3개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수용자가 요청시 읽기 쉬운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1개소,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3개소로 파악되었다.

모든 장애인수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라고 할 수 있는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 일상생활 도우미, 장애인수용자 별도 거실의 제공 여부를 파악한 결과, 장애인수용자 별도 거실을 운영하고 있는 구금시설이 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일상생활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30개소,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7개소로 파악되었다. 이어서 이들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5개소, 일상생활 도우미와 장애인수용자 별도 거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각 2개소로 나타났다.



〈표 3-41〉 장애인수용자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정당한 편의 내용	보유 여부		요청 시 제공 여부	
		보유	미보유	제공	미제공
시각장애	점자 안내책자(n=47)	1(2.1)	46(97.9)	3(33.3)	6(66.7)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n=47)	0(0.0)	47(100.0)	1(12.5)	7(87.5)
	점자정보 단말기(n=46)	0(0.0)	46(100.0)	1(12.5)	7(87.5)
	화면해설기(n=47)	0(0.0)	47(100.0)	1(12.5)	7(87.5)
	독서확대경(n=47)	3(6.4)	44(93.6)	3(37.5)	5(62.5)
	광센서(n=47)	0(0.0)	47(100.0)	1(12.5)	7(87.5)
청각장애	보청기기(n=47)	2(4.3)	45(95.7)	4(40.0)	6(60.0)
	자막 방송시설(n=46)	10(21.7)	36(78.3)	2(25.0)	6(75.0)
	자막수신기(n=46)	1(2.2)	45(97.8)	1(12.5)	7(87.5)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 중계 서비스(n=46)	1(2.2)	45(97.8)	2(28.6)	5(71.4)
	수어통역사(n=47)	0(0.0)	47(100.0)	2(25.0)	6(75.0)
신체장애	신체 교정용 신발(n=46)	1(2.2)	45(97.8)	2(25.0)	6(75.0)
	바퀴달린 보행기(n=46)	14(30.4)	32(69.6)	9(60.0)	6(40.0)
	휠체어(n=50)	50(100.0)	0(0.0)	32(97.0)	1(3.0)
	목발(n=50)	50(100.0)	0(0.0)	32(97.0)	1(3.0)
지적장애	읽기쉬운 안내 책자(n=47)	0(0.0)	47(100.0)	1(14.3)	6(85.7)
	의사소통 조력인(n=47)	3(6.4)	44(93.6)	3(30.0)	7(70.0)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n=46)		7(15.2)	39(84.8)	6(54.5)	5(45.5)
일상생활 도우미(n=47)		30(63.8)	17(36.2)	19(90.5)	2(9.5)
장애인수용자 별도 거실(n=49)		38(77.6)	11(22.4)	19(90.5)	2(9.5)

이상의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편의시설, 진단장비, 보조기기, 비치용품 등 물적 지원과 의료인력, 수어통역사, 의사소통 조력인 등 인적 지원 모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장애인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동등하게 교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유형별 보조기기와 인적 서비스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구금시설이 해당 보조기기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장애인수용자 대상 상담, 재활치료 및 교화 프로그램 현황

현재 구금시설에서는 형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수용자, 고령수용자,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수용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수용자의 신체·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켜 출소 후 사회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돕는 등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담, 재활치료 및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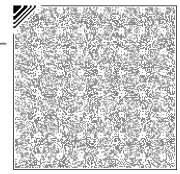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장애인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2년간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수를 살펴본 결과, 1개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은 구금시설이 26개소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이어서 1개 프로그램을 실시한 곳이 14개소, 2개 프로그램을 실시한 곳이 5개소,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곳이 5개소로 파악되었다.

〈표 3-42〉 최근 2년간(2018~2019)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수	빈도(개소)	백분율(%)
없음	26	52.0
1개	14	28.0
2개	5	10.0
3개	3	6.0
4개	1	2.0
5개	1	2.0
전체	50	100.0

주: 중복 응답임.

지난 2년간 구금시설에서 운영했던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면, 교화 프로그램이 17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심리상담 7개, 능력개발 6개, 문화예술 5개, 격려 4개, 교도작업 3개, 재활치료 2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43〉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유형

구분	빈도(개)	백분율(%)
격려	4	9.1
교도작업	3	6.8
교화	17	38.6
능력개발	6	13.6
문화예술	5	11.4
심리상담	7	15.9
재활치료	2	4.5
계	44	100.0

주: 중복 응답임.

이들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족접견, 간담회, 격려, 위로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등 단순 일회성 프로그램에서부터 미술치료, 심리상담, 원예치료 등 재활치료 목적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많은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날 행사(5개), 심리상담(4개), 위로행사(3개), 간담회(2개) 등이었으며,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1번만 진행되었다.

〈표 3-44〉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내용

구분	빈도(개)	백분율(%)
가족접견	1	4.3
간담회	2	8.7
격려	1	4.3
교화행사	1	4.3
기능대회	1	4.3
기도찬송	1	4.3
미술치료	1	4.3
심리상담	4	17.4
원예치료	1	4.3
위로행사	3	13.0
장애인의 날 행사	5	21.7
종이접기	1	4.3
한식조리	1	4.3
계	23	100.0

주: 중복 응답임.

장애인수용자는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 및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난 2년간 구금시설에서 진행했던 특화 프로그램의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38개 프로그램 중 27개 프로그램이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체장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5개, 지체 및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3개, 지체 및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2개,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1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45〉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장애유형별 분포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시각장애	1	2.6
지체장애	5	13.2
지체·시각	3	7.9
지체·청각	2	5.3
전체	27	71.1
계	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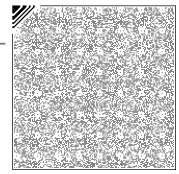
주: 중복 응답임.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이 연중 몇 주에 걸쳐 시행되는 지를 알아본 결과, 1주 프로그램이 전체 33개 중 21개로서 단연 많았으며, 이어서 연중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48주 프로그램이 5개, 12주 또는 8주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각 3개, 3주에 걸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개로 나타났다.

〈표 3-46〉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기간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1주	21	63.6
3주	1	3.0
8주	3	9.1
12주	3	9.1
48주	5	15.2
계	33	100.0

주: 중복 응답임.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 등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년간 구금시설에서 진행되었던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살펴본 결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 운영한 프로그램이 27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 구금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12개로 나타났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구금시설 밖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장애인 수용자가 통원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1개로 파악되었다.

〈표 3-47〉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외부위탁 여부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비위탁(자체 운영)	27	67.5
외부 위탁(내원)	12	30.0
외부 위탁(통원)	1	2.5
전체	40	100.0

주: 중복 응답임.

이상의 지난 2년간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프로그램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알 수 있다. 50개 구금시설 중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1개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26개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1~2개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수용자의 규모와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할 때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의 경우 단순 일회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장애인수용자의 안전한 수형 생활 및 장애의 지속적 관리, 성공적 사회복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장애인수용자가 구금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시점부터 출소하는 시점까지 장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애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구금시설이 자체 인력을 통해 전문적인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매우 어려운 바,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선제적 이해가 높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현장 인터뷰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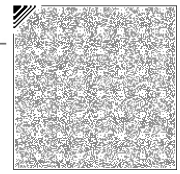
1) 인터뷰 참여자 일반적 특성 및 주요 질문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와 함께 실제 생활하는 장애인수용자, 그리고 담당 교도관, 의료진 등 의료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총 2개의 구금시설에서 1명 혹은 2명씩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3-48〉과 같다[55].

〈표 3-48〉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집단구분	구분	대상자
교도관 (장애인 수용동 근무자 등)	A-1	00교도소 직원(장애인 수용동 근무자)
	A-2	00교도소 직원(장애인 수용동 근무자)
	A-3	00교도소 직원(인권담당자)
	A-4	XX교도소 교도관(신장장애인 수용동 근무자)
	A-5	xx교도소 직원(의료동 근무자)
	A-6	xx교도소 직원(인권담당자)
의료직원	B-1	00교도소 진료실장/병동관리
	B-2	00교도소 의료과 직원
	B-3	xx교도소 의료과 직원(응급구조사)
	B-4	xx교도소 의료과직원(간호사)
	B-5	xx교도소 의무관(의사)
	B-6	xx 교도소 의료과직원(응급구조사)
장애인수용자	C-1	00교도소 장애인수용자 (지체장애 1급 : 하반신 마비)
	C-2	00교도소 장애인수용자 (지체장애 2급 : 우측 상완절단)
	C-3	00 교도소 장애인수용자 (청각장애 2급 : 수어 및 구화가능)
	C-4	xx교도소 장애인수용자 (시각장애 2급 : 전맹)

55)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전에 계획을 잡았던 구금시설에서의 현장방문 및 인터뷰가 상당수 진행되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이에 2곳의 구금시설만을 방문하고, 그 시설의 장애인수용자와 의료진, 교도관과의 인터뷰만이 진행되었다.



집단구분	구분	대상자
	C-5	xx교도소 장애인수용자 (시각장애 6급 : 한쪽눈 실명)
	C-6	xx 교도소 장애인수용자 (신장장애 2급)
	C-7	xx 교도소 장애인수용자 (신장장애 2급)

대상자 별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 〈3-49〉와 같다.

〈표 3-49〉 인터뷰 주요 질문

초점집단	주요 질문 내용
교도관	1. 입소단계이후 일상생활영역에서의 활동 관련하여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2. 수용생활 전반에 걸쳐서 편의제공 관련 어려운 점, 지원·개선 요구사항 3. 수용생활 전반 관련 추가 제안사항 4. 교도관으로서의 정책 제안사항
의료직원	1.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어려운 점과 지원·개선 요구사항 2. 비장애인과 차별되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용과 제공시 어려운 점, 지원·개선요구사항 3. 장애인수용자 외부병원 이용절차와 외부병원 이용시 지원·개선 요구사항 4. 장애인 의료지원 관련 정책 제안사항
장애인수용자	1. 입소 시 받은 편의제공 내용과 지원·개선 요구사항 2. 거실활동, 운동, 목욕 등 위생관리, 독서 등 취미활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운 점과 제공받은 편의내용, 지원·개선 요구사항 3.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어려운 점, 지원·개선요구사항 4. 수용생활 전반 관련 추가 제안사항

2) 인터뷰 분석 결과

(1) 편의제공 현황

가. 입소 단계

입소단계에서 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제공되는 편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인 수용자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휠체어 등 장애유형에 맞는 보장구는 장애인 수용자 요구에 따라서 반입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안내라기보다 장애인 교도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원에서 두 번 선고하고 마지막에 상고를 한 건데 거기에서는 치료거실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결에도 장애인 거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도관들도 장애인이라는 걸 아는데 장애인 거실 있는데도 말을 안 해 주었다. 장애인 시설이 있는 교도소라고 들었는데 미결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C-2)

(xx교도소에서 선생님한테 앞으로 교도소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 안내받은적 있으세요?) 없어요 (C-4)

나. 식사, 거실활동, 운동, 위생관리(목욕 등), 독서 등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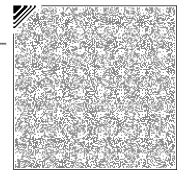
배식 같은 것은 다른 수용자(비장애인)들이 '사동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지원하고, 거실 생활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수용자들이 도와주고 있었다. 교도소에 따라서는 운동시간을 30분 더 제공하고, 목욕시간도 조금 더 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돈이 없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일상용품이 필요하면 추가로 더 지급되고 있다고도 하였다.

…독거수용자들은 한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씩 보장을 해주고 아니면 혼거는 30분 내외거든요. 근데 000동(신장장애인 수용동)의 사람들은 운동을 한 시간까지는 안되더라도 45분 내외, 거의 오십분정도 운동을 시켜줘요 투석이 있는 요일은 오전 오후로 운동을 시켜주고 오전 오후로 번갈아가면서 시켜줘요.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오후에 한 번에 다같이 운동을 시키죠 한 번에 할 때는 거의 50분을 시키죠. 오전오후 나뉠 때는 40분 내외. 제가 보기에는 좀 여유있게 시간을 주는 편이죠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운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죠(A-4)

한편 xx교도소의 경우에는 수용자 중에서 모범수를 선발하여 병사(의료병동)에서 간병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매를 갖고 있는 수용자 4명과 비장애인 수용자 3명이 1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있었다.

병사는 간병인이 있어서 많이 도와줘요. 화장실, 목욕, 운동 이런 걸 다 도와줘요. … 지금 8명 있거든요 근데 중증환자가 4명. 도움 없이는 못 움직이는 사람. … 제가 보기에는 절실한 게 중증장애인은 간병인이 필요해보여요. (A-5)

분류과에서 심사해서 분류하거든요 거기서 대상자들 면담도 하고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있는가 이런걸 직접 면담해서 죄명이라던가 전과 이런걸 종합적으로 확인해요. 거기서 대상자



심층면담하는걸로 알거든요. (A-5)

요즘은 중증환자가 있으면 간병인을 써요 자체 내에서…간병인을 써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직원들이) 대소변 수발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A-4)

다. 의료지원 영역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의료지원을 많이 제공하는 편이다. 특히 xx교도소의 경우에는 신장(투석)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의료거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의 시설은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좋고, 시설관련해서 민원은 없다고 하였다.

의료과는 수시로 간다. 원하면 몇 시간 안에도 다 만나게 해 준다. 비장애인은 순서에 의해서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동은 원하면 언제든 의사를 만나게 해준다.(A-1)

아까 이야기한 분도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주중 주말 상관없이 본인이 드레싱을 원하면 바로 하게 해준다.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 아니고 많이 아프다 싶으면 무조건 다 보내준다.(A-2)

(이곳은) 거의 투석환자다보니까 요일별로 지정을 해서 월수금 삼일 지정해서 오전오후 나눠서 오전에 받는 사람은 오전에 받고 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건 없어요 방에서 일반거실하고는 다르게 거실 내에 온수가 지급이 되니까 별도로 목욕을 하러 가는 대신 내부에서 온수가 지급이 되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씻고 그래요(A-4)

이에 대해 xx교도소의 신장장애인들 역시 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였으며, 식사 등도 저염식 등 맞게 나오는 등 지원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투석이 있는 날은) 아침에 10시쯤에 운동시간이 있어서 운동하고, 바로 들어와서 쉬다가 점심 먹고 바로 투석하러 가서 하고 오면 4시쯤 끝나서 와요 방에 있다가 좀 있으면 배식하면 그렇게 끝나죠. … 없는 날은 오후에 운동시간이 있고 방에서 TV보고 뭐 하다가 오후에 잠깐 운동가고 그러죠. (C-6)

아침은 다른 사동에는 계란후라이 이런 게 안나오는데 단백질 같은 거 저희한테는 지원이 되고요…식사에 불만은 없어요. …(목욕의 경우) 저희는 사동에 뜨거운 물이 다 나와서 불편사항이 없어요.(c-6)

한편 xx 교도소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의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외부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56]

> 외부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과장이 허가를 해야 하고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관비를 사용하죠.… 다른 교도소에서 안 된다고 했다면 그쪽 의료과장이 별로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A-6)
>
>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암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게 해줘요(A-5)
>
> 형집행정지도 위급한 상황에만 가능한 거죠 수술이나 진료는 의료과장이 판단하는 거고 의사인 의료과장이 진단을 하고 결정하는 거죠(A-6)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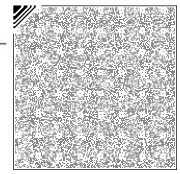
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제공 관련 어려운 점

가) 지원인력의 부족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교도소 내 지원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같이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수용자의 요구내용이 과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수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교도관들이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지원을 주로 사람이 하게 되는데, 직원이 해줄 수도 있고 수용자가 같이 많이 해줘요. 그러나 같은 수용자가 안 해준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수용자 중에 적당한 분에게 부탁을 한다. 강요할 수 없으니.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편한 사람들이어서. 지적장애, 신체장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되면 밖에 도우미라고 있다. 화장실, 목욕 등 도와줌. 어떤 곳은 씻겨주기도 한다. 사실 한정이 없다. 변도 받아주고 다 해준다. 근데 사실 여기가 교도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방치할 수 없다. 내부 갈등이 있다. 내가 서비스원인가, 계호나 집행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장애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 줄 수밖에 없다.(A-1)
>
> 사람들 끼리.. 오래전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받는 게 익숙하니까 호의가

56) 이는 교도소의 규모와 인력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교도소 규모가 크고 인력이 많으면 외부에서 수술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도 교도소 운영이 가능한데, 교도소 규모가 작으면 이러한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줘도 줘도 한 번 안주면 왜 안주냐 그런 느낌을 받는다. (A-1)

직원이 부족하죠.…최대한 인원한도 내에서 활용해가지고 보완을 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A-4)

나) 좁은 공간과 열악한 시설

현재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수용자들끼리 충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장애인 수용자 역시 생활하는 거실 공간이 너무 좁다고 하였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특히 화장실 사용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외에 거실에 보일러를 좀 빨리 켜달라는 의견과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 온수가 안 나온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실내에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다. 한정된 방에서.. 맨날 돌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갈데가 없다. 옮겨주고 싶어도 한번씩 안좋은 사람을 다 거쳐간다. 누구를 콕 찍어서 누구랑 살고 싶다고 하거나.. 일반 수용자들도 방 옮겨달라는 요구는 많이 하지만 장애인 수용자들은 꼭 누구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찾더라. (A-2)

…다른 방들은 허리 안좋으신 분은 보일러를 좀 빨리 켜줬으면. 허리 안좋으니 누워있으면 안되겠나..(C-2)

방이 좀 좁은 것을 제외하고는 불편한 것은 없어요(C-6)

다)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수용인, 개별적인 지원의 부족

장애인수용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은 없지만, 왕따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또 시각장애인 역시 외부활동 등 없이 하루 종일 거의 방에만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수용동 도우미들이 생활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였다.

원래는 간병인[57]이 도와줘야 된다. 간병인을 봅으면 간병인이 모든걸 다 도와준다. 수용자 중에 간병인이 있다. 대체복무자들이 들어간다(C-1).

특별히 없는데 대화를 못하는 농인이라서 왕따처럼 느껴진다(C-2).

57) 같은 수용자인 간병인이 있는데, 현재 6명이며, 의료동에서 일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C-6).

> 아침에 일어나서 밥먹고 점심먹고 저녁먹고 하죠. (작업이나 프로그램 참여 안하세요?) 없어요 거의 방에 있어요. (있는데 안가요? 없어요?) 불편해서 못 갔죠 도움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가요? …운동도 못 나가죠. 화장실은 더듬어서 가요… 일요일에 장애인 목욕이 있습니다. 휠체어 타서 저를 잡고 넣어주고 씻는 건 내가 다 씻거든요 등만 밀어주고 다시 옷입고 그렇게 해요(C-4).

신장장애인 역시 투석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작업 등을 하고 싶어 했으나 이에 대해 못해서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장애인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운동기구에 대한 욕구를 제시하였다. 한편 신장장애인들은 의료거실에 수용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일반병원의 환자복 같은 것을 입고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1가지 유형밖에 없어서 여름에 덥다는 의견, 즉 의복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저희가 병사(病舍) 신분이다 보니까 다치게 되면 교도소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서.. 저희도 직원분들한테 말을 마땅히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눈치가 보여요(C-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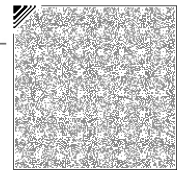
> 이게 옷이 반팔이나 좀 두꺼운 옷이 따로 안 나와요 근데 방은 따듯하겠지만 접견이나 이런 걸 가면 춥거나 더운데 저희는 딱 이게 하나라서 (겨울에는) 안에 많이 껴입어야 되거나, 여름에 더워요 (C-6)

라) 편의시설 부족

xx교도소는 치료사동 등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만 복도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편의)시설 관련하여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개선에 대한 요구는 많지 않다고 교도관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도소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요구를 해도 바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58]. 한편 장애인수용자, 특히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수용자는 편의시설 문제와 공간, 그리고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 그런걸(안전바) 설치한 사동이 있어요. 거실치료 사동이라고해서 병사에 의거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분류한 사동이 있어서 거실내에 손잡이가 있거나 복도에 짚고 가라고 안전바가 설치해놓고 했어요(A-4)

58) 이에 장애인 수용자들은 모두 동료 수용자에 의하여 편의(도움)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였다.



거의 본인들 생활하는데 주변사람도 도와주고 직원도 도와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요구는 별로 없다.… 본인들끼리 불편함을 서로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 뭐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A-2)

장애인 시설 없고, 매트리스 없고 화장실도 없다. 장애인이 살 수가 없는데 장애인 교도소라고 장애인을 보낸다. 장애인 화장실이라고는 교육장에 하나 밖에 없다. 장애인 사동에는 장애인 화장실 없고 운동기구라고 있지만 운동할 수 있는게 없다. 하반신 마비들은 할 운동도 없다.(C-1)

아무것도. 병동 갔다가 장애인 거동으로 왔는데 그나마 내가 있는 방에 화장실이 내가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다.(C-1)

샤워를 할래도 샤워용 휠체어 밖에서 들여 왔고, 온수 목욕은 목욕탕이 따로 있다. 지적이나 절단장애인은 걸어가서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아예 안되어 있어 엄청 안 좋다. 저는 밖에서 제거 다 가져왔지만 다른 분들은 못한다(C-1).

목욕은 대충 방에서 하는데 온수 목욕의 경우 누가 도와주거나 부탁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C-2)

장애인교도소면 정부에서 관리하니 장애인시설을 다 해놓고 장애인을 보내야지. 지체, 지적 다 다른데... 시설을 해 놓고 간병인도 배치 해놓고 수용을 해야지 무조건 잡아넣고 장애인 교도소라고 하면...(C-1)

한편 운동장 등에 간단한 운동기구라고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방에서요? 전체적으로요? 교정시설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가 몇군데 있다고 하든데 저희는 장애인 거실이 따로 있는데 50명? 60명 정도, 기결미결 수용하는 방이 따로 있어서 낙상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벽에 손잡이 잡을 수 있게 양변기. 휴대용으로 쓰는 변기 그런게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비장애인과 동일해요 다른 기관이랑은 다르게 밖에는 다 간병인이 있잖아요. 수용자들 중에 모범수 위주로 뽑아서 일상생활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체장애 위주로 일부가 그 사람들 도움을 받고 있어요(B-4)

운동기구 같은게 운동장에서 뭐 돌리고 하는 게 있으면 도움이 될테죠 (B-3)

운동시간도 시간인데 운동기구가 좀 생기면 좋겠어요. 다른데 보니까 돌리고 공원에 있고 그런게 다 있던데 우리도 생기면 좋겠어요(C-7)

가. 의료 지원 영역에서의 편의제공 관련 어려운 점[59)]

가) 의료시설과 장비의 부족

구금시설에 현재 있는 의료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구금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용 보조기기가 별로 없다고 하였다. 이에 욕창 매트리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애인수용자에게 반입을 허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타 거실이나 화장실 문이 좁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였다.

> 장애인들 가장 많은 요구와 컴플레인은 거실 화장실 문이 좁아 휠체어 못 들어갈 때. 같은 장애인들이 모여 있으니 잘 못 도와주는 것 불편하다고 (B-1)

> 욕창 같은 경우 상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욕창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 케어는 욕창 매트리스 요구, 병원에서 받아오는 경우 집에서 보내주는 경우 합당하면 허가해주어 사용할 수 있게… (B-1)

> 교정시설이 저게(뇌병변 전용 엑스레이 등 장애인을 위한 의료장비) 없는 데가 태반이고요 시설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게 있어야하지 않나 싶은데 비장애인들을 처우하기에도 시설이 열악한데 상급기관에 어필한다고 해도 확보가 되지도 않을 거고..(B-4)

나) 지원인력과 의료전문인력의 부족, 진료시간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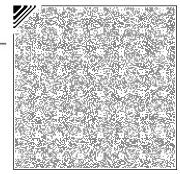
의료분야 직원에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한데, 현재 있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의 경우 급여수준이 민간보다 매우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의사들이 부족하다 보니 진료시간이 부족하여 2번 진료할 것을 1번만 진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공분야가 아닌 분야와 관련하여 처방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59) 그래도 인터뷰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복통이나 뇌경색이나 수용생활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나라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면 본인이 부담한다는 근거하에 나가요. 법무부에서 예탁금이라는걸 공단측에 해놔요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적용된 금액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B-4)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외부자원이 필요할 때 생명이 중요하니까 일단 나가요 관비로 주고 여기서 자기 부주의로 다치면 자기가 내야죠. (B-3)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내지 관심이 있는 사람. 특채로 오는 간호사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많이 가서 간호사가 많이 없다. 지금 자격증 없는 사람 많다. 간호 특채들도 많이 와서 서비스가 되면 좋은데 부족하다. … 일반인 보다는 의료 교육을 받는 사람이 훨씬 낫다. (B-1)

의료과에 총 17명이 있는데, 2명 간호사, 2명 의사, 1명 방사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B-2)

간호특채 5년 간호조무사 3년… 우리과로는 지원을 잘 안한다. 우리는 한다고 해도 욕을 얻어먹고 고소고발당하니까. 이왕이면 똑같이 월급 받는데 고소고발 안 받는데서 하려고 한다.(B-1)

진료 신청자가 많으면 시간내 소화 위해 짧아지는데 대부분 진료 신청자 많다. … 내성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수형자들이 감기약 수면제 매일 먹는다(B-1)

의료적인부분은 의사확보가 중요해요. 치료. 그런데 밖에 병원은 전문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다 보니까 정형이나 재활에 관한 전문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에요(B-3)

(의사) 월급이 되게 적어요. …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죠. …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진료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라는 홍보가 필요하고. 전문과목이 다 있는데 종합병원처럼 내과 피부과 이런게 아니라 다 뭉쳐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르는게 있으니까 계속 공부해야하고 그런 부담도 있죠.(B-5)

전체 이천팔백명중에 이천명이 환자에요…3명이서 환자를 다 볼 수는 있어요. 세 번 볼 거 한번만 보면 … 그 사람들(환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거죠.(B-5)

다) 농아인 진료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농아인 진료시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이 경우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가 와서 지원을 하게 하거나, 교도관이 개인적으로 수어 등을 학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였다.

그 방에 다른 수용자가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 같이 오게끔 한다.(B-1)

저도 1년 동안 수화학교에서 수화를 배워서 기본적인 것은 제가 해 줍니다. 변비인지 설사인지 확실해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년 과정 수화 중급과정 마쳤고 부족한 부분은 농아인 중에서 잘하는 사람. 종이에서 적어서 와라.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라고 이야기 한다. (B-1)

라) 외부병원 이용에서의 어려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휠체어를 이용[60]하고 직원이 함께 동반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외부병원을 이용할 때 사람들의 편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에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였다. 한편 xx교도소의 경우에는 의료과에 외부병원만 전담하는 직원들이 2명이 있어, 이들이 먼저 병원에 가서 준비를 하도록 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병세가 심해서 외부 병원이 입원 혹은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금시설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1][62]. 입원이 필요한 정도면 형집행정지를 받아야 하는데 잘 안 해준다고 하였다.

> 휠체어, 목발 사용자 있는데 우리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있다. 리프트 차량 있어 이동에는 문제없다 … 다만 병원에서 오지 말라는 경우도 많고, 가면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 … (B-1).
>
>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시간을 최소화해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B-3)
>
> 우리가 (형집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해준다.(B-1)
>
> 교도관이 따라가는데 의료과에 외부병원만 전담하는 친구가 둘이 있어요. 그 분들이 보안과 직원분들이랑 같이 다녀오죠.…오자마자 바로바로 진료를 해야 하니까요.(B-3)
>
> 보안과 직원들은 1:3직원들이 데리고 가고 외부병원에 아침마다 거기서 대기하고 인근병원에 스케쥴이 있으면 먼저 거기 가서 대기를 하는거에요. (B-4)
>
> (저희는) 수술이 필요하면 해요. 근데 병원비보다 직원 수당이 더 많이 나가요 9명씩 들어가야 하니까. 저희는 대형교도소 다보니까 한 병원에 대여섯 명이 입원하면 어마어마하죠.…(교도관은) 보안과에서 지원을 하죠. (B-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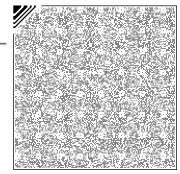
한편 장애인수용자 인터뷰를 보면 외부 병원 진료는 가능하지만, 현재 입원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60)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걸을 수 있는 수용자도 외부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휠체어에 타서 동하다록 하고 있다.

61) 1명이 입원하게 되면 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62) 이는 교도소의 규모와 인력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교도소 규모가 크고 인력이 많으면 외부에서 수술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도 교도소 운영이 가능한데, 교도소 규모가 작으면 이러한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욕창 크기가 20cm이었는데 지금은 나았다. 병원을 4개월 만에 갔다 왔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도 않고 유지. 수술해야 하는데 여기는 보안과장 의료과장 수술 허가해줘야. 매일 소독은 해주는데 똑같다. 사진 맨날 찍는데도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병원은 할 수 있는 것 수술밖에 없다. 수술하면 한 달이면 났는데. 시켜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나가서 하라고 한다. 치료기간동안 나한테 나오는 교도관들이 9명인가 붙는다. 사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 못한다. 응급환자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내가 치료받는다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C-1)

2017년 구속돼 5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로 나가 1년 6개월 치료 하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낫고 있다. 나가서 하라는데 할 말이 없다.(C-1)

(3) 개선방안

가.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수용거실 확대/비장애인과의 혼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어서 생활하게 하지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신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장애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비장애인수용자와 장애인수용자를 같은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비장애인수용자가 장애인수용자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실적으로 교도소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장애인에게 다른 수형자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모범수형자를 뽑는다면 점수를 더 주거나 가석방을 주거나(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_확인필요)(A-2)

이러한 비장애인과의 혼거에 대해서 장애인수용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모든 장애인수용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면접에 참여한 시각장애(전맹) 수용자의 경우에는 함께 생활한 수용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혼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비장애인수용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역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장애인수용자를 비장애인과 함께 수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다(C-1)(C-2)

…(지금까지) 15명 같이 살아봤는데 다 더러운 새끼들이에요 20대부터 70대까지 같이 살아봤는데 말도마세요… 다 훔쳐가요 행주 세숫비누 저는 미리 많이 좀 사두거든요 하나 살 걸 두 개 세 개 사는데 이걸 다 훔쳐가버려요. 말도 마세요, 운동화 반팔티 다 잃어버렸어요(C-4)

운동도 못 나가죠… (같은 거실의 비장애인 수용자와) 한번 나가봤는데 싫은 소리 해요… 도움 필요 없어요. 독방이 좋아요. 대필만 해주면 되요.(C-4)

저는 여기서 혼자 있는게 좋아요. 남부에서 독거방 달라고 면담을 다섯 번 넘게 했는데 독거방을 안 해주더라고요 치료거실에 갔는데 …면도기 훔치지 다 훔치지. 근데 면담을 했더니 제가 거짓말을 한데요 그랬더니 절 여기로 보냈어요. 보지 못한다고 저보고 거짓말 한다고.(C-4)

나) 비장애인수용자 도우미 확대

(가) 비장애인수용자 도우미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수용동 도우미라고 여러 가지 생활을 도와주는 인력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들을 늘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비장애인수용자들은 간병인이 되고자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이들이 생활하는 의료거실이 다른 거실에 비해 시설도 좋고, 전화사용이나 접견 등에 있어 간병인이 되면 더 많은 편의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장애인 사동은 수용동 도우미를 좀 더 늘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A-1, A-2)

같은 수용자인 간병인이 있는데, 현재 6명이며, 모두 의료동에서 일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좀더 늘리면 좋겠다(A-3).

장애인 거실에서 활동하면. 장애인들 끼리 있잖아요. 몸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비장애인 중에서 교육시켜서 헬퍼식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좋겠다. 청각장애인 끼리 있지 않고 건청인과 함께. …(B-1)

서로 하려고....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인센티브가 있어요. 전화를 더 할 수 있게 해줘요 원래 3급이면 전화가 안 되는데 간병인은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접견도 기본적으로 다 해주니까.. 3급이라도 간병인을 하면 전화를 하게 해주죠.(A-5)

병사는 방도 넓고 침대도 있고 온수도 나오고 해서 괜찮은데. 일반사동은 4등급인데 그래도 팔다리(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간병인이 한방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병사처럼 온수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조금은 병사보다는 불편해요).. (A-5)



환자 있는 곳은 다 양변기에요. … (A-6)

(나) 도우미 활용 시 사전교육 방안(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한편 다른 수용자를 간병인 등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때 반드시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간단한 교육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간병인도 모범수를 뽑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교육이 필요하죠. 전문인력은 아니더라도 그런 교육이 없어요.. 대변 활동이나 닦여준다거나 씻겨준다거나 등등 그런 교육만 해요(B-3)

음식을 먹여줄 때 기도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게 되게 위험한데 조심하라고만 말을 하지.. 아직까지 사고만 없었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험해요(B-4)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실시하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과 프로그램을 짜고 필요시 강사까지 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현재 외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호사 혹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교육 내용을 도입하여 수용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수용자들이 장애인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하는건 일반직원들이 의료과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요.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러이러한걸 양성할거면 이런걸 해라 하는거랑 다르니까.. …외부에서 짜주면 좋죠(B-4)

(다) 대체복무요원을 통한 추가 지원

대체복무요원을 통한 지원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왜냐하면 교정 공무원이 모두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수용자들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의 경우에는 이동반경이 매우 좁기 때문에 보조기기 등의 편의지원 보다 인적지원이 더 중요한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상주하는 공간 안에서의 추가적인 인적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복무요원을 통한 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체근무인력이 생활하는 곳과 교도관/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교도관이 아니어서 재소자와 접

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24시간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대체인력은 낮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제 생각은 대체근무인력은 다른 막사를 사용하고 재소자는 수용동 안에서 생활하는데 수시로 돌면서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교도관이 아니어서 우리가 있지 않으면 재소자와의 접촉을 할 수 없다.(A-2)

> 이게 24시간 해야 하니까 이게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화장실가야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체복무들은 낮에만 하잖아요.. 간병인이 있으면 편하긴 편해요.. 직원이 해서 힘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나아요 (A-5)

라. 지원예산 확대

많은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시설 안에 직원으로 있으면 뭔가 수용자를 억압하고 한다고 생각 많이 하나 저도 20년 넘게 근무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밖에서 못 알아주니까 서운하다. 장애인 지원좀 많이 해주었으면. 그러면 베풀게 많잖아요. 예산지원 할 수 있으면(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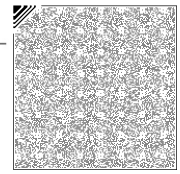
> 영치금이 없는 수형자들 많은데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 많아 안타깝다. 현실적인 지원,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A-2)

마.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가) 농아인 같은 거실 배치

청각장애인이 거실 내에 1명이면 생활하는데 매우 어렵기 때문에 2명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 하나 보다는 둘 셋은 있는 게 좋겠다.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났다 던지 하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C-3)



나) 수어통역과 메모 등을 통한 내용전달. 화상전화 통한 수어통역 제공 등

청각장애인은 안내방송 등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필요시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만일 수어통역이 어려우면 메모 등을 통해서 내용을 꼭 전달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안으로 화상전화 수어통역센터와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제 생각에는 농인을 보았을 때 안내 방송이나 방송이 왔을 때 농인들이 전혀 모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은 건 넘기는데 그것 보다는 차라리 메모가 돼서 전달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 … 수어통역이나 기계 같은 게 없더라도 편의적으로 글씨를 적어 전달해주는 게 좋다. (C-3)
>
> (수어통역사만 있으면 일상의 모든 어려움 해결되나?) 그렇다고 생각.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소통이 안되고 많이 답답해하므로 수어통역 있다면 불러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C-3)
>
> (전자 터치해서 찍어서 패드를 줘서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가?) 괜찮긴 한데 문제 있다. 문장 이해력이 넉넉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농인도 많다. 통역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다. 농인 모두가 문장력 있는 것 아님. 청인은 청인식으로 교육이 돼 있지만 농인들은 수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장이 너무 약하다.(C-3)
>
> (손말이음센터처럼 화상전화 수어통역센터와 연결하는 문제는 어떤가?)요즘은 목적 범위 내에서 휴대폰도 수용동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통역이 필요하면 영상통화 연결하는 등의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C-3?)

다) 장애유형에 맞는 각종 활동 운영

현재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여러 가지 출역(出役)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수용자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역은요?) 저는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수금 빠지다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방에만 있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교도소에 말 해본적 있으세요?)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 말은 안해봤어요(C-7)

(4) 의료영역에서의 개선 방안

가. 예산 및 인력 추가 지원

의료영역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영역보다 기저귀 등의 의료용품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문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개선되는 등의 시설 개·보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물론 인력지원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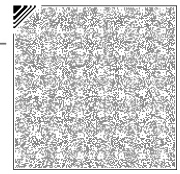
> 기저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물품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 관비로 사기는 사지만 다른 것도 사야하고… 문, 휠체어 다닐 수 있게. (B-1)
>
> 장애인수용자를 도와줄 수 있는 헬퍼가 필요하다. 장애인끼리는 하기 어려우니 비장애인 아픈 사람이 있는데 또 아픈 사람이 오면 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나... 휠체어는 사동 도우미가 있는데 옮겨달라고 부탁한다. 하라고 (강요) 할 수는 없다. (B-1)
>
> 자체적으로 공문하나 내려주고 자체적으로 이행하라 이런 식이에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거기서 막히니까 안되는거죠(B-3)
>
> 의료예산으로 내려와서 이 정도를 장애인으로 써라 이게 아니라서 의료예산으로 뭉뚱그려 버리니까 제대로 쓰이지 않아요(B-3)
>
> (욕창매트는) 있기는 있는데 수량이 엄청 적어요 거의 잘 안쓰기도 하고.. (B-4)

나. 진료시 수어통역 지원

특별히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진료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63].

> 아프다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면 통역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도소 안에 수어통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통역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 때문에 통역을 못함. 이 안에 수어통역에 관한 게 없어서 너무 힘들다.(C-3)
>
> 건강검진 등을 할 때 다른 농아인은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라고 써서 보여주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웠다.(C-3)

63) 인터뷰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은 수어와 구화가 가능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지만, 다른 농아인은 어렵다고 하였다.



(5) 정책 제언 사항

가. 장애관련 전문가 (특별)채용, 장애 이해 교육 확대

현재 교도관들은 공격성 등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냥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장애인복지)를 전공했거나 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별도로 뽑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금시설의 경우에는 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현재 교도관들이 장애관련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심도깊은 장애이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장애인 수용자동 등 장애인이 많은 곳에 교도관이 배치될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운영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지적 수준이 초등도 안 되는데 법에 딱 맞게 할 수가 없다. 예컨대 한 명이 집에 가고 싶다고 날뛰고 다닌다. 규정위반 징벌방에 넣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달래거나 맛있는 거 주고 커피 한 잔 준다. 타이르고 달래고 윽박지르고.… 현재 장애인식교육이 사이버로 실시되고는 있다(A-1)

> …장애인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워낙 많아서 어느 사동가도 다 있다. 늘 왔다갔다 한다. 한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요구사항이 늘 있다. 직원들이 늘 가서 만난다. 교도관들은 대체적으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하고 환자 똥 오줌 다 받아준다. 근데 교육을 받고 하냐, 그런건 아니다.…(A-1)

> 따로 필수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받는건 없는데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장애인동료와 함께 일하기 필수로 들어야 하는게 있어서 그건 모든 교도관들이 다 이수를 해요.(A-6)

나. 전문 구금시설/병원 운영

가) 장애인 전담 / 치료 전담 교도소 운영

제대로 된 장애인 전담 혹은 치료전담 교도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적인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치료감호소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업무만 계속하게 되는데, 일반 교도소에서는 특채로 들어온 간호사 등은 순환보

직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전담교도소를 만들고 여기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장애인들은 사실 치료나 재활을 못하잖아요 이 안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전담교도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재활치료까지.. 재활도구가 있는.. 사실 여기서는 기구 사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전담 시설이 있으면 해요 센터라던가..(A-5)

> (중증)장애인 전담 의료교정시설을 지정하여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A-5)

> 치료감호소에서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만 계속하는데... 그게 순환이 안되니까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전문성을 요구할 때는 좋죠. 근데 저는 제가 사회복지사로 들어왔어도 보안과를 해야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용자들만 보고 싶겠어요 사무일도 하고싶을거고 그런거 때문에 계속 순환보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건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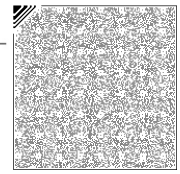
앞서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일반 교도소에서는 특채로 들어온 간호사 등도 순환보직을 하게 된다. 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니면 전담교도소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이곳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과에 들어오면 3년을 하면 보안과로 무조건 나가야해요 그렇게 하면 보안과로써 1년 야근해야하고 일근은 안돼요 그런 보직규정이 있어요. 간호사는 5년, 응급구조사는 3년. 의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야간에 환자 나오면 어쨌든 나와야해요. 자다가 나와야하고 사실 의료과 지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해요. 제가 나가면 누군가를 뽑아야하는데 안 뽑히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에요.(B-6)

나) 구금시설 수용자 전담 병원 운영

수술이나 입원 등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군병원처럼 중증장애인이나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게 사람이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하는데 그래서 대조되는 게 전담병원이 있어야한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직원 9명씩 빠져버리니까 일이 안돌아가요 (B-3)

장애에 대한 플랜은 없고. 법조항도 없고요. … 누워있는 와상환자나 치매환자들 … 중증 1급이나 2급은 교도소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 병원에 격리를 해야죠. 일반 구금시설에서는 어려운 환경인데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경증은 또 비장애인과 비슷해요. 보통의 장애인들을 더 대우해주지는 않아요(B-5)

(재택근무나 당직을 하는 동안에 환자가 발생하면) 종합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라 저희가 나와서 볼 정도면 응급실에 가는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B-5)

치매나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도소에 검사나 판사들이 넣어놓고 자기들은 모른데요. 근데 여기있는 사람들끼리 해결을 해야하는데 … 그래서 그런 전담시설을 따로 만들어야해요. 여기있는 수용자들끼리 책임지라는 건 너무 무책임해요.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재범의 위험이 없으면 (교도소에) 넣으면 안돼요…치매나 장애인 전담을 따로 만들어야지요.…. 특히 노숙자들 노역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종합병원에서 10일 이상 입원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금이...(B-5)

한편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징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구금시설 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별도 공간에서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형자, 미결수, 그리고 노역수 중 제일 문제되는 건 벌금 못내서 노역수. 이중에 한 두명 빼고는 모두 상태가 안좋아요 건강상태가. 제가 궁금한건 이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내리고 경찰도 경범죄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을 봤을까 이 사람이 벌금을 낼 수 있어 보이는지,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보이는지 참 의문이에요. … 적어도 (다쳤으면) 병원이라도 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와야 하는데 검사도 안하고 코로나 검사도 안하고 그냥 와버려요. 온거 보면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을까 하는 이런 판단이 저도 들어요(B-6)

이상의 인터뷰 분석 내용과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0〉 인터뷰 분석 내용 및 분석결과

영역	내용	세부내용	
편의제공 내용	입소단계	별도 편의제공 없음 보장구 반입 가능	
	일상생활	다른 수용자 통한 활동지원 실시 운동시간, 목욕시간 등 추가지원 일상용품 추가지원	
	의료지원영역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제공 외부병원 이용 지원	
문제점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제공 관련 어려움 점	지원인력의 부족	
		좁은 공간과 열악한 시설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수용자, 개별지원 부족	
		편의시설 부족	
	의료지원영역에서의 편의제공 관련 어려움	의료시설과 장비 부족	
		지원인력/지원전문인력 부족, 진료시간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농아인)	
		외부병원 이용 어려움	
개선방안	일상생활 전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수용거실 확대/비장애인과의 혼거	
		비장애인 수용자 도우미 확대	비장애인수용자 도우미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도우미 활용시 사전교육방안(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대체복무를 통한 추가 지원	
		지원예산 확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농아인 같은 거실 배치
			수어통역 등 제공
			장애유형에 맞는 각종 활동 운영
	의료영역	예산 및 인력 추가지원	
		진료시 수어통역 지원	
정책제언사항	장애인 관련 전문가 (특별)채용		
	장애이해교육확대		
	전담 구금시설/병원 운영	장애인 전담/치료전담 교도소 운영	
		구금시설 수용자 전담 병원 운용	



Ⅳ

정책제언

1.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쟁점
2.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 및 예외
3. 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4.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지침 개정안
5.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Ⅳ

정책제언

1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쟁점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에게 구금시설 내에서의 동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의 당위성을 확보한 이후의 쟁점은 크게 편의제공의 수준과 제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쟁점의 요지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합리적 논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쟁점1.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이 사회 일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을 초과할 수 있는가?

사회 일반에서 장애 차별로 인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시행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구금시설에서도 역시 장애 차별로 인해 장애인수용자는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수용자 대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구금시설에서 장애인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면, 구금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수준은 사회 일반에서의 그것보다 우월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수용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사회 일반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보다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것은 타당한지에 관한 논변이 필요하다. 장애인 일반과 장애인수용자를 구분하여 장애인수용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장애인 일반의 그것보다 작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장애인수용자의 열등처우원칙)은 부당한 구별로 인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의 완전한 제거라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금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사회 일반과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장애 차별로 인한 부정의를 완전히 해소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할 것이다.

쟁점2. 정당한 편의 제공의 방법으로서 장애인 일반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최근 구금시설 내 수용자를 대상으로 선거권 박탈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복지권, 즉 보편적 복지서비스 이용권 박탈도 같은 맥락에서 완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구금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중복 논란 및 구금시설 특성상 매우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일반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수용자에게 전면적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담보하고 있는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주요 내용을 구금시설 특성에 맞게 변용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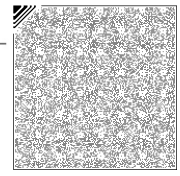
2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 및 예외

구금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원칙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원칙을 준용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무리 구금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받는 방법으로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수용자가 원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시기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수용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를 최대한 장애인이 원하는 방법, 수단 및 시기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수용자의 유형·정도·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는 장애유형별로, 중·경증과 같은 장애정도별로, 남·녀와 같은 성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필요한 경우 장애인수용자 및 교도관, 의료진 등 관련자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수용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수용자를 지원하는 교도관 및 의료진 등 관련자에게 함께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수용자에게 돌봄지원을 제공하는 동료 장애인수용자에게 인센티



브 성격의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수용자와 비장애인수용자를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특성 상 장애인수용자와 비장애인수용자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수용자의 권익을 보다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분리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장애인수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수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수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장애인수용자가 비장애인수용자, 다른 장애인수용자 또는 교도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수용자가 정당한 편의를 사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정당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여덟째,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수용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며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구금시설 내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예외기준을 준용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욕창용 매트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경우, 수용거실 여건과 다른 수용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구금시설 내의 시설·설비 등의 구조 변경 또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구금시설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할 경우에 한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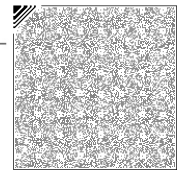
넷째, 교정업무 상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구금시설 내 수어통역 또는 심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교도관이 없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3 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1)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일반에 대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과 「형집행법」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구금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주요 선행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64] 등을 참조하여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다음의 〈표 4-1〉, 〈표 4-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64)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장애인 수용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것,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축시설을 장애인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할 것, 장애인 수용자에게 장애부위 찜질 및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를 충분히 지급할 것,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할 것, 종합적인 장애인수용자 교육훈련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2009.3)



〈표 4-1〉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구분	정당한 편의	주요 내용
구금시설 입소	분류심사 단계에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여 분류심사 결과에 반영	신입심사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여 분류심사 결과에 반영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형태로 수용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책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통역,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쉬운 용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구금시설 내 일상생활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편의증진법 적용	장애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거실 등 최소한의 시설은 전담교정시설에 준하는 편의시설 설치
	청각장애인의 경우 같은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청각장애 수용자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지원을 위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청시 수용 거실 따로 지정
	운동시간 추가연장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필요한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운동시간 연장 지원
	목욕시간 추가연장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특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 충분한 목욕횟수·시간 추가 부여
	장애와 관련된 필요한 보조기기 지급	구금시설 내에서 장애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목욕 및 운동 시 돌봄인력 지원	중증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목욕 및 운동 시 별도의 돌봄인력 지원
	욕실 편의시설 지원	구금시설 욕실의 경우도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지정
	수용거실 편의시설 지원	구금시설 수용거실의 경우도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지정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의 경우,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에 있어 의사소통 지원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소장면담, 청원 등과 같은 권리구제절차에 있어서 의사소통 인력 지원

〈표 4-2〉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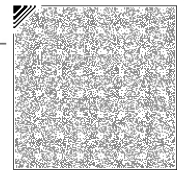
구분	장애 유형	영역 65)	정당한 편의제공 핵심사항	정당한 편의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주요 내용	현행법령 존재여부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여부			향후 조치 계획		주요 조치내용
				물리적 편의	비물리적편의		존재	비존재	시행	부분시행	미시행	법률개정	명령개정	
구금시설 입소	시각, 청각, 발달	⑬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형태로 수용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0	0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책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통역,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쉬운 용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0			0	0		형집행법 제17조(고지사항) 제2항 신설
	전장애	⑮	장애와 관련된 필요한 보조기기 지급 또는 소유 허가	0		구금시설 내에서 필요한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급 또는 입소 시 반입 허가		0		0		0		형집행법 제22조(의류 및 침구등의 지급) 개정하여 지급물품에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구금시설 내 일상생활	전장애	⑱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0		장애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전담교정시설에 준하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1조(수용거실 등) 개정하여, 수용거실, 진료시설, 접견시설에 전담교정시설에 준하는 편의시설 설치 추가
	청각	⑪	청각장애인의 경우 같은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0	청각장애 수용자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지원을 위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청시 수용거실을 따로 지정		0		0		0		형집행법제15(수용거실 지정)개정하여, 청각장애 수용자의 경우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추가

65) ①위생(목욕 등), ②운동, ③작업·직업훈련, ④교육, ⑤교화프로그램, ⑥종교·문화, ⑦접견·편지수수, ⑧금품관리, ⑨전화통화, ⑩안전·질서, ⑪수용(독거, 혼거수용 등), ⑫이동(거실, 복도 등), ⑬정보고지, ⑭인권침해·권리구제, ⑮물품 지급, ⑯돌봄, ⑰특별한 보호(장애 여성 등). ⑱기타

구분	장애 유형	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핵심사항	정당한 편의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주요 내용	현행법령 존재여부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여부			향후 조치 계획		주요 조치내용
				물리적 편의	비물리적편의		존재	비존재	시행	부분시행	미시행	법률개정	명령개정	
	전장애	②	운동시간 추가 연장		0	장애, 질병으로 추가적인 신체활동이 필요한 수용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시간 추가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연장 허용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제50조(정당한 편의제공) 별표 신설하여, 운동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정당한 편의로 추가[66]
	전장애	①	목욕시간 추가 연장		0	장애, 질병으로 인해 특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 충분한 목욕횟수와 시간 부여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제50조(정당한 편의제공) 별표 신설하여, 목욕횟수, 목욕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내용을 정당한 편의로 추가
	전장애	⑮	장애와 관련된 필요한 보조기기 지급	0		구금시설 내에서 장애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제50조(정당한 편의제공) 별표4의3 신설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추가
	전장애	⑯	목욕 및 운동 시 돌봄인력 지원		0	중증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목욕 및 운동 시 별도의 돌봄인력 지원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제50조(정당한 편의제공) 별표4의3 신설하여, 목욕을 위한 보조인력배치를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추가

구분	장애 유형	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핵심사항	정당한 편의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주요 내용	현행법령 존재여부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여부			향후 조치 계획		주요 조치내용
				물리적 편의	비물리적편의		존재	비존재	시행	부분시행	미시행	법률개정	명령개정	
	전장애	①	욕실 편의시설 지원	0		구금시설 욕실의 경우도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지정	0				0		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하여, 욕실도 의무 또는 권장으로 추가
	전장애	⑪	수용거실 편의시설 지원	0		구금시설 수용거실의 경우도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지정	0 (장애인등편의법)				0		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하여, 객실·침실도 의무 또는 권장으로 추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발달장애 뇌병변	⑭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의 경우,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에 있어 의사소통 지원		0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소장면담, 청원 등과 같은 권리구제절차에 있어서 의사소통 인력 지원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제50조(정당한 편의제공) 별표4의3 신설하여, 소장면담시 의사소통지원, 정기적 면담 실시 등 추가

66)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46조제1항과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제46조제1항은 소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반하여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의 한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의료서비스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1) 의료서비스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일반에 대한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구금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주요 선행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67]등을 참조하여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표 4-3〉, 〈표 4-5〉 참조).

〈표 4-3〉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구분	정당한 편의	주요 내용
원내 의료서비스	의료전담 구금시설 설치	만성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의료전담 구금시설 설치
	의료장비 개선	장애인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의료장비 완비
	편의시설 확충	진료실과 병실의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완비
	만성질환 및 장애 관리	모든 장애인 수용자의 건강 상담, 건강상태의 주기적 진단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수용자 주치의(의무관)' 지정
	간병 지원	대전교도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간병인(모범 수용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간병인 교육 실시 → 출소 후 사회복귀와 연계 가능 / 대체복무요원 활용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특례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기기 이용 지원
원외 의료서비스	원외 협력 병원 확보	국공립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병원 등에서 외부진료허용
	입원시 간병 지원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 활용 또는 보편적 장애인 서비스로서 '가사간병서비스'[68] 특례 제도 도입
의료서비스의사소통 지원	의사소통 지원	수어통역,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지원

67)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취약 수용자의 건강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의무관 충원·유지, 야간·공휴일 의료공백 최소화, 여성수용자 등 특별 의료처우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등을 법무부와 적극 협의, 개선안 마련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권고 보도자료. 2018. 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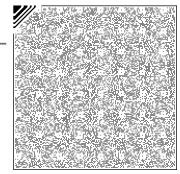
(2)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등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일반에 대한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고용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법률로 간주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구금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주요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등 영역에서의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표 4-4〉, 〈표 4-5〉 참조).

68) 가사간병서비스(바우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지원(목욕, 대소변 등), 가사지원(청소 등), 일상생활지원(외출 등), 신변활동지원(체위변경 등)
- 서비스 제공 시간: 월 24시간(A형), 월 27시간(B형), 월 40시간



〈표 4-4〉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구분	정당한 편의	주요 내용
전체 수용자 대상 보편 프로그램	고충상담	교도관 등에 의한 장애인수용자의 수형 생활 전반에 대한 정기적 고충 상담 제공
	교도작업	장애인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내용, 작업환경, 통상적인 직무수행 방식 등을 변경 혹은 조정(예: 신장투석 장애인의 경우, 건강 및 재활의 측면에서 활동량 증가 필요함에도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교도작업에 투입되지 못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구금시설 내 맞춤훈련센터 설치
	교화교육	교육 자료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에게도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수어통역사와 같은 인적 지원 제공
장애인 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재활치료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용 자격 부여[69]
	실내 재활운동시설 설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날씨에 관계없이 장애인수용자가 재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실내 재활운동시설 설치
	외부 위탁 방식 확대	장애인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확대
전담인력 확충	사회복지사 등 채용	교정 프로그램 전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채용

69) 영국의 사례(영국의 구금시설 서비스(HM Prison Service)에 적용되는 명령 제2855호) : 특별한 필요를 사정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자원(local NHS Trust and Social Services)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타 정보와 자문을 외부의 기관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표 4-5〉 의료서비스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구분	장애 유형	영역 70)	정당한 편의제공 핵심사항	정당한 편의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주요 내용	현행법령 존재여부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여부			향후 조치 계획		주요 조치내용
				물리적 편의	비물리적편의		존재	비존재	시행	부분 시행	미시행	법률개정	명령개정	
의료서비스	전장애	①	의료전담 구금시설 설치	0	0	만성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의료전담 구금시설 설치		0			0	0		형집행법 제37조의2(집중의료처우교정시설) 신설하여 외부의료시설 이용이 부적절한 수용자를 위한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 설치
	전장애	①	의료 장비 구비	0		장애인용 의료 장비 완비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0조(전담교정시설) 제4항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용 의료장비를 갖추는 내용 추가
	전장애	①	편의시설 개선	0		진료시설과 의무수용동(병실)의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완비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0조(전담교정시설) 제1항, 제50조(수용거실 등) 제3항을 개정하여, 진료실과 의무수용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내용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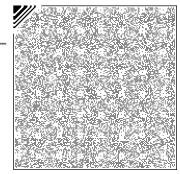
구분	장애 유형	영역 70)	정당한 편의제공 핵심사항	정당한 편의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주요 내용	현행법령 존재여부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여부			향후 조치 계획		주요 조치내용
				물리적 편의	비물리적편의		존재	비존재	시행	부분 시행	미시행	법률개정	명령개정	
	전장애	①	만성질환 및 장애 관리		0	모든 장애인 수용자의 건강 상담, 건강상태의 주기적 진단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수용자 주치의(의무관)' 지정	0				0	0		형집행법 39조(진료환경) 개정
	전장애	①	간병 지원		0	모범 수용자 또는 대체복무요원을 간병인으로 활용		0		0			0	형집행법 시행령 제54조를 개정하여, 대체복유요원에 의한 간병, 중증장애를 가진 수용자에 대한 간병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전장애	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0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특례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기기 이용 지원		0			0	0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보장구급여비),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에 내용 추가

구분	장애 유형	영역 70)	정당한 편의제공 핵심사항	정당한 편의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주요 내용	현행법령 존재여부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여부			향후 조치 계획		주요 조치내용
				물리적 편의	비물리적편의		존재	비존재	시행	부분 시행	미시행	법률개정	명령개정	
	전장애	②	외부의료 기관 확보	0		국공립병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의 진료 허용	0			0		0		형집행법 37조(외부의료시설의진료 등) 제2항을 신설하여 국·공립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전장애	②	입원시 간병 지원		0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 활용 또는 보편적 장애인 서비스로서 '가사간병서비스 특례 제도 도입		0			0	0		형집행법 37조(외부의료시설의진료 등)개정
	지적, 정신	③	의사소통 지원	0	0	수어통역사,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지원	0			0			0	형집행법시행규칙 제50조의1(정당한 편의제공) 신설하여 의사소통지원내용 추가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등	전장애	④	고충상담		0	교도관 등에 의한 장애인 수용자의 수형 생활 전반에 대한 정기적 고충 상담 제공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0조의1(정당한 편의제공) 신설하여, 목욕횟수, 목욕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내용을 정당한 편의로 추가

구분	장애 유형	영역 70)	정당한 편의제공 핵심사항	정당한 편의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주요 내용	현행법령 존재여부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여부			향후 조치 계획		주요 조치내용
				물리적 편의	비물리적편의		존재	비존재	시행	부분 시행	미시행	법률개정	명령개정	
	전장애	④	교도작업		0	장애인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내용, 작업환경, 통상적인 직무 수행 방식 등을 변경 혹은 조정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0조의1(정당한 편의제공) 별표4의 3 신설하여 작업 및 직업훈에 관한 내용 추가
	전장애	④	직업능력 개발훈련		0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구금시설내 맞춤훈련센터 설치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0조의1(정당한 편의제공) 별표4의 3 신설하여 작업 및 직업훈련 항목에 외부위탁허용하는 내용 추가
	전장애	④	교화교육		0	교육 자료는 시각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적장애인에게도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수어통역사와 같은 인적 지원 제공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3조의1(교육·교화프로그램) 신설하여 교육교화프로그램 제공 및 편의제공하는 내용 추가
	전장애	⑤	재활치료		0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용 자격 부여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3조(직업훈련 등) 신설하여 재활훈련 실시하는 내용 추가

구분	장애 유형	영역 70)	정당한 편의제공 핵심사항	정당한 편의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주요 내용	현행법령 존재여부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여부			향후 조치 계획		주요 조치내용
				물리적 편의	비물리적편의		존재	비존재	시행	부분 시행	미시행	법률개정	명령개정	
	전장애	⑤	실내 재활운동 시설 설치	0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날씨에 관계없이 장애인 수용자가 재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실내 재활운동시설 설치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별표4의2에 실내 운동시설 설치 추가
	전장애	⑤	외부 위탁 방식 확대		0	장애인 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확대	0			0			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0조의1(정당한 편의제공) 별표4의3 신설하여 작업 및 직업훈련 항목에 외부위탁허용하는 내용 추가

70) ①원내 의료서비스 ②원외 의료서비스 ③의료서비스 의사소통 지원 ④전체 수용자 대상 보편 프로그램 ⑤장애인 수용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⑥전담인력 확충



4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지침 개정안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지침 개선안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앞서 제시한 편의제공 방안을 이 개정안에 모두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 후속 연구에서 좀 더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71].

1) 형집행법

(1) 형집행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중계서비스) ①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수용자를 장애인 아닌 수용자와 동등하게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72]
〈신 설〉	②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의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 5. (생 략)	제17조(고지사항) ①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점자, 수어통역, 쉬운 언어 그 밖에 장애인 등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그 밖의 ----------.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① (생략)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①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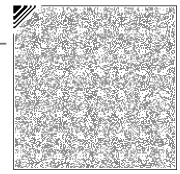
71) 본 연구에서 법령 및 규칙/지침 개정안에서 제시하지 못한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금시설 내 일상생활 – 청각장애인 수용자 2인 이상 수용 지원
: 원내 의료서비스 –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 – 장애인수용자 주치의(의무관) 지정
: 원외 의료서비스 – 입원 시 간병지원 – 가사간병서비스 특례제도 도입
: 전담인력 확충 –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채용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특례 통해 보조기기 지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가 장애로 인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에서 정하는 외부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 건강검진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②~⑤ (생략)	③~⑥ (현행 제4항~제6항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 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처우등급, 보안 등의 사유로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로 이송한다.
〈신 설〉	②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기준, 이송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제44조(전화통화) ① ----------전화통화(통신설비를 이용한 영상·문자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 녹음 및 녹화를----------.[73]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① (생 략)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① (생 략)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수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노인수용자·장애인수용자·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처우 및 정당한 편의에 ----------.[74]

7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전국 구금시설에만 서비스되는 중계서비스가 필요함

73) 녹화를 추가할 경우 시행규칙 제28조도 개정하여야하나, 이 부분은 생략함

74) 제54조 관련하여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고명수, 2016)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53조의 3(장애인수용자의 처우)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2안'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① ---------- 및 중증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 대체복무요원 및 다른 수용자 등----------.
제59조(접견의 예외) ① (생 략)	제59조(접견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용자의 장애, 시설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수용자가 전화통화, 통신설비를 이용한 영상·문자중계 서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제116조의2(대체복무요원) ① 대체복무요원은 처우등급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와 접촉할 수 있다.
〈신 설〉	② 교도관은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이 수용자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① (생 략)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제2안(제53조의3 신설, 제54조 관련)	
〈신 설〉	제53조의3(장애인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교육·교화·작업·직업훈련·의료·접견, 그 밖의 처우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수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가 장애인 아닌 수용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정당한 편의는 대통령령(혹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① (생 략)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① (생 략)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노인수용자·장애인수용자·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노인수용자·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5) 시행령 제81조 제2항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49조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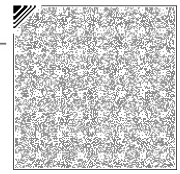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장애인수용자"란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장애인수용자"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어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75]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3)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본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전담교정시설) ① (생 략)	제50조(전담교정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은 별표4의2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편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장애인수용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여 각 시설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및 보안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제50조의1(정당한 편의제공) ①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인 아닌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하기 위하여 장애인수용자의 의견을 들어 별표4의3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수용자가 별표4의3에서 정하지 않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 시행규칙 제49조(정의)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등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장애인수용자는 장애로 인한 수용생활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표4의3에서 정하지 않은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수용자의 요구조치가 장애인수용자의 수용생활의 곤란함을 해소하는 조치인 경우에 소장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소장은 교도관이 장애인수용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문자·영상중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등 의사소통지원 도구의 휴대를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른 수용자를 보조인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른 수용자에 대해서는 처우관리상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2(직무교육 등)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수용동 또는 장애인수용자를 담당하는 교도관, 의무관, 봉사원, 간병인 등에 대해 장애이해, 장애인 대응 요령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수용거실) ②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수용거실 등) ② ----------한다.
〈신 설〉	③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진료시설, 접견시설은 장애인 전담교정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2조(전문의료진 등)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전문의료진 등) ① ----------의료진을 ----------.
〈신 설〉	②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로 수용된 장애인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용 체중계, 장애인촬영용 X-ray,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유방촬영기, 시각장애인용 시력측정기, 청력검사기, 높낮이가 조절되는 치과의자 등 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3조(직업훈련)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3조(직업훈련 등) ① 장애인수형자를 수용하는 소장----------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재활훈련을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기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출장시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소장은 장애인수형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1(교육·교화프로그램)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게 적합한 교육·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인수형자가 교육·교화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 의사소통 등에 관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9조(분류조사 사항) ①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제69조(분류조사 사항) ① (현행과 같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장애의 종류 및 정도(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7.~19. (생 략)	7.~19. (현행과 같음)

나. [별표4의2]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안

1.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한 출입구(문)	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수용거실의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장애인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샤워실	(가) 장애인 수용거실의 화장실 출입구(문)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장애인 수용거실의 화장실 및 욕실, 샤워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수용거실의 화장실 내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실	목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문자안내판	청각장애인 수용거실은 청각장애인이 소리로 방송되는 알림, 안내방송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문자로 표시하여주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동시설	운동시설은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활동, 재활 등이 필요한 수형자가 계절,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 및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재활·운동시설 및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 대상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복도	출입구(문)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샤워실	목욕실	문자안내판	운동시설	비고
						출입구(문)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장애인수용동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수용동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접견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접견실 및 접견실이 있는 건물
수용거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진료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진료실 및 진료실이 있는 건물

3. 각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생 략)

다. [별표4의3]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종류 및 내용 개정안(제50조 관련)

가) 제1안(편의제공 종류별 구분)

1. 수용거실

가. 장애인수용자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세면대·변기, 미끄럼 방지 장치, 벽면손잡이, 레버식 수도꼭지 등이 설치된 화장실

나. 점자표시(시각장애인수용자가 수용된 수용거실에 한함)

다. 문자안내판(청각장애인수용자가 수용된 수용거실에 한함)

2. 생활물품 등

가. 장애인수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규격, 가격 등 고지

나. 장애인수용자가 작성할 수 있는 자비물품구매신청서의 제공 또는 작성 대필(교도관이 하여야 함)

다. 다른 수용자에 의한 부당한 소비, 도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점자정보단말기·자막수신기·자막생성보드·화면해설기·독서확대경·보청기 등 장애인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제공

3. 위생과 의료

가. 운동

1) 편의시설 설치,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제공 등을 통한 운동시설에의 접근 및 이용 보장

2) 장애인수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필요한 수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운동시간 연장

나. 목욕

1) 편의시설 설치,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제공 등을 통한 목욕시설에의 접근 및 이용 보장

2)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문턱 및 세면대·미끄럼 방지 장치·벽면손잡이·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도꼭지 등 장애인수용자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한 목욕시설

3) 중증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특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 충분한 목욕횟수·시간 부여

다. 의료 및 재활

1) 편의시설 설치,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제공 등을 통한 의료시설 및 재활시설에의 접근 및 이용 보장

2) 진료시 수어통역, 통신설비를 이용한 문자중계서비스·영상중계서비스, 대체보완의사소통도구 등 청각, 언어 및 발달장애인수용자의 의사소통 지원

3)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재활치료프로그램(출장 또는 초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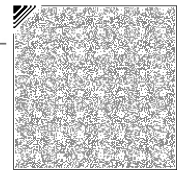
4) 중증장애인, 중환자에 대해 간병인 등 보조인력의 배치

4.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가. 접견

1) 수어 사용의 보장

2) 통신설비를 이용한 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활용



나. 편지
1) 대독
2) 대필
다. 전화통화
1) 통신설비를 이용한 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이용

5. 종교와 문화

가. 종교행사 참석
1) 편의시설 설치,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제공 등을 통한 종교행사 실시 장소로의 접근 및 이용 보장
2)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 보청기기 등 장애인이 행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 제공
나. 도서비치 및 이용
1) 장애인이 접근·이용 가능한 비치도서목록 및 비치도서열람신청서
2) 장애인수용자가 작성할 수 있는 자비물품구매신청서의 제공 또는 작성 대필
3) 점자자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표시된 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자료 비치
4)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독서확대경, 이어폰 등 제공
다.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이 삽입된 영상물 편성 및 방송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6. 교육·교화프로그램

가. 장애인수형자에게 적합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제공
나. 편의시설 설치,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제공 등을 통한 교육, 교화, 상담 및 심리치료 기타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로의 이동 및 접근 보장
다. 장애인수형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라. 장애로 인한 교육, 교화프로그램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마.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 교화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바. 외부 전문 기관 위탁(초빙 또는 출장)

7. 작업 및 직업훈련

가. 장애인수형자에게 적합한 작업 및 직업훈련 제공
나. 편의시설 설치,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제공 등을 통한 작업 및 직업훈련 장소로의 이동 및 접근 보장
다.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라. 재활, 치료 등을 위한 작업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마. 직업 훈련 제공 또는 직업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바.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사.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아.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자.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차.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카. 외부 전문 기관 위탁(초빙 또는 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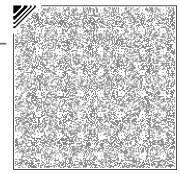
8. 인권침해·권리구제 등
가. 소장 및 교도관 면담시 수어통역, 중계서비스 등 의사소통 지원
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월1회 이상 정기적인 면담
다. 청원서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작성시 구금시설 소속이 아닌 보조인력 지원
라. 징벌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점자, 수어통역, 쉬운 언어 그 밖에 장애인수용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편의 제공

9. 기타
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식사, 용변시 등에 보조인력 지원

나) 제2안(장애유형별 구분)

1. 공통사항
가. 장애인수용자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세면대·변기, 미끄럼 방지 장치, 벽면손잡이, 레버식 수도꼭지 등이 설치된 화장실
나. 장애인수형자에게 적합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 제공(외부 전문기관 위탁도 포함)
다. 교육·교화프로그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시 편의 제공
라. 시각·청각·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교화, 작업·직업훈련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
마. 식사, 이동, 운동, 목욕 등 신체활동 보조, 교육·교화프로그램·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보조인력
사.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월1회 이상 정기적인 면담
아. 청원서 작성시 구금시설 소속이 아닌 보조인력 지원
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재활치료프로그램

2. 신체적 장애
가. 지체·뇌병변장애인
1)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문턱 및 세면대·미끄럼 방지 장치·벽면손잡이·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도꼭지,



레버식 수도꼭지 등 장애인수용자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한 목욕시설
2) 구금시설 내에서의 접견, 종교행사, 교육·교화, 상담 및 심리치료 기타 교화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 소장·교도관 면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출입구 및 경사로 설치,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제공
3) 장애로 인한 교육, 교화프로그램 참여의 불이익 해소 및 작업·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높낮이 조절용 책상 및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재활치료프로그램
5) 식사, 이동, 운동, 목욕 등 신체활동 보조, 교육·교화프로그램·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보조인력
6)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나. 시각장애인
1) 점자표시가 부착된 수용거실 및 화장실
2) 구금시설 내에서의 접견, 종교행사, 교육·교화, 상담 및 심리치료 기타 교화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 소장·교도관 면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출입구 및 경사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구비
3) 자비구매물품목록, 비치도서목록 및 비치도서열람신청서 등 비장애인 수형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코드 등)가 삽입된 자료, 큰 문자 자료로 제공
4) 자비물품구매신청서의 제공 또는 작성 대필(교도관이 하여야 함)
4)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점자정보단말기·화면해설기·독서확대경
5) 비치도서로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가 삽입된 자료, 큰 문자 자료 구비
6) 다른 수용자에 의한 부당한 소비, 도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7) 식사, 이동, 운동, 목욕 등 신체활동 보조, 교육·교화프로그램·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보조인력
8)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다.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
1) 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수용거실
2) 자막수신기·자막생성보드·보청기기, 이어폰 제공
3) 수용·작업·교화·의료, 상담 그 밖의 처우에 있어 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음성통역, 통신설비를 이용한 문자중계서비스·영상중계서비스 이용 등 의사소통 지원
4) 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이 삽입된 영상물 방송
5) 징벌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점자, 수어통역, 쉬운 언어 그 밖에 장애인수용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

라. 내부기관장애인(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뇌전증 장애)
1)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필요한 수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운동시간 연장
2)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특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 충분한 목욕횟수·시간 추가 부여
3) 식사, 이동, 운동, 목욕 등 신체활동 보조, 교육·교화프로그램·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보조인력
4) 재활, 치료 등을 위한 작업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5) 재활치료프로그램의 제공(외부 전문기관 위탁 포함)

3. 정신적 장애

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1) 자비구매물품목록, 비치도서목록 및 비치도서열람신청서 등 비장애인 수형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장애인수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2) 다른 수용자에 의한 부당한 소비, 도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3)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에 있어 대체보완의사소통도구 등 의사소통지원
4) 식사, 이동, 운동, 목욕 등 신체활동 보조, 교육·교화프로그램·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보조인력
5)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재활치료프로그램
6) 소장·교도관 면담시 통역 지원

나. 정신장애인

1) 자비구매물품목록, 비치도서목록 및 비치도서열람신청서 등 비장애인수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장애인수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2) 다른 수용자에 의한 부당한 소비, 도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3) 재활치료프로그램의 제공(외부 전문기관 위탁 포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한다.
②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 사법기관이 인신구금·구속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른다.

3)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제3항 나목의 교정시설에 소변기, 욕실, 샤워실·탈의실, 객실·침실을 의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편의시설 /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4) 기타 규칙 및 지침 개정안

(1)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개정안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은 대체복무요원은 “보건위생: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제53조), 야간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를 살펴보면, 야간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휴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같이 대체복무요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중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 복무관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외부출장 직업훈련) ①, ② (생 략)	제11조(외부출장 직업훈련) ①, ② (생 략)
〈신 설〉	③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수형자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출장시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청각장애인 등의 접견) ① (생 략)	제111조(청각장애인 등의 접견) ① (생 략)
② 제1항의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접견 시에는 수화해독을 위해 가능한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도한다	② ----------, 교도관은 접견시 수어해독을 위해 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및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및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관련 국내·외 법·제도와 해외사례, 그리고 선행연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와 기준, 제공방식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영역과 의료서비스 영역 등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편의의 내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 구금시설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의료인력·편의시설 및 장비현황,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현황 등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과 상담, 재활 치료 및 교화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장애인수용자와 의료진, 교도관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및 기타 지원·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과 의료서비스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애인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이 실현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칙/지침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의 실행과 추후 연구 등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1월 법무부에서는 「제 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는 장애인수용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과제는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집중의료 처우 교정시설 지정 추진', '수용자 정신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및 외부기관 협력 강화' 등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종 정책 방안과 관련 있는 세부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전면 개정과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정,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등 교정관련 법령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제정은 구금시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장애인수용자 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기본계획은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기본계획을 향후 5년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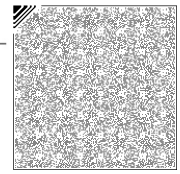
할 것이다. 이러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과 이에 대한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기본계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영역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을 실현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칙과 지침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서 제시한 모든 방안의 실현이 장애인수용자의 인권증진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방안을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방안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계획에는 법령 및 규칙/지침 개정방안과 정당한 편의제공 실행방안, 그리고 인력 충원 및 조직개편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국의 구금시설에는 1,500명이 넘는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도관 등이 이러한 장애인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없이 개별 교도관의 경험에 의해서 장애인수용자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역시 구금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기준을 세워 시행함으로써 시설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에서는 최근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일선 구금시설에 보급하였다. 이는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현재 구금시설에 많은 정신질환 수용자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사례를 거울삼아 '장애인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별 구금시설에 보급한다면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증진에 매우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재 교도관들은 기본적인 장애인식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애이해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내부 장애인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깊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수용자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과 별도로 교도관들에게 구체적인 장애이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전담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구금시설에 장애인수



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모든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구금시설에서 이러한 편의시설과 추가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특수기능별 교정시설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 중 하나로 총 9개의 장애인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전담 교정시설의 수를 늘리고 이러한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먼저 편의시설과 인력충원,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장애인 대상 구금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 등과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혈액투석 등 총 4가지 유형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을 지체·뇌병변 등 외부신체기능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 신장·심장 등 내부장애인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세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별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을 교정청 및 경비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수용자들이 자신의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책제언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을 실현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과 규칙/지침의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에는 법령과 규칙/지침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법령 및 규칙/지침 개정안에서 제시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금시설 내 일상생활 – 청각장애인 수용자 2인 이상 수용 지원
- 원내 의료서비스 –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 – 장애인 수용자 주치의(의무관) 지정
- 원외 의료서비스 – 입원시 간병지원 – 가사간병서비스 특례제도 도입
- 전담인력 확충 –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채용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특례 통해 보조기기 지원

이 중에는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같은 거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개별 기관장의 의지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정안으로 제시한 「형집행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이 아닌 다른 법령을 개정하거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서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실, 2006, 정신장애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방안, 교정복지연구, 6, 89-107. 한국교정복지학회.

고명수, 2016, 교정시설 내 신체장애인수용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수용환경을 중심으로, 인권 이론과 실천, 제19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구인순·최영완·황주리, 2010,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권고 보도자료. 2018. 9.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 2008, '장애인수용자 과밀수용 등 직권조사 익명결정문'국가인권위원회 2008. 12. 8.자 08직인12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권수진·한민경, 2018, 교정시설 의료처우 실태분석,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I):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19-211.

김인순 외, 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배융호, 2007, '정당한 편의제공, 어떻게 봐야하나', 에이블뉴스, 인터넷 검색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9&NewsCode=15015.(검색일 2020. 10. 30.)

법무부 교정본부, 2019, 2019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0.11.26.

심재진, 2013,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복지지원법제의 관계, UN 장애인권리협약,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오욱찬·김성희·서정희·심재진·오다은, 2018,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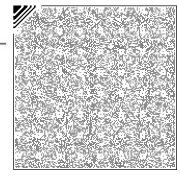
오홍균, 2017, 수용처우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교정시설 개선방안, 인재개발정보센터.

유동철·이미라·박가은,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 미국 EEOC 사례를 중심으로, 법무부.

연성진·노용준·김안식·정영진, 2008, 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연주, 2008, 국내 교도소의 장애인 교정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영·주영수·임승준·이상윤·이상희·이서치경, 2010,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장동원, 1991, 정신질환자 범죄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전윤구, 2016, 지적장애의 이해와 사회보장 : 지적장애아동의 양육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47, 2016(2), 667-691.

정대기, 2007,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진수·이정민·이재영, 2009, 형사사법 및 행형절차상 장애인 차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원희, 박성민, 서동후, 이대아, 박창수, 이강민, 20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기준, 장애인법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조임영, 2010,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법제의 운용사례에 관한 국제비교 :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35, 293-337.

주영수·김명희·임준·김승섭·정민영 외 8인, 2016,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청음회관 재활사업과, 1997, 청각장애인 범죄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최승철, 2010, 정당한 편의 개념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제1권 제3호.

HM Inspectorate of Prison, 2009, Thematic report by HM Inspectorate of Prisons, Disabled prisoners: A short thematic review on the care and support of prisoners with a disability.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2010, Reasonable adjustments for disabled prisoners: meeting our dutie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Prison Reform Trust, 2009, Information book for prisoners with a disability.

Ruth Colker, 216, Disability Law, 김재원·박종현 역.

the U. 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02, Enforcement Guidance on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Undue Hardship under the ADA.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2009, Prisoners with special needs, Criminal Justice Handbook Series.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4, Prisons and Health.

부록

1.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조사
2.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3.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임무 수행 〈번역본〉
4.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정보 책자 〈번역본〉

〈부록 1〉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관 하에 실시하고 있는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가 일상생활영역과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추후 구금시설 내에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가 직접 응답하는 '설문지'와 구금시설 내 담당자께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에 대해 작성하는 '기록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께 의료 인력·편의시설 및 장비현황 등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에 대한 '기록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실대로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된 '기록지'의 분량이 부족하면, 별도의 용지에 추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서동명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고로 출입문,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추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난 2018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할 계획으로, 본 조사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조사

기관명		설문작성인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Ⅰ. 의료 인력·편의시설 및 장비 현황

1. 의료 인력 명단(비상근 인력은 제외)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방사선 기사	임상 병리사	영양사	재활 치료사	기타	계

※ 검진 인력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제출된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상의 검진 인력으로 갈음함.

2. 진료실(의무실) 장애인 수용자 편의시설 기준(해당 항목에 ○, × 기재)

진료실이 있는 건물의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여부 ( ) 높이 차이 제거 여부 ( )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 ( )

〈참고〉 판단기준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턱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진료실이 위치한 층수	(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여부	설치 ( ) 미설치 ( ) ※ 진료실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만 기재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대변기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개)
	소변기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개)
	세면대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개)

3.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의료 장비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의료 장비 보유 현황 예시

일련 번호	장 비 명	주요 성능
1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200kg까지 체중 측정이 되는 다기능휠체어 자동체중계
2	장애인 촬영용 X-ray	촬영대가 55cm까지 하강돼 휠체어 탑승 환자 이동에 편리한 X-ray 촬영장비
3	유방 촬영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휠체어 이용 여성환자도 별도의 이동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유방촬영기
4	시력측정기	시각장애인도 시력 측정이 가능한 시력측정기
5	청력검사기	125Hz부터 8000Hz까지 세부 검사는 물론 언어청각검사도 가능한 청력검사기
6	치과의자	의자 높낮이가 조절되는 치과의자
7	....	...

Ⅱ.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인력 현황

항목	보유 여부		장애인 수용자가 요청한적 있는 경우, 제공 여부	
	보유	미보유	제공	미제공
점자 안내책자	①	②	①	②
읽기 쉬운 안내책자(발달장애인용)	①	②	①	②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①	②	①	②
점자정보 단말기	①	②	①	②
자막수신기	①	②	①	②
화면해설기	①	②	①	②
독서확대경	①	②	①	②
광센서	①	②	①	②
보청기기	①	②	①	②
자막 방송시설	①	②	①	②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①	②	①	②
신체 교정용 신발	①	②	①	②
바퀴달린 보행기	①	②	①	②
휠체어	①	②	①	②
목발	①	②	①	②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	①	②	①	②
장애인 수형자 별도 거실	①	②	①	②
수화통역사	①	②	①	②
일상생활 도우미	①	②	①	②
의사소통 조력인(발달장애인대상)	①	②	①	②
기타( )	①	②	①	②

Ⅲ.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상담, 재활치료 및 교화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장애유형(인원)	기간(횟수)	외부위탁여부

※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예시(2018~2019년 기실시 했던 프로그램 전체 현황)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장애유형(인원)	기간(횟수)	외부위탁여부
심리상담	심리상담	전체장애(10명)	년중(주1회)	비위탁
재활치료	미술치료	지체·뇌병변장애(5명)	년중(격주1회)	외부위탁(내원)
교도작업		전체장애(10명)	16주(주1회)	위부위탁(내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발달장애(5명)	16주(주2회)	외부위탁(통학)
문화예술	비누공예	청각장애(5명)	16주(주2회)	외부위탁(통학)
…	…	…	…	…

〈부록 2〉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관 하에 실시하고 있는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가 일상생활영역과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추후 구금시설 내에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신상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결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분포표 혹은 통계값'과 같은 형태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실대로 꼼꼼하게'작성해 주시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서동명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개인정보(**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만(　　)세　　2. 성별: ①남자(　　) ②여자(　　)

3. **주된** 장애유형(아래의 15가지 유형 중 선택): (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언어장애 ⑦ 정신장애 ⑧ 신장장애
⑨ 심장장애 ⑩ 호흡기장애 ⑪ 간장애 ⑫ 장루·요루장애 ⑬ 뇌전증장애 ⑭ 지적장애 ⑮ 안면장애

4. 중복장애 유무: ①있음(위의 15가지 유형 중 선택:　　) ②없음(　　)

5. 장애정도: ①중증장애/기존 1~3급(　　) ②경증장애/기존 4~6급(　　)

6. 장애발생: ①선천성 장애 (　　) ②후천성 장애 (　　)

7. 현재 거실형태: ①혼거(본인포함:　　명) ☞7-1번으로 ②독거(　　) ☞ 8번으로

7-1. 혼거인 경우, 거실 만족도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8. 현재의 구금시설 입소시점: (　　)년 (　　)월　　9. 전과: ①초범 (　　) ②재범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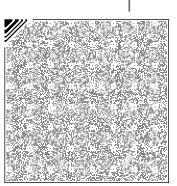
Ⅰ. 구금시설 입소 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1. 귀하는 **현재의 구금시설에 입소**할 때 장애가 있음을 교도소/구치소에 전달하였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는 교도소/구치소 입소 후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나 물품 등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① 예(☞2-1번으로) ② 아니오(☞3번으로)
2-1. 귀하의 장애와 관련된 요구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나요?
① 0% ② 25% ③ 50% ④75% ⑤100%
3. 교도소/구치소 입소 시, 귀하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형태(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책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통역,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쉬운 용어 등)로 수용생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해당사항 없음(비장애인용으로 이해가능)
4. 교도소/구치소 입소 시, 귀하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를 소유하는 것을 안전상의 이유로 허락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4-1번으로) ② 아니오(☞Ⅱ.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로) ③ 해당사항 없음(보장구 미사용) (☞Ⅱ.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로)
4-1. 허락받지 못한 보장구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Ⅱ.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1. 귀하는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이동하는 데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있습니까?
① 예 (☞1-1번으로) ② 아니오(☞2번으로)
1-1.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이동하는 데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턱이 있는 데 경사로가 없어서 ②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③ 경사로는 있는 데 난간이 없어서 ④ 이동하는 통로가 좁아서 ⑤ 기타(구체적:)
2. 귀하가 생활하는 건물에는 이동 시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3. 귀하가 생활하는 건물의 복도는 이동하기에 편하신가요?
① 예(☞4번으로) ② 아니오(☞3-1번으로)
3-1. 복도에서 이동하기가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복도가 좁아서 ② 복도에 점자블록(점자표시)이 없어서 ③ 복도에 벽면손잡이가 없어서 ④ 기타(구체적:)
4. 귀하가 생활하는 수용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이용하기가 편리하십니까?
① 예(☞5번으로) ② 아니오(☞4-1번으로)
4-1. 수용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모두 선택)**
① 장애인용 대변기가 없어서 ② 혼자 화장실로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③ 벽면 손잡이가 없어서 ④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이 없어 ⑤ 기타(구체적:)
5. 귀하는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운동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④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6. 귀하는 평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운동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7번으로) ② 아니오(☞6-1번으로)
6-1. 충분하지 않다면, 교도소/구치소 측에 운동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6-2번으로) ② 아니오(☞7번으로)
6-2. 운동시간 연장을 요청했을 때,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운동시간을 연장해주었습니까?
① 전혀 연장해주지 않았음 ② 조금만 연장해 주었음 ③ 내가 원하는 만큼 연장해주었음
7. 귀하는 1주일에 평균적으로 몇 회 목욕을 하실 수 있습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8. 귀하는 평상 시 목욕 횟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예(☞9번으로) ② 아니오(☞8-1번으로)
8-1. 만족하지 않는다면, 교도소/구치소 측에 목욕횟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8-2번으로) ② 아니오(☞9번으로)
8-2. 목욕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목욕횟수를 늘려주었습니까?
① 전혀 늘려주지 않았음 ② 조금만 늘려주었음 ③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려주었음
9. 귀하는 평상 시 목욕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① 예(☞9-1번으로) ② 아니오(☞10번으로)
9-1. 목욕 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음 ② 교도관 ③ 자원봉사자 ④ 다른 수용자 ⑤ 기타(구체적:)



10. 귀하는 목욕 시 불편함이 있습니까?

① 예(☞10-1번으로)　② 아니오(☞11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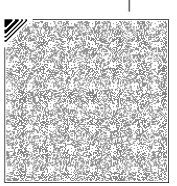
10-1. 목욕 시 불편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벽면 손잡이가 없어서　② 냉·온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된 수도꼭지가 없어서　③ 이동경로에 점자블록(점자표시)이 없어서
④ 온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⑤ 욕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이 없어서　⑥ 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도꼭지가 없어서
⑦ 기타(구체적:　)

11.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편의시설 또는 편의제공 인력 등이 필요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교도소/구치소 측에 **요청한 경험 여부, 요청 시 제공받은 여부, 향후 필요정도 및 주로 사용 용도**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교도소/구치소 측에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 교도소/구치소로부터 **제공받은 여부**		현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필요한 정도**				**주로 사용**하는 용도 또는 일**(1개만 선택)**											
		요청한적 있음	요청한적 없음	제공 받았음	제공 받지 못했음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식사	목욕	운동	작업	직업 훈련	교육	교화 프로 그램	접견 및 면회	종교 문화 생활	금품 관리	편지 수수	전화 통화
시각장애	점자 안내책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점자정보 단말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화면해설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독서확대경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광센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청각장애	보청기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자막 방송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자막수신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수어통역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신체장애	신체 교정용 신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바퀴달린 보행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휠체어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목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일상생활 도우미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저염 식단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기타( )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Ⅲ. 의료서비스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1. 다음은 귀하의 입소 후 건강상태 및 교도소/구치소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입소 전보다 입소 후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입소 후 식사를 더욱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입소 후 건강 상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결핵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수용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응급상황 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교도소/구치소 내 의료진은 내 장애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의료진의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지난 6개월 동안 몸이 아파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2-1번으로)　　② 아니오(☞3번으로)

2-1. 처방받은 경험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의무관은 내 장애를 고려하여 증상 및 복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② 약을 처방 받는 절차가 간편했다	①	②	③	④
③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내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았다(수어통역사, 이동지원 도우미, 이동용 보장구 등)	①	②	③	④

3. 지난 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의사(공중보건의 및 의무과장 포함)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3-1번으로)　　② 아니오(☞4번으로)

3-1.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았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력문제 ② 시력문제 ③ 피부문제 ④ 요통 ⑤ 근육통 ⑥ 두통 ⑦ 욕창 ⑧ 복통
⑨ 신부전증 ⑩ 우울/불안장애 ⑪ 심혈관 질환 ⑫ 불면증 ⑬ 전신피로 ⑭ 호흡곤란 ⑮ 사고 ⑯ 기타( )

3-2. 진료를 받은 경험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의사는 내 장애를 고려하여 내 증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② 진료를 받는 절차가 간편했다	①	②	③	④
③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내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았다(수어통역사, 이동지원 도우미, 이동용 보장구 등)	①	②	③	④

4. 지난 6개월 동안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4-1번으로) ② 아니오(☞5번으로)

4-1.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았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력문제 ② 시력문제 ③ 피부문제 ④ 요통 ⑤ 근육통 ⑥ 두통 ⑦ 욕창 ⑧ 복통
⑨ 신부전증 ⑩ 우울/불안장애 ⑪ 심혈관 질환 ⑫ 불면증 ⑬ 전신피로 ⑭ 호흡곤란 ⑮ 사고 ⑯ 기타( )

4-2.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희망한 후, 실제 진료를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① 3일 미만 ② 3일 이상 1주일 미만 ③ 1주일 이상 2주일 미만 ④ 2주일 이상 1달 미만 ⑤ 1달 이상

4-3.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비용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① 전액 관비 부담(개인 부담 없음) ② 일부 또는 전액 자비부담(평균 자부담액: 원)

4-4. 외부 진료를 받은 경험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외부의료시설 의사는 내 장애를 고려하여 내 증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② 외부 진료를 받는 절차가 간편했다	①	②	③	④
③ 외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내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았다 (수어통역사, 이동지원 도우미, 이동용 보장구 등)	①	②	③	④

5. 지난 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 내 의료거실에 머무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5-1번으로) ② 아니오(6번으로)

5-1. 의료거실에 머무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증상 때문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력문제 ② 시력문제 ③ 피부문제 ④ 요통 ⑤ 근육통 ⑥ 두통 ⑦ 욕창 ⑧ 복통
⑨ 신부전증 ⑩ 우울/불안장애 ⑪ 심혈관 질환 ⑫ 불면증 ⑬ 전신피로 ⑭ 호흡곤란 ⑮ 사고 ⑯ 기타( )

5-2. 의료거실 수용을 희망한 후, 실제 이동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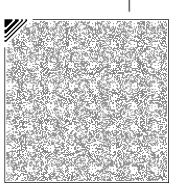
① 3일 미만 ② 3일 이상 1주일 미만 ③ 1주일 이상 2주일 미만 ④ 2주일 이상 1달 미만 ⑤ 1달 이상

5-3. 의료거실에서 머무른 경험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의료거실 의사는 내 장애를 고려하여 내 증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② 의료거실로 이동하는 절차가 간편했다	①	②	③	④
③ 의료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았다 (수어통역사, 이동지원 도우미, 이동용 보장구 등)	①	②	③	④

6.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관련 편의제공 등이 필요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교도소/구치소 측에 **요청한 경험 여부, 요청 시 제공받은 여부, 향후 필요정도 및 주로 사용 용도**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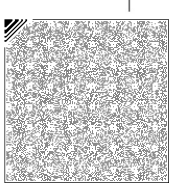
항목		교도소/구치소 측에 요청한 경험이 있는 지 여부		**요청한적 있는 경우,** 교도소/구치소로부터 제공받은 여부		현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필요한 정도				**주로 사용**하는 용도 또는 일			
		요청한 적 있음	요청한 적 없음	제공 받았음	제공 받지 못했음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함	매우 필요함	투약 시	내부 진료 시	외부 진료 시	의료거실 수용시
시 각 장애	점자 안내책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점자정보 단말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화면 해설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독서확대경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청 각 장애	보청기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자막수신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수어통역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신 체 장애	휠체어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목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이동, 돌봄 등 돌봄 지원인력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주기적인 건강검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치과상담 및 진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정신과 상담 및 진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물리치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기타( )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Ⅳ.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방법 인식실태

1.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욕설, 놀림,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키스나 애무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동료 장애인 수용자가 그러한 성적 접촉을 당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욕설, 놀림,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비장애인 수용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키스나 애무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동료 장애인 수용자가 그러한 성적 접촉을 당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보호장비(양손수갑,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머리보호장비, 보호복 등)를 착용한 적이 있습니까?(단, **일반적으로 이송, 출정, 호송, 외부 진료 시에 착용한 경우는 제외함**)
① 예(☞7-1번으로) ② 아니오(☞8번으로)
7-1. 귀하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기 전에 교도관에게 착용사유를 들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2. 귀하는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는 소장면담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는 청원(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에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부록 3〉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임무 수행[76]

서론

합리적인 조정이란 무엇인가?

합리적인 조정은 장애나 의학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는 조정이다. 교도소 내의 합리적인 조정은 수용자가 기관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합리적'인지 고려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합리성은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실천 강령에는 무엇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 서비스 제공업체의 특성 및 규모와 자원
-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장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5가

또한 무엇이 합리적인가 고려할 때 다음 요소들 중 일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다:

76)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2010, Reasonable adjustments for disabled prisoners: meeting our dutie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난관 극복에 있어서 어떤 조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 이러한 조정을 따르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얼마나 실행 가능할 것인가
-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장을 줄 것인가
- 재정 및 기타 조정 비용
- 서비스 제공업체의 재정 및 기타 자원의 범위
- 조정에 이미 사용된 자원의 양
- 재정 또는 기타 지원의 이용 가능성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원은 교도소를 슈퍼마켓 체인과 같은 대규모 조직과 유사한 단일 조직으로 간주한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무엇이 합리적인가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비교해보라. 슈퍼마켓은 체인의 일부로서 소규모 독립 매점보다 높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규모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게 될 이익에 비례하지 않고 유의적이지 않은 한, 조정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해당 설립을 위한 예산이 아닌 전체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살펴볼 것이다.

승강기 제공

전체 비용의 일부로서 새로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수용자 한 명을 돕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기존 낡은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대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건축물의 요건을 명시하는 시점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DDA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일 독립체의 이점은 모든 교도소가 DDA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교도소 어딘가에서 장애인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히' 라는 것은 필요한 개입, 업무 및 교육, 기타 교도소 내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범주에서 자신의 장애에 적합한 편의를 의미한다.

배치 및 접근성

수용자를 어디에 수감해야 할 것인가?

해당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한 장애가 있는 수용자를 의료 시설에 수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수용자를 의료 시설에 수감하는 것은 그들이 시설의 체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실제로 병이 난 수용자가 필요한 병상을 제한한다.

장애가 있는 수용자들은 보통의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PSI 31/2008 Allocation of Prisoners with Disabilities(장애인 수감자 할당)을 읽어보라.

모든 수용자의 접근성 보장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물리적 접근에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라. 학습장애나 감각장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강좌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식을 작성해 체육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학습장애나 시각장애가 있다면 양식을 작성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재 경보가 모두 소리로만 이루어진다면, 청각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들 중 일부는 문제 제기로 인해 명백해질 수 있지만, 많은 수용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수용자들이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누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합리적 조정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직과 사람들이 있다.

수용자와의 면담 각 개인이 자신의 장애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어라.

전문 기관 특정 수용자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조정의 경우,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은 특정 장애를 다루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합리적인 조정은 최대한 많은 수의 수용자들이 감옥 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전문 기관으로부터 감옥, 시설, 정보 및 활동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자선 단체 특정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자선 단체 및 기타 제3 부문 조직이 있으며, 종종 보조 기구와 적응 기술 또는 공급 업체를 제공해줄 수 있다.

교도소 장애 연락 담당관(DLO)과 대화; 다른 시설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정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 연락 담당관과 지역사회는 효과가 입증된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이 지침에서 의견과 예시를 제공한다.

의료 시설 일부 보조기구의 적합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PCT를 통해 보청기, 보행 보조 기구 등의 것을 공급할 수도 있다. 적응을 위한 물리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에 문의해야 할 수도 있다.

작업 치료사 구속에 들어가는 개인에게 보조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ADL(일상 생활 활동 평가)을 위해 작업 치료사와 같은 지역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들이 교도소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교도소 내에서 장애를 가지게 된 수용자들 또한 개인적인 도움과 적응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한다.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의' 보조 도구와 적응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의 유형과 합리적인 조정의 예시

• 감각 장애

난청과 청각 장애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청각 보조 기구 제공 – 새로 진단 받은 경우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의해 제공된다. *의료팀에게 진단을 요청하라.*
- 영국 수화어 (BSL) 번역기
- 직원의 BSL 학습
- 다른 수용자들의 BSL강좌 수강
- TV에서 문자 다중 방송 제공
- 청각 화재 경보를 보완하기 위한 깜빡이는 불빛 등과 같은 시각 경보
- 진동하는 알람 시계
- 문자 전화
- 접수, 방문, 인터뷰 및 심판실에서의 청각 루프 (모바일 청각 루프 사용 가능)

유용한 참조: 38페이지의 **RNID 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Deaf(청각 장애인을 위한 왕립연구소)** 를 참조하라.

영국 수화어(BSL)

영국 수화(BSL)는 그 자체로 언어로 분류된다. 다른 언어과 동일하게 BSL에는 사투리가 있으며, 북쪽 지역의 BSL을 사용하는 사람은 남쪽에서 온 BSL을 사용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BSL 통역사는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자주 사용된다. 교도소에 통역사에 관한 세부 사항이 없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법원은 승인된 통역사의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RNID는 자격을 갖춘 해당 지역의 통역사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SL 과정은 일부 지역 대학과 RNID와 같은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화 알파벳은 34페이지의 **ANNEX A: Communicating with people**

who have hearing difficulties(부록A: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에 설명되어 있다.

기타 수화

다른 나라의 수화도 있고(예: 아일랜드 수화) 학습과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발된 마카톤(Makaton)도 있다.

마카톤(www.makaton.org) 과 다른 나라의 수화 통역사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대하관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자 전화

문자 전화는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 전화기다.

말하는 대신 하고 싶은 말을 타이핑하기 때문에 청각 장애가 있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음성 전화 사용자에게 문자 전화를 통해 전화를 걸면 해당 사용자에게 직접 연결할 수 없다. 전화를 받으면 '청각 장애가 있는 발신자입니다. 문자 전화를 사용하세요.'와 같은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듣거나 침묵만 듣게 될 것이다.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야 한다.

Typetalk 는 RNID 가 운영하는 BT(British Telecom: 영국 최대의 전신 전화 회사)가 자금을 지원한 전국 중계 서비스다.

Typetalk는 문자 전화 사용자와 음성 전화 사용자를 연결해준다.

음성 전화 사용자와 통화를 하고 싶은 경우,

Typetalk 교환원에게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읽어주면 통화 상대방의 답장을 다시 입력해준다. 음성 전화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중계된다.

24 시간 자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0906 680 6666 으로 전화하라. 통화료는 1분에 25펜스가 부과되며 전화 요금에 추가된다.

제한된 시력 및 완전하거나 실질적인 실명

녹내장 및 백내장과 같은 상태가 포함된다.

시각 장애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큰 활자
- 점자
- 말하기 책
- 오디오 시계
- 문서의 오디오 버전
- 편지 대신 오디오 테이프
- 양식, 지원서 및 VO 작성 지원
- 문서 및 편지 읽기 지원
- 각 계단의 끝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란색 밴딩 및 뚜렷한 질감으로 명확한 표시
- 문틀과 벽 사이의 명확한 구분 (예: 문틀을 검은색으로 칠하기)
- PC용 Dragon Naturally Speaking과 같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다양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용한 참조: 39페이지의 **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시각 장애인을 위한 왕립연구소)** 을 참조하라.

개인의 경우, 의료진에게 관리, 저시력 보조 도구 및 가능하다면 시각 장애인/부분 시각 장애인을 등록하기 위한 조언을 위해 안과 의사에게 의뢰할 것을 요청하라.

16페이지의 **Limited vision and complete or substantial blindness(제한 시력과 전맹 혹은 실명)** 참조하라.

- **의사소통 문제**

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인내 – 수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압박하지 마시오
- 치료 진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 언어 치료 (의료 서비스를 통해)
- 공식 절차 및 인터뷰 지원
- Typetalk (위의 ‘ 문자 전화’ 참조)
- 문자 전화 (위의 ‘문자 전화’ 참조)
- 서면 또는 수화와 같은 대체 매체
- 전화 통화 또는 추가 방문을 대체하는 편지

17페이지의 **Communication problems(의사소통 문제)** 를 참조하라

- **이동성과 유연성 문제**

휠체어 사용 수용자가 영구적으로 혹은 특정 활동을 위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관절염 및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진행성 질환이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거동이 경화증과 같은 진행성 질환이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거동이 제한되는 고령자 및 다른 수용자는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개조는 부상 회복 중과 같이 휠체어를 임시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다.

새로운 건물은 항상 휠체어의 접근성, 경사로, 승강기 및 개조된 수용거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휠체어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개조된 수용거실 – 수용거실 내부로 들어갈 공간, 이동할 공간
-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침대 높이
- 샤워 의자
- 샤워 레일 및 화장실 레일
- 양변기 좌석
- 계단 대신 경사로
- 낮은 계산대와 포스터
- 낮은 전화기

- 휠체어가 테이블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테이블을 높임
- 자주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갑
- 교실 등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활동을 위한 대체 장소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체 경로
- 낮은 호출 벨 및 조명 스위치
- 특히 외부 활동 시 휠체어를 밀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계획
- 트레이 운반 지원

개별적인 경우, 직업 치료 평가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통해 NHS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하라.

보행 문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수용자는 하나 이상의 막대기 또는 프레임에 지지해 걸어야 하거나, 먼 거리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이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지상층(0층) 혹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층의 수용 시설에 배치
- 계단 대신 경사로
- 샤워 시트
- 쉽게 일어서거나 앉을 수 있도록 높은 의자
- 활동을 위한 대체 위치 (예: 1층에서 지상층(0층)으로 수업 이동)
-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대체 경로
- 트레이 운반 및 문 열기 지원
- 장거리 이동을 위한 휠체어 사용
- 인내; 수용자들이 장소 간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허용

앉기, 서기 및 눕기에 어려움

이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것, 눕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허리, 엉덩이, 및 목 문제 또는 관절염과 같은 질환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정형외과 매트리스 또는 딱딱한 침대
- 수직 의자
- 무리하게 서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 운동장에 의자 설치
- 침대 또는 앉아있는 동안 지탱할 수 있는 쿠션

유연성과 움직임의 문제

관절염과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팔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들거나 구부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낮은 호출 벨, 선반, 및 조명 스위치
- 머리 위로 손을 올릴 필요 없도록 앞이 트인 옷
- 물건을 집거나 양말과 지퍼를 올리는데 도움
- 구부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높은 작업대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최근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진단을 받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요청하라.

• 손 동작의 문제

이것은 손을 사용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모든 이동성 장애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트레이와 같은 물체를 운반할 수 없는 것, 손잡이, 문, 수도꼭지 등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또는 제한된 운동 기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식사를 위한 도움 (예: 식사 준비 및 포장 개봉 등을 위한 인원 배치 등)
- '지렛대' 형식의 문 손잡이; 교체할 때 가능한 한 DDA 호환 스타일을 사용해야 함
- '지렛대' 스타일의 수도꼭지
- 병 및 통조림 개방 보조 도구

- 잡기 쉬운 날붙이류; 기존 수저류, 펜 등을 위한 변환기
- 큰 자판이 있는 컴퓨터 장비 선택
- 기존 마우스 대신 트랙볼 마우스
- 의류에 단추나 지퍼 대신 벨크로 사용

다수의 주요 자선 단체와 회사가 적응된 기술과 생활 보조 기구를 제공한다. 최선의 거래를 위해 주변을 둘러보라. 사업부는 문 손잡이와 같은 보다 영구적인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7페이지의 **Manual dexterity problems(손 동작의 문제)** 를 참조하라.

약물 치료

의료진은 항상 합리적인 조정과 수용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고통 관리

많은 질환과 질병은 규칙적으로 또는 갑작스러운 재발의 형식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초래한다. 의료진이 진통제를 처방할 것이지만, 교도관은 특히 수용자가 약물을 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약물 접근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수용거실 내에 안전한 금고 설치
- 교도소 내 사무실에서 약물 보관
- 제한된 선에서 의약품 보유 허용
- 의약품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텐스머신과 같은 대치 비약물 통증 치료 방법 고려

다른 약물에 대한 접근

흡입기 등 일부 약물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정기적이지만 연관성이 없는 시간에 복용하거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조정은 고통 관리에서 제시된 바와 유사하지만, 경우에 따라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특정 안약의 경우처럼 보관 시 온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조정은 작은 냉장고를 교도소 내 사무실이나 수용 거실에 설치하는 것이다.

- **의학적 질환**

의료진은 항상 합리적인 조정과 수용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호흡 곤란

이는 폐암,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을 포함하는 만성폐쇄성질환(COPD), 만성 천식 등의 질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은 체력과 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짧은 거리도 걷기 어렵게 한다.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똑바로 앉아서 잘 수 있도록 베개나 쿠션 추가 제공
- 흡입기 또는 산소에 대한 접근
- 장거리 이동을 위한 휠체어
- 추운 날씨에 여분의 담요 등 제공
- 흡입기의 즉각적인 사용
- 계단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층에 배치

폐암은 꾸준히 진행되며, 몇 달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의료진과 관련 전문의는 환자의 상태가 최상의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석방을 옵션으로 고려해보라.

18페이지의 **Chronic asthma(만성 천식)**, 18페이지의 **COPD** 및 23페이지의 **Lung cancer(폐암)** 을 참조하라.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충동 조절 부족 및 부적절한 행동을 포함하여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기억력 문제, 혼란 및 행동 변화

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정이 있다.

기억력 문제

- 수용자가 언제 출석하거나 면담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기록한 달력 또는 일지
- 수용자가 언제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카드
- 구조화된 하루 일정
- 수용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 직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기적으로 알림
- 수용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수용거실 내 물품에 라벨 붙이기. 예를 들어, 사진 속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는 약을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
- 스스로를 정리할 수 없거나 분명해 보이는 것을 기억할 수 없는 개인을 대할 때 관용과 인내심
- 혼란
- 루틴 강조
- 정신 활동을 장려하는 활동
-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수용자와 관계 유지
- 수용자가 환각이나 상상 속에 빠졌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예를 들어, 죽은 친척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대립적 합의는 재발을 방지하고 고통을 줄인다.*

행동의 변화

- 정기적인 위험 진단; 치매에 걸린 수용자는 신체적으로는 비교적 덜 위험하지만 충동 조절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수용자 또는 직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 감독 강화
  다음 단계로 가석방을 고려하라. 그러한 수용자는 개인의 거주지 혹은 요양원에서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정신 건강 시설은 불필요해야 한다. 의료진과 지역 사회 서비스를 통해 단일 평가 프로세스(SAP)에 의뢰해야 한다.

당뇨병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겠지만, 교도관은 당뇨병 수용자를 관찰하고 증상

을 인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규칙적인 음식 섭취
- 개인적으로 약을 소지하거나 혹은 교도소 내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또한 발에 감각이 없거나 비만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된 이동성 문제에 대한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페이지의 **Diabetes(당뇨병)** 을 참조하라.

간질

의료진은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치료를 제공할 것이며, 수용자가 증상을 나타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할 것이다. 하지만 교도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 점멸 등과 같은 트리거에 대한 주의
- 비상 시 응급 절차에 대한 지식
- 개인적으로 약을 소지하거나 혹은 교도소 내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지속적인 발현이 계속될 경우, 의료진에게 진단과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고려하라.

Epilepsy Action이 수용자와 교도소 직원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두 권의 책자는 REAG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19페이지의 **Epilepsy(간질)** 을 참조하라.

심장병

심장병이 있는 수용자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은 증상과 그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의료진이 적절한 조언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용자는 격렬한 활동을 피해야 한다.

20페이지의 **Heart problems(심장 질환)** 을 참조하라

HIV/에이즈

의료진이 HIV감영자에 대한 치료를 관리한다. HIV와 C형 간염과 같은 혈액 매개 및 성병의 전염을 방지하는 관행은 어떤 경우에도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어떤 개인이 위험을 나타내는지 항상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절한 합리적인 조정은 질병의 경과와 각 개인이 겪고 있는 증상에 따라 달라진다.

수용자의 장애에 대한 비밀 유지가 중요하며 이것은 특히 HIV와 같은 질환에 대해서는 특히 중요하다.

21페이지의 **HIV/AIDS(HIV/에이즈)** 를 참조하라.

다발성 경화증 (MS)

합리적인 조정은 각 개인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하며 질병의 단계, 증상,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막대 및 프레임 등을 이용한 이동 보조
-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기적인 휴식 시간 제공
- 통증 관리

유용한 참조: The MS Society, www.mssociety.org.uk.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0808 800 8000

또한 23페이지의 **Multiple Sclerosis(다발성 경화증)** 을 참조하라.

뇌졸중

합리적인 조정은 증상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뇌졸중을 겪은 모든 수용자는 의료진과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의료진이 조언해 줄 것이고 각 수용자들이 어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지 이야기 할 것이다.

24페이지의 **Stroke(뇌졸중)** 을 참조하라

요실금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수용거실 내 위생 시설 이용
- 요실금 패드
- 세탁실 및 수용거실 청소 도구 추가 사용 허용

의학적 이유가 없는 한, 요실금은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필요할 때 VDT 또는 MDT 샘플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 않는다.

의료진은 요실금 환자가 있는 모든 수용자를 현지 NHS 지역사회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증상은 전문가 진단과 관리에 따라 개선되기도 한다.

30페이지의 **Age-related conditions(노화와 관련된 증상)** 을 참조하라.

• 학습 장애

난독증

모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조치가 있다:

- 노란색 종이에 인쇄
- 컴퓨터 화면을 볼 때 컬러 렌즈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름 배지와 표지 사용; 이름과 장소는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으로 처리되어야 함
-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초안을 작성할 때 쓰여진 내용을 다시 읽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음
-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는 의사 결정에 유용한 마인드맵을 만듦
- 일지 및 알림 기능을 통한 메모리 문제 해결

교육은 읽기와 쓰기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기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28페이지의 **Dyslexia(난독증)** 을 참조하라.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이는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제한된 변형을 제공하는 구조화된 체제를 제공하여 수용자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수용자가 더 편안하다고 느끼면 기본을 유지하거나 수용자가 요구하는 표준 또는 강화 요소만 제공
- 완곡한 표현이 없는 명확한 지시
- 수용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지시한 모든 사항을 이해했는가 확인
- 수용자가 사로잡혀 있는 취미 활동 허용
- 공감이나 이해를 기대하지 않음; 많은 자폐성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 질문이 명확한지 확인. *예를 들어, 이미 '목욕'을 했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샤워' 하셨습니까?'라고 묻지 마라. '씻었니?'라고 묻는 것이 좋다.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지나치게 정확할 수 있다.*

28페이지의 **Autism/Autistic spectrum disorders(자폐/자폐 스펙트럼 장애)** 를 참조하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및 주의력결핍장애(ADD)

ADHD가 있는 수용자들은 다음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적당히 구조화된 일상
- 허용 가능한 행동의 기준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되는 경계

ADHD는 판결 시 고려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파괴적인 행동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전문가가 ADHD 진단을 내린 경우 이는 판결에 따라 부여되는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ADHD를 가진 개인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29페이지의 **ADHD** 를 참조하라.

지적 장애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의 것들이 중요하다:

-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
- 특히 법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적절한 성인'임을 확인
- 명확하고 단순한 명령
- 활동 및 과정에 대한 참여 지원
- 교육 팀에 적절한 준비 요청; 개인적 성취는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없는 수용자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음
- 특히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조언과 지원 제공
- 위반 행위 대처에 관한 대체 지원 고려
- 기타 합리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다:
- 문서에 EasyRead 사용
- 구내 식당 목록, 사용법 유인물 등에 그림 포함
- 표지판에 그림 포함
- 사용법에 대한 오디오 혹은 비디오 버전의 정보가 있는지 확인
- 학습 장애가 있는 수용자들에게 그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개인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

또한 29페이지의 **Intellectual disability(학습 장애)** 를 참조하라.

• 정신 건강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인 조정은 의료진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정신 건강에 있는 모든 수용자가 약물치료나 기타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는 방법은 안전한 구금 절차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라.

또한 25페이지의 **Mental health(정신 건강)** 을 참조하라.

〈부록 4〉

DH Department of Health

PRISON REFORM TRUST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정보 책자[77)]







이 책자는 교도소 생활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한 정보를 줍니다

2009

77) Prison Reform Trust, 2009, Information book for prisoners with a disability.

© 범죄자 보건 및 교도소 개혁 연대 2009

이 발행물은 공유, 복사, 배포, 전송할 수 있지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보유자의 허가 없이 어떤 방법으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 보건은 법무부와 보건부 사이의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NHS, 사회복지 및 형사정의 기관과 일합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일반 대중이 받는 것과 동일한 범위와 질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도소 개혁 연대는 공정하고 올바른 교도소 시스템을 만드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수형자, 직원과 외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공무원에게 변화를 요구하여 이를 합니다.

로이드 자선재단의 지원으로 교도소 개혁 연대가 2004년 처음 발행했습니다.

해들리 재단과 범죄자 보건의 지원으로 교도소 개혁 연대가 2009년 이 판을 발행했습니다.

이 책자에 도움을 준 다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Mencap, 교도소 조사관, 수도원, 인종평등행동집단 그리고 초안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장애인 담당관과 기타 교도소 직원들.
- 대상 집단에 도움을 준 HMP 버밍엄, HMP 다운뷰, HMP 펠트햄 그리고 HMP 레이힐의 직원과 수형자들.

내용, 사진과 디자인에 도움을 준 범죄자 보건과 PRT 직원.

이 책자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당신의 권리
- 도움 요청과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

이 책자의 사본을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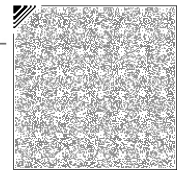
- 도서관
- 개인 담당자
- 교도소 개혁 재산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우편을 보내서 (020 7251 5070 또는 PRT, Freepost, ND6125, London EC1B 1PN)
- 장애인 담당관(DLO)
- 보건 팀.

당신의 장애인 담당관(DLO) 또는 개인적인 담당자는 교정국 인트라넷에서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웹사이트에도 있습니다:

- 교정국: www.hmprisonservice.gov.uk
- 범죄자 보건: www.dh.gov.uk/en/Healthcare/Offenderhealth
- 교도소 개혁 재단: www.prisonreformtrust.org.uk

이 책자는 다음으로도 제공됩니다:



- 읽기 쉬운 버전 CD.

내용

장애는 무엇인지? 242

당신의 권리 243

교도소 도착 245

누가 도울 수 있는지? 247

어디에서 지낼지? 250

일상 생활 251

일상 생활에 도움 253

금전 254

민원 제기 255

당신의 건강 256

연락 유지 258

당신의 복역 259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260

출소 260

유용한 기관들 262

장애는 무엇인지?

대부분의 장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도소의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장기 질병(천식 등)이 있는 경우
- 가끔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학습 장애, 학습 곤란(난독증 등) 또는 자폐증이 있는 경우
- 오래 동안 지속되었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우울증 등)가 있는 경우
- 보고, 듣고, 말하거나 돌아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하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말하지 않으면, 당신을 도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교정국령 (PSO) 2855, 장애인 수형자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법은 교정국이 다음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장애인이 교도소 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하도록 지원
- 장애인이 자신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지원

장애인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 고취.

당신의 권리

• 당신의 권리 – 2005 장애차별금지법

장애인이 타인과 다르게 또는 나쁜 방법으로 대우받는 것을 방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교도소는 DDA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합리적인 변화를 해야 합니다:

- 당신이 교도소 생활에 완전히 동화
- 당신이 직원과 다른 수형자로부터 공정하고 좋은 방식으로 대우를 받을 것.

PSO 2855 (장애인 수형자) 그리고 **교도소 표준 8**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두 개 모두의 사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장애를 교도소 직원에게 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보건 직원에게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장애가 있다고 교도소에 말하거나 직원이 당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 그들은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이러한 필요를 맞추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변화로 부릅니다.

그들이 당신의 필요를 맞출 수 없으면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교도소에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특별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DDA –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은 일상 생활을 하는 능력에 상당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가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면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손상은 대부분의 타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 목록은 모두 장애로 봅니다:

- 당뇨
- 난독증
- 자폐증
- 난청
- 천식
- 우울증
- 얼굴 흉상
- 관절염
- 암.

신체적인 장애는 다음 같은 것입니다:

- 걷는데 어려움
- 손잡이와 칼 및 포크 같은 사물 취급에 어려움
-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어려움.

감각적인 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분적 또는 심각한 청각 장애
- 안경으로 교정되지 않는 시력 문제
- 일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감각, 후각 또는 미각 손실.

기타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 장애
- 정신적 건강 문제
- 학습 곤란
- 자폐증

장기는 12개월은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다리가 골절되고 몇 개월 동안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DDA상 장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교도소는 당신이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DDA상 장애가 아닙니다:

-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 건초열
- 방화, 절도 또는 폭행 경향
- 문신과 피어싱.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는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담당관 또는 자신의 건물의 담당관에게 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도착

- **교도소 도착**

  당신은 접수로 이동됩니다.

  모두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와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애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도소 생활에서 있는 어려움을 말할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교도소에서 이송한 경우 당사은 장애를 직원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다른 교도소에서 왔으면 그들에게 이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장애인 담당관(DLO)에게 말할 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와서 보는 것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장애 설문(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DLO에게 말하는 모든 정보는 기밀입니다.

  읽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내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교도소 규칙과 교도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를 읽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담당관에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당신이 들을 수 있는 CD나 테이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시 DLO와 면담하지 않았으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어느때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화나거나 걱정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느낄 경우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교도소 직원
  - 보건 직원
  - 목사
  - 말동무/친구
  - 장애인 담당관.

- **수색**

  교도소에 들어올 때 모두 완전한 몸 수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장애나 건강 상태에 있는 경우, 직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전히 몸 수색을 해야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담당관에게 어떻게 이를 최선의 방법으로 할지 말할 것입니다.

- **인도**

  여기서 교도소에 관해 알게 됩니다.

  교도소의 모든 규칙을 듣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인도 건물의 담당관에게 물어보세요.

  교도소의 법률 서비스 담당관, 목사와 기타 교도소 직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정보 책자**에 이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작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교도소가 평가할 것입니다. 작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나 의료 상태이면 직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작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도소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복지나 주거처럼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직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누가 도울 수 있는지?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 담당관 (DLO)

모든 교도소는 장애인 담당관(DLO)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와 조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DLO와 면담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지원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DLO에게 말할 내용을 개인 담당자나 건물의 직원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DLO와 연락하는데 도움을 요청하세요.

장애인 담당관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수형자와 면담
-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살피고 이를 기록
- 수형자와 직원에게 정보 제공
- 교도소에 필요한 것에 관하여 소장과 기타 관리자와 면담
- 장애인을 위한 활동 기획
- 장애인들이 교도소 활동에 참여하도록 확인.

- 목사

  목사는 당신이 종교를 믿는 것을 도와줍니다. 신앙심이 없어도 느끼는 바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사마리아인

  걱정되거나 불안함을 느끼면 **08457 90 90 90**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료 전화이지만 처음에 핀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는 교정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당신을 평가하고 다른 직원과 일합니다. 학습, 이해 또는 정보 기억이나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범죄자 관리자/범죄자 감독자

  범죄자 관리자는 보호관찰 서비스의 인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역중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줍니다. 범죄자 감독자는 교도소에서 당신과 함께 합니다.

- 교육

  모든 교도소에 교육 부서가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읽기와 쓰기 같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면담과 확인을 합니다.

  교육 직원과 계획을 동의합니다.

- 사서

  모든 교도소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서가 당신이 정보를 찾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읽기 쉽고, 큰 활자와 음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에 있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면, 주문할 수 있는지 사서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 담당관

  이는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의 경과에 대해 보고할 개인 담당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역 계획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독립모니터링위원회 (IMB)

  IMB 구성원들은 수형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지 확인하는 독립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지 지역에서 자원한 자들입니다. 교도소 안의 문제에 관하여 그들과 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변호인

  당신의 변호인은 법에 관한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변호인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수형자들

- 말동무 또는 '친구'

  화가 나거나 걱정되면, 들어줄 사람이나 친구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다른 수형자들입니다. 그들은 보통 특별한 티셔츠를 입습니다.

- 장애인 담당자/대표

  일부 교도소는 다른 장애인들을 돕는 수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잡거나 교도소 직원과 말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특별한 티셔츠나 빨간 밴드를 착용합니다.

- 동료 지원

  일부 교도소는 다른 수형자들이 어울리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수형자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 읽기 멘토

  일부 교도소는 타인이 읽는 것을 돕기 위해 수형자들을 훈련시킵니다.

- 외부 기관

  교도소 밖에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 책 끝 41 페이지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낼지?

- 어디에서 지낼지

  교도소에 처음 오면 보건 센터에 머무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하는 모든 활동(교육, 운동 등)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병원동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진행중인 심각한 의료 상황이 없는 한, 교도소는 가능한 빨리 다른 곳을 알아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감방을 같이 써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도소 직원은 누가 당신이 감방을 같이 쓸 최적의 자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에 문제가 있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흡연자이면 흡연자와 같이 쓸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걱정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직원에게 말하세요. 감방을 같이 쓰기 어려운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으면 직원에게 말하세요.

  계단, 이층 침대, 샤워나 변기 사용에 문제가 있으면 직원에게 말하세요.

  일부 교도소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런 교도소에 있으면 교도소는 적합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장애 때문에 더 높은 보안 시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장애 때문에 필요한 범죄성 교정 과정이 없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도소 직원이 이송할 적합한 교도소를 찾을 수 없으면, 그들은 지역 관리자와 연락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송할 수 있는 교도소를 찾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

다. 당신이 이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OCA 부서(이송을 담당하는 교도소. 부서)에게 지역 관리자와 연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국 지침(PSI) 31/2008,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적합한 교도소로 이송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외부 기관이나 당신의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 음식

건강 때문에 특수 음식을 먹어야 하면, 이에 관해 보건 직원과 말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건 직원이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교도소는 특수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도소는 모두가 음식을 선택하게 합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음식을 고를지 알 수 있도록 메뉴에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 양식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건물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교육, 작업 및 훈련

당신은 원하는 경우 교육, 작업이나 훈련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도소는 수형자들이 교육을 받고 학습과 이해 수요가 충족되도록 긍정적인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 지원을 요청하세요. 교육 부서는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작업장을 변경시켜야 하더라도 장애인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과 안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동**

  장애가 있는 수형자는 운동 시설과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교도소는 노인이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자를 위한 특수 체육관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관 직원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줄 수 있습니다.

- **교류**

  이는 다른 수형자들과 어울리고, 전화를 하고, 샤워를 하는 감방 밖의 시간입니다.

- **도서관**

  모든 교도소는 도서관이 있고 읽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큰 글자, 읽기 쉽고 음성(CD나 테이프)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 일주일에 한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에 가기 어려우면 교도소는 당신이 있는 건물에 책이나 정보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상점**

  이는 교도소 상점이고 정기적으로 물건을 살 기회가 주어집니다. 작성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원이나 수형자에게 요청하세요.

  건강이나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특별한 것이 있으면 상점에 그것을 살 것을 요청하세요.

  이를 위해 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 **면회**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는 당신을 면회할 수 있습니다. 면회장에 가거나 면회중 도움이 필요하면 교도소가 이를 도와줄 것입니다. 면회 명령을 보내거나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교도소 직원이 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책자 이후와 **수형자 정보 책자**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도움

- 생활 도움과 돌아다니기

  휠체어, 지팡이 또는 유사한 것이 필요하면, 장애인 담당관에게 말하세요.

  교도소를 돌아다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교도소가 도와줘야 합니다. 레일이나 경사로 같이 교도소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다니는 것을 도와주도록 훈련받은 다른 수형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샤워기, 변기 또는 탈의실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이나 장애인 담당관에게 말하세요.

  돌아다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교도소는 긴급상황의 경우에 대한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여성 수형자들은 긴급상황이 아닌 한 보통 남성 직원이 운반하거나 들지 않아야 합니다.

- 읽기, 쓰기와 양식 작성에 도움

  교도소에 있을 때 작성할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수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수형자들은 이를 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당신의 개인 담당자, 다른 담당자, 교육 직원이나 목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부 양식은 중요하므로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 동료 지원

  일부 교도소는 동료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수형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수형자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 대표

  일부 교도소는 장애인 대표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수형자들을 돕는 수형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신 교도소 직원에게 말하고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합니다.

금전

- 금전

  당신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당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누가 지급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법률은 당신이 이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당신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를 떠날 때 금전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정보 책자에 이에 관해 더 많은 정보와 주소가 있습니다.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급여는 산업재해장애급여입니다. 당신은 이에 관해 급여 조언자와 얘기해야 합니다.

  가택연금 또는 가석방으로 공동체에 있는 경우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금중이고 복역을 하지 않아도 되면 상환한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현지 시민상담부나 조언 서비스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국가구금을 주장하고 있었던 경우,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는 중지됩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있는 동안 직업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지역 연금이나 노인상담과 연락하세요.

  교도소에서 작업할 수 없는 경우 교도소는 매주 기본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작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 이에 관해 DLO와 말하고 당신이 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민원 제기

- 교도소에서 요청 또는 민원

무엇을 요청할 필요가 있거나 대우에 불만이 있으면, 요청이나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도소는 요청 및 민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도중 이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건물의 담당관에게 말하거나 다른 수형자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청/민원을 하는 양식이 건물에 있습니다. 양식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관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심각하거나 민감한 것을 물어보고 싶으면, '보안 접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민원이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양식에 써야 할 것입니다.

교도소 직원과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미 노력하였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경우 교도소 및 보호관찰 옴부즈만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쓸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교도소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불만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맨에게 쓸 수 있습니다:

교도소 및 보호관찰 옴부즈맨

Ashley House
2 Monck Street
London
SW1P 2BQ

옴부즈맨과 민원 방법에 관해 볼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 폭력 또는 괴롭힘

교도소 안의 모두는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쁘게 굴거나 폭력적이거나 괴롭히는 경우, 바로 직원에게 말하세요.

교도소 안의 어느 직원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민원을 진지하고 보안을 유지하여 다룰 것입니다.

폭력과 괴롭힘은 사람들이 때리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다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직원이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 **약 복용**

교도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지고 왔던 약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인도 직원이나 보건팀의 구성원에게 말하세요.

교도소 안의 의사는 필요한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지연이 있거나, 대우에 불만이 있거나, 약을 받지 못한 경우,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의사가 처방한 약을 감방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직원은 이것이 가능한지 결정하고 말해줄 것입니다.

- **안과의사나 치과의사 면담**

치과의사나 안과의사를 보는 것이 필요하면 교도소 직원에게 말하세요.

의료적인 이유인 한 받은 치료는 무료입니다.

안경이 필요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 콘택트렌즈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낄 수 있는지 안과의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 **전문가 지원**

건강 문제를 교도소 보건 직원이 다룰 수 없으면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 직원이 전문가가 당신을 보러 교도소에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교도소 밖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교도소는 여전히 당신을 관리합니다.

교도소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과 병원 안에서 수갑을 차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이것이 어려우면 교도소에 말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의사가 따로 검사할 필요가 있고 교도소가 수갑을 차야 한다고 한 경우, 호송 사슬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노역중이거나, 완전마비, 하반신 마비 또는 D 분류 수형자인 경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대한 불만

건강에 불만이 있으면 우선 교조소의 보건팀에 말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되지 않으면 1차 치료 재단에 불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1차 치료 재단은 현지 지역의 치과의사, 의사와 안과의사 같은 건강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건강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독립민원조사국(ICAS)이라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도소 직원, 교도소 도서관, 또는 NHS 직통 **0845 4647**로 전화하여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건서비스위원회에 민원을 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은 보건 서비스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민원에 대해 쓰세요:

Care Quality Commission
7th Floor, New Kings Beam House
22 Upper Ground
London

SE1 9BW
당신의 건강

연락 유지

- 면회

당신은 친구들과 가족이 당신을 보러 올 수 있도록 면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형자의 정보 책자**에 이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면회 명령이라 부르는 것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도움이 필요하면 교도소에 알리세요.

번잡한 공간에서 듣기 어려운 것처럼 면회자들이 면회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가 있으면, 면회하기 전에 이를 교도소에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약 전화를 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교도소에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을 면회하는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경우, 그들을 위한 활동이나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교도소에 당신의 가족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줄 수 있는 면회자 센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신 및 전화

서신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교도소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하는 다른 방법(테이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도소 직원은 당신에게 서신을 읽어줄 수 있는 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담당관 또는 다른 수형자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화는 청각 손상이 있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하는지 건물에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복역

당신이 일 년 이상 복역을 하는 경우 복역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범죄를 멈추게 돕는 목표입니다. 당신의 복역 계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인 담당관 또는 범죄자 관리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행동을 변화해야 하는 과정을 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과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범죄자 관리자에게 말하세요.

교도소는 장기 복역하는 장애인이 진척을 이루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송되거나 출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당신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모든 교도소에 규칙이 있고 당신이 이를 어기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과 교도소 직원이 어떤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소장이 당신이 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당신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정보 책자**에 이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소장들은 수형자들이 판결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읽기 쉬운 정보
- 판결을 당신에게 설명하는 수형자나 직원
- 심문 중 당신과 함께 있는 자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해 규칙을 어긴 경우, 당신을 소장에게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와 특권 획득 (IEPs)

당신이 규칙을 지키면 얻을 수 있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교도소마다 다릅니다.

IEPs 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직원에게 이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도서관 (대신 책을 주문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수형자 정보 책자
- 교정국령
- 교도소 규칙
- 보건 센터
- 교육부
- 장애인 담당관
- 개인 담당관
- 교도소 개혁 재단

출소

- **범죄자 관리자**

  당신이 일 년 이상의 복역을 하는 경우 등록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지내야 할 곳과 해야 할 것을 정하는 양식입니다. 당신은 등록증에 기재된대로 당신이 하고 있는지 확인할 범죄자 관리자를 볼 것입니다. 당신이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하면 그들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급여 청구**

  당신은 잡센터 플러스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를 떠나기 전에 정산 부서에게 잡센터팀과 당신을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하세요. 당신이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작업할 수 없으면 당신은 교도소의 보건 센터로부터 서신이나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 편의시설 찾기

당신이 노숙자가 되는 경우, 교도소의 정착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부 교도소는 주거 조언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거에 문제가 있는 경우 NACRO로 **0800 0181 259**에 또는 보금자리로 **0808 800 4444**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GP 등록

당신은 교도소를 떠나기 전에 의사나 간호사를 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공동체 안의 당신의 의사를 알거나 당신이 GP 실무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학습 장애가 있으면 교도소 보건팀은 이것과 당신이 필요한 지원에 관해 말하도록 당신의 GP에게 쓸 수 있습니다.

- 사회 서비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 서비스는 당신을 평가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들은 이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사회 서비스가 평가를 할 요청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요청을 다음에서 올 수 있습니다:

- 당신
- 당신의 친구/가족
- 보건
- 당신의 교도소 (보통 정착팀)
- 다른 기관.

당신이 학습 장애, 정신 건강 필요 또는 신체적 건강 필요가 있으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 서비스가 요청을 받으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필요

하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평가는 당신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와 사회 서비스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볼 것입니다. 당신이 평가를 받거나 필요한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시민상담부나 변호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유용한 기관들

- 기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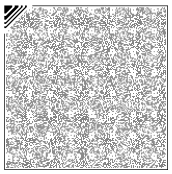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지역 안의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의 보건 센터나 정착팀에게 대신 찾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찾기 위해 NACRO로 **0800 01080 258**에 또는 교도소 개혁 재단으로 **020 7251 5070**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작업, 교육 및 훈련 이용

교육부와 정착팀에서 작업, 교육 또는 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 담당관이나 건물의 담당관에게 물어보세요.

PRISON REFORM TRUST

교도소 개혁 재단
15 Northburgh Street
Londin EC1V 0JR
전화: 020 7251 5070
이메일: prt@prisonreformtrust.org.uk
www.prisonreformtrust.org.uk
자선단체 등록번호: 1035525 Company Limited by
보장번호: 2906362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인 쇄 일	2020년 12월 30일
발 행 일	2020년 12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34-01
I S B N	978-89-6114-825-2-93350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홈 페 이 지	https://www.humanrights.go.kr/
문 의 전 화	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968
F A X	02-2125-0924
제 작	사회적기업 리드릭 / 경성문화사

ISBN 978-89-6114-8255-2 93350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장애차별조사1과
TEL. 02-2125-9968 FAX. 02-2125-0924
www.humanrights.go.kr